

GOVP1200731117
L 343.076 L293L

₩
343.076
L L
2007

농림부 소관 법률집

2007. 10.



목 차

◆ 농림부 소관 법령현황

I. 농업 정책 전반

1. <u>농업·농촌기본법</u>	3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5
3. 농작물재해보험법	35
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41
5. 농지법	44
6. 농업협동조합법	72
7.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29
8.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143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48
1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56
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160
12. 농촌진흥법	166
13. 한국농업대학설치법	172

II. 식량 및 환경 농업

1. <u>양곡관리법</u>	177
2. 양곡증권정리기금법	189
3.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193
4.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195
5. 종자산업법	202
6. 농어업재해대책법	246
7. 농업기계화촉진법	251

8. 비료관리법	256
9. 농약관리법	265
10. 친환경농업육성법	279
11. 식물방역법	290
12.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305

Ⅲ. 농 산 물 유 통

1. <u>농수산물유통공사법</u>	313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316
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349
4. 농산물품질관리법	359
5. 인삼산업법	379

Ⅳ. 축 산

1. <u>축산법</u>	395
2. 한국마사회법	410
3. 축산자조금의구성및운용관한법률	426
4.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433
5. 낙농진흥법	441
6. 초지법	446
7. 사료관리법	464
8.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473
9. 동물보호법	477
10. 가축전염병예방법	485
11. 수의사법	505
12. 축산물가공처리법	516
13.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538
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542

V. 농 촌 개 발

1.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565
2. <u>농어촌정비법</u>	584
3. 방조제관리법	621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625

농림부 소관 법령현황

□ 법률 48건, 시행령 44건, 시행규칙 46건

* 10.12현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 - - ○농지법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관리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관한법률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종자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관리법시행령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비료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시행령 ○식물방역법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종자산업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 -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 	-	-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리밋이용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
-	-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 한 특별법시행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 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 한 특별법시행규칙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 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 규칙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축산법시행규칙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	-
○낙농진흥법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초지법시행규칙
○동물보호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 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규칙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수의사법시행규칙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 에 관한 규칙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공무원복제 규칙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시 행령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시 행규칙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령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정비법 ○방조제관리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방조제관리법시행령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
○농촌진흥법 - ○한국농업대학설치법	○농촌진흥법시행령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한국농업대학설치법시행령	○농촌진흥법시행규칙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 -

I. 농업정책 전반



여 백

農業·農村基本法

[일부개정 2003.12.11 법률 제6997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理念)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 經濟的·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均衡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豊요로운 産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第4條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농업인 등의 책무<개정 2001.3.28>)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農村地域開發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 좋고 安全한 農産物을 안정적으로 生産·供給하고 生産性向上과 經營革新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

第5條 (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6條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健全한 발전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食糧自給水準의 目標을 設定·유지하며 적정한 食糧在庫量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 (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의 改善을 통하여 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業人의 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農村의 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 農村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 (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對備 農業政策) ①政府는 統一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産體制, 農地 및 農産物流通制度등에 대한 調査·研究를 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産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章 農業構造改善

第1節 農業人力의 育成

第11條 (家族農의 경영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産性向上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家의 特性에 맞는 規模化·專門化·協同化등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2條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개정 2003.12.11>) ①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가 指定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必要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03.12.11>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選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第13條 (專業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農業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가 指定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必要한 지원을 한다.

第14條 (女性農業人の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の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の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5條 (營農組合法人の 육성) ①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農産物の 出荷·加工·輸出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は 5人 이상을 組合理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農組合法人は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營農組合法人は 農業인과 農産物の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理員으로 하되, 組合理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理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營農組合法人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理員 또는 準組合理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⑤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の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の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營農組合法人の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第16條 (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の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の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인과 農産物の 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인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 (農業人の 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인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經營의 相談·諮問, 教育訓練 및 情報提供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등을 고려하여 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18條 (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權益을 보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 및 農業人團體등 農業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第2節 農地의 이용 및 보전

第19條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妥善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第20條 (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1條 (農地의 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3節 農業生産構造의 高度化

第22條 (農業生産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農業生産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 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3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안정될 수 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4條 (農業機械化등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고 農業의 生産性を 높일 수 있도록 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研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教育訓練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5條 (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技術의 研究·開發·普及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 (벤처農業등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分野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技法의 開發을 獎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産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農業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第27條 (知的財産權등의 보호) ①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등 有·無形の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地域特化産業의 육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特性을 가진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8條 (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村地域 關聯情報를 제공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第29條 (農業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産技術등을 신속하게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開發研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研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4章 農産物の 需給安定 및 流通改善

第30條 (農産物の 需給 및 價格의 安定) ①政府는 農産物の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安정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 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1條 (農産物の 流通改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産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地 流通의 活性化를 적극 도모하고, 農産物の 生産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등 다양한 流通施設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の 포장·規格化등 物流의 標準化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教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32條 (農産物の 品質管理등) ①政府는 農産物の 商品性提高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原產地表示 및 品質管理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檢査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33條 (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の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農産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研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5章 農産物の 交易 및 國際協力

第34條 (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業通商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 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참여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海外依存도가 높은 農産物の 安定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投資環境調査등 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5條 (農産物の 輸出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の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を 輸出하는 者등에게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6條 (農産物の 輸入管理) 政府는 農産物の 輸入增加로 인하여 國內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6章 農村地域開發 및 所得支援

第37條 (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삶의 질 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綜合적인 農村地域開發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 環境保全을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8條 (農村地域産業의 振興 및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産業團地造成, 地域特産品生産團地の 육성, 農産物加工業을 비롯한 農業關聯産業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農間의 交流擴大 및 農村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地域의 特色을 살린 綠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文化施設등의 設置·운영과 地域의 文化行事開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9條 (農業인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の 所得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한다.

1. 零細農등을 위한 지원
2. 土壤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5. 條件不利地域에 대한 지원
6. 기타 農業生産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第40條 (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産物生産을 위하여 旱害·水害·風害·冷害등 農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 共濟制度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1條 삭제 <2001.12.31>

第7章 農業·農村發展計劃의 추진

第42條 (農業·農村發展計劃)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③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시·도계획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⑤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第43條 (農政審議會) ①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 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 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 連繫性, 推進實績 및 成果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第45條 (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農業施策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第8章 補則

第46條 (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村의의 地域으로서 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 都市計画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7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과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48條 (權限의 위임등)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제 <2001.12.31>

부칙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業基本法
2. 農產物價格維持法
3. 農水產物輸出振興法

第3條 (農業人後繼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人後繼者 또는 林業人後繼者로 선정된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專業農業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된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營農組合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으로 본다.

第6條 (農業會社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본다.

第7條 (農地轉用負擔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 하는 農地轉用負擔金은 第41條의 規定

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하여야하는 農地轉用負擔金으로 본다.

第8條 (중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중전의 農業基本法,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처분·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중전의 農水產物輸出振興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農水產物輸出振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 表의 農林地域欄의 第1號 및 自然環境保全地域欄의 第5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각각 "農地法 第30條"로 한다.

第13條의3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0條"로 한다.

②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를 "農地法 第30條"로 하고, "同法 第44條"를 "同法 第34條"로 한다.

③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으로 한다.

④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農業人등"이라 함은 農業·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專業漁業人"이라 함은 漁業의 경영규모와 技術水準, 投入勞動時間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漁業人을 말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 (專業漁業人의 육성) 海洋水產部長官은 漁業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經營合理化를 도모함으로써 生産性を 향상시킬 수 있도록 漁業에 관한 經營能力과 意慾이 있는 漁業人을 海洋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漁業人으로 육성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 (漁業人後繼者의 육성) 海洋水產部長官은 農漁村에 定着하여 漁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靑少年을 海洋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人後繼者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4條의2를 削除한다.

第5條第2項第3號중 "第6條"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로 하고, 同項第4號중 "第7條"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로 한다.

第5條의2, 第6條, 第7條, 第10條, 第10條의2 및 第1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1條第1項중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發展基本方針"을 "農業·農村基本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으로 한다.

第34條第1項중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6條第1項중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8條 및 第4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7章(第48條 내지 第52條)을 削除한다.

⑤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79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道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103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定住生活圈開發委員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政審議會"로 한다.

⑥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政審議會"로 한다.

第5條第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⑦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⑧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과 다음 各目的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과 다음 各目的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 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2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 農政審議會"로 한다.

⑨農村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農業·農村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技術의 開發

⑩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⑪兵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4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36條第5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後繼者 및 漁業人後繼者(이하 "農·漁業人後繼者"라 한다)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後繼農業人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人後繼者(이하 "後繼農·漁業人"이라 한다)"로 한다.

第38條 本文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하고, 同條第4號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한다.

第40條 本文중 "農·漁業人後繼者"를 "後繼農·漁業人"으로 한다.

⑫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1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⑬小企業支援을 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⑭植物防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業人 및 農·林産物의 生産者團體"를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體 및 生産者團體"로 한다.

⑮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2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로 한다.

<16>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17>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2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18>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19>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8條第3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한다.

第267條第4項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인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인과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基本法, 農産物價格維持法 및 農水産物輸出振興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47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및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제6997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계농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전단중 "後繼農業人"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항 본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農業人後繼者"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규정의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인후계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林漁業의 발전을 도모하고 農業人·林業人·漁業人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農林漁業의 構造를 개선하여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農漁村工業을 육성하는 등 農漁村의 所得源을 확충하며 生活環境을 개선하여 農漁村을 快適한 生活空間으로 造成함으로써 農業人·林業人·漁業人의 福祉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4.12.22>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94.12.22, 1999.2.5>

1. "農林漁業"이라 함은 農業(畜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林業 및 漁業을 말하며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農業人등"이라 함은 農業·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專業漁業人"이라 함은 漁業의 經營규모와 技術水準, 投入勞動時間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漁業人을 말한다.
4. 삭제 <2000.1.28>
5. "農林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林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農地"라 함은 農地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말한다.
7. 삭제 <2000.1.28>
8. 삭제 <2000.1.28>

第2章 農林漁業의 構造改善<개정 1994.12.22>

第3條 (專業漁業人의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漁業의 經營규모의 적정화와 經營合理化를 도모함으로써 生産性を 향상시킬 수 있도록 漁業에 관한 經營能力과 意慾이 있는 漁業人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漁業人으로 육성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4條 (漁業人後繼者의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漁村에 定着하여 漁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靑少年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人後繼者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4條의2 삭제 <1999.2.5>

第4條의3 (農林漁業專門經營者教育課程의 設置·운영등<개정 1994.12.22>) ①政府는 農林漁業 教育機關이 農業人등에 대한 農林漁業 專門經營者 課程을 設置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

우 그 課程의 운영등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한 경우 農林漁業專門經營者 課程의 入學資格, 學科, 修業年限, 修業日數 및 履修方法, 施設·設備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본조신설 1993.6.11]

第5條 (農林漁業機械化 및 施設現代化의 촉진<개정 1993.6.11, 1994.12.22>)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林漁業의 機械化 및 施設現代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農林漁業機械와 農林漁業用施設에 필요한 機資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械·裝備(이하 "農業機械등"이라 한다)의 生産·普及, 공동이용의 촉진, 이용·整備등에 관한 教育訓練, 部品 및 資材의 원활한 供給등 事後奉仕 및 試驗·研究·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1999.2.5>

1. 農業人등 및 農林水産物의 生産者團體
2. 農業機械등의 共同利用組織
3.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4.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
5. 農業機械등의 事後奉仕業所·農業機械등 및 部品生産業體
6. 農林漁業用 施設을 設置하는 業을 영위하는 者 및 農林漁業用施設에 필요한 機資材의 生産業體
7. 農林漁業의 自營者養成을 위한 農林漁業系列高等學校

③農林部長官은 農業用機械·機資材·裝備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점검·정비 및 農業人등에 대한 農業機械등의 修理技術 指導를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機械化營農士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4.12.22, 1997.12.13>

第5條의2 삭제 <1999.2.5>

第6條 삭제 <1999.2.5>

第7條 삭제 <1999.2.5>

第8條 (農業人등의 轉業支援<개정 1994.12.22>)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다른 産業으로 轉業을 하고자 하는 農業人등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農業人등에 대하여 安定된 轉業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業의 지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職業訓練의 실시 및 就業의 알선
2. 轉業獎勵金의 지원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요건과 轉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第9條 (經營資産을 移轉한 農業人등에 대한 지원)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高齡·疾病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農林漁業의 經營을 계속할 수 없는 農業人등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農業人등이 經營資産을 一括하여 다른 農業人등이나 農漁村振興公社에 移轉하는 경우에는 經營資産을 移轉한 당해 農業人등과 그 家族에 대하여 第8條의 規定에 準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第10條 삭제 <1999.2.5>

第10條의2 삭제 <1999.2.5>

第10條의3 (農林水産經營情報의 제공)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林水産物의 生産者團體는 農林漁業經營에 필요한 情報를 수집하고 이를 農業人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農業人등의 情報利用 기회를 提高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業人등과 農林水産物의 生産者團體 및 農林漁業의 經營에 필요한 情報를 提供하는 業을 영위하는 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2.22]

第11條 (漁業構造改善의 促進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漁業의 構造改善을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한 施策과 支援對策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水産資源保護와 漁業競爭力強化를 위한 漁船隻數의 調整에 관한 사항
2. 漁業別 標準漁船의 開發 및 이의 普及에 관한 사항
3. 漁船의 設備 및 裝備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漁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協業化등 漁業經營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漁港등 漁業基盤施設의 整備·補強에 관한 사항
6. 共同漁場등 漁場의 整備·開發에 관한 사항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海洋水産部長官은 漁業資源의 상태등 漁業與件의 變化로 인하여 漁業構造의 개선이 요청되는 漁業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漁業을 構造改善促進對象漁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構造改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年마다 漁業의 實態와 資源의 상태등에 관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海洋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를 漁業構造의 개선을 위한 施策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第3章 農林水産物의 需給安定<개정 1994.12.22>

第1節 需給安定

第12條 삭제 <2000.1.28>

第13條 삭제 <2000.1.28>

第14條 (國內産 農林水産物の 販路擴大<개정 1994.12.22>)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內에서 生産되는 農林水産物の 販路的 擴大와 販賣의 促進을 위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林水産物の 販路的 擴大와 販賣의 促進을 위하여 農業人등과 生産者團體 또는 農林水産物 流通業을 영위하는 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第15條 (國內産 農林水産物の 加工支援<개정 1994.12.22>)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林水産物の 需給의 調節과 農業人등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農林水産物加工産業을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등 또는 農林水産物の 生産者團體가 食品製造·加工業 등 農林水産物을 加工하는 營業을 영위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補助金を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 傳統食品등 農林水産物加工品の 開發
2. 加工施設의 設置 및 補修
3. 加工原料로 사용되는 農林水産物の 收買
4. 加工·貯藏 및 流通의 개선을 위한 調査·研究事業
5. 기타 運營資金의 지원등 加工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國內産 農林水産物の 加工促進과 品質改善을 위하여 研究機關 또는 農林水産物加工業을 영위하는 者에게 補助金を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第2節 農林水産物の 輸出入<개정 1994.12.22>

第16條 (農林水産物の 輸出促進) ①政府는 農業人등의 所得을 增大시키고 農林水産物の 需給調節을 위하여 農林水産物の 輸出促進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政府는 農林水産物の 輸出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貿易業者 또는 貿易에 관련되는 機關의 海外市場情報의 蒐集과 市場開拓을 지원하거나 補助金의 支給 또는 融資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第17條 (輸入自由化豫示) ①政府는 農林水産物の 輸入制限을 解除(이하 "輸入自由化"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農業人등의 所得을 보호하고 國內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政府는 農林水産物の 輸入自由化豫示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農業人등의 所得과 國民經濟에 미칠 영향등을 감안하여 自由化品目과 時期를 豫示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第18條 (輸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 ①政府는 農林水産物の 輸入自由化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農業人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輸入自由化로 인하여 國內農林漁業이나 農業人등의 所得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品目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되는 당해 品目を 收買하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收買하도록 勸告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輸入價格과 收買價格의 差額을 補填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輸入自由化 또는 그 豫示로 인하여 農業人등이 당해 品目の 生産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른 品目を 生産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第19條 삭제 <1999.2.5>

第4章 農外所得源의 開發促進

第20條 (農外所得源의 開發) 農林部長官은 農林漁業외의 就業機會의 擴大와 農業人등의 所得構造의 高度化를 위하여 農漁村의 農林漁業所得외의 所得源(이하 "農外所得源"이라 한다)을 開發 또는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第21條 (農外所得増大計劃의 수립) ①農林部長官은 農業·農村基本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農外所得増大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②第1項의 農外所得増大計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漁村所得構造의 개선과 農外所得의 増大의 基本目標와 實踐計劃
2. 삭제 <2000.1.28>
3.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農漁村休養地의 開發·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農外所得源의 開發 및 지원에 관한 사항

第22條 삭제 <2000.1.28>

第23條 삭제 <2000.1.28>

第24條 삭제 <1999.2.5>

第25條 (農林漁業외의 就業의 訓練支援등<개정 1994.12.22>)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등과 그 家族의 農工團地入住工場 및 農林水産物加工工場에의 就業에 필요한 職業訓練을 실시하고 雇傭情報 제공·就業指導 및 就業알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農工團地에 入住하여 工場을 設置·운영하는 者(이하 "入住業者"라 한다) 및 農林水産物加工工場을 設置·운영하는 者의 從業員訓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4.12.22>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을 위하여 따로 訓練機構 및 施

設을 設置할 수 있다.

第26條 삭제 <2000.1.28>

第27條 삭제 <2000.1.28>

第28條 삭제 <2000.1.28>

第29條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の 육성<개정 1999.2.5>) 市長·郡守는 農漁村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개정 1999.2.5>

第30條 삭제 <1994.12.22>

第31條 (보고) ①市長·郡守는 매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農外所得増大計劃의 推進實績을 綜合作成하여 다음 年度 1月末까지 管轄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道知事는 매년 市長·郡守로부터 보고받은 農外所得増大計劃의 推進實績을 보고받은 날 부터 1月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綜合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第5章 삭제 <2000.1.28>

第32條 삭제 <2000.1.28>

第33條 삭제 <2000.1.28>

第34條 삭제 <2000.1.28>

第35條 삭제 <2000.1.28>

第36條 삭제 <2000.1.28>

第37條 삭제 <2000.1.28>

第38條 삭제 <1999.2.5>

第39條 삭제 <2000.1.28>

第6章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投資財源등<개정 1994.12.22>

第40條 삭제 <1994.12.22>

第41條 삭제 <1994.12.22>

第42條 삭제 <1994.12.22>

第43條 삭제 <1994.12.22>

第43條의2 삭제 <1994.12.22>

第43條의3 삭제 <1994.12.2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第43條의3第1項第1號중 "農民"을 "農業人"으로 한다.]]

第43條의4 삭제 <1994.12.22>

第44條 삭제 <1994.12.2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第44條第1項 本文중 "農水産業"을 "農林漁業"으로 한다.]]

第45條 삭제 <1994.12.2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第45條第2項중 "農民"을 "農業人"으로 한다.]]

第45條의2 삭제 <1999.2.5>

第46條 삭제 <2000.1.28>

第47條 삭제 <1994.12.2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4817호에서 이미 삭제한 조문임으로 개정적용을 생략함[第47條第1項第1號중 "農業用施設"을 "農林漁業用施設"로 하고, 同項第2號중 "農漁民"을 "農業人등"으로 하며, 同項第3號중 "農水産關聯"을 "農林水産關聯"으로 한다.]]

第7章 農漁村發展計劃의 수립 삭제 <1999.2.5>

第48條 삭제 <1999.2.5>

第49條 삭제 <1999.2.5>

第50條 삭제 <1999.2.5>

第51條 삭제 <1999.2.5>

第52條 삭제 <1999.2.5>

第8章 農漁村發展基金 삭제 <1993.12.31>

第53條 삭제 <1993.12.31>

第54條 삭제 <1993.12.31>

第54條의2 삭제 <1993.12.31>

第55條 삭제 <1993.12.31>

第56條 삭제 <1993.12.31>

第57條 삭제 <1993.12.31>

第58條 삭제 <1993.12.31>

第59條 삭제 <1993.12.31>

第60條 삭제 <1993.12.31>

第61條 삭제 <1993.12.31>

第62條 삭제 <1993.12.31>

第63條 삭제 <1993.12.31>

第64條 삭제 <1993.12.31>

第65條 삭제 <1993.12.31>

第9章 補則

第66條 (準農漁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외의 地域으로서 農業振興地域으로 지정된 地域과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農漁村으로 보아 이 法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第67條 삭제 <2000.1.28>

第68條 삭제 <2000.1.28>

第69條 삭제 <2000.1.28>

第69條의2 삭제 <1994.12.22>

第70條 (許可取消등) 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물건의 改築·變更·移轉·제거의 措置를 命하거나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事業의 계속적인 施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를 命하거나 處分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③ 삭제 <1997.12.13>

④ 삭제 <1997.12.13>

第70條의2 (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第71條 (보고 및 檢査)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2項의 證票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第72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農漁村의 발전을 위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또는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73條 (測量·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委任) ①이 法에 의한 計劃을 수립하는 者 또는 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의 測量·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農漁村振興公社에 위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委託者가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74條 (權限의 委任·委託등)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이 法の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거나, 農林水産物의 生産者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 또는 農林水産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第75條 삭제 <1994.12.22>

第75條의2 삭제 <1994.12.22>

第7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3.6.11>

1. 삭제 <1994.12.22>
2.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檢査資料를 제출한 者
3.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허위의 書類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第7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3.6.11, 1994.12.22>

第7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3.6.11>

1. 삭제 <1994.12.22>
2. 삭제 <1994.12.22>
3.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7.12.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に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228호,1990.4.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 規定은 産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①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2.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
3. 農漁村地域開發基金法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の 農工地區관련사항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의 施行日 前日까지는 중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農業機械化促進基金·水産振興基金과 農漁村地域開發基金에 관한 債權·債務등 一切의 權利·義務는 이 法 施行日 前日을 基準으로 하여 이 法 施行으로 設置되는 基金이 承繼한다. 다만, 農漁村地域開發基金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이 承繼하는 農地購入資金融資의 債權과 同基金의 債務의 일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融資金 및 預託金등에 관한 金利 기타 조건은 이 法에 의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中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中전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を 貸與받은 機關은 당해 融資금이 回收될 때까지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會로 본다.

④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1990年度 運用計劃은 이 法 施行전에 國會에 제출된 "1990年度 農漁村發展基金運用計劃"으로 같음한다.

⑤1990年度 政府歲出豫算에 計上된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의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出捐金중 農地購入資金を 제외한 出捐金과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融資金 및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農業機械化資金의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融資金은 基金에 計上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農漁民後繼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에 의하여 선정된 農漁民後繼者는 이 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 (副業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하여 지정된 副業團地는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特産團地로 본다.

第6條 (絶對農地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地域이 지정·告示된 市·郡地域의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の保全 및 利用에 관한法律 第2條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絶對農地와 相對農地의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絶對農地에 대하여는 그 지정·告示를 廢止한 것으로 본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期까지 振興地域을 지정·告示하지 아니한 地域의 農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絶對農地·相對農地의 구분이 廢止된 地域의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の保全 및 利用에 관한法律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絶對農地는 "振興地域안의 農地"로, 同法 第4條第4項 및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對農地"는 "振興地域밖의 農地"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내지 第10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水産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및 第17條를 각각 削除한다.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6號를 第7號로 하고, 同項에 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機械事後奉仕業所

第2條第2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銀行法 第3條第1項의 金融機關

④農地擔保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農地抵當機關)이 法에 의하여 農地抵當權者가 될 수 있는 者는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山林組合과 그 中央會 및 銀行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이하 "農地抵當機關"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民法에 의하여 設定되는 抵當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2項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12條第6項에 의한 損失補填과 同條第8項에 의한 生産調整을 위한 지원

⑥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1項에 第2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인과 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營農會社

第110條의3第2項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特産團地안에서 特産品을 生産하는 者가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 다만, 取得日부터 1年이내에 正當한 사유없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第128條의2第2項에 第2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5.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特産團地안에서 特産品을 生産하는 者가 취득하는 事業用 財産에 대한 登記

第198條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인이 農地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出資한 農民이 그 持分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農地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農地稅의 納稅義務을 진다.

附則 <제4377호,1991.5.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農漁村發展基金運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1991年度 農漁村發展基金運用計劃은 이 法 第53條의2, 第54條, 第55條 및 第59條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그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農漁村發展基金의 債權·債務引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으로 基金을 農漁村發展計定과 農水産業構造改善計定로 구분하여 計理하기 전의 債權·債務등 일체의 權利·義務는 당해 구분 計理日을 기준으로 하여 이 法에 의한 農漁村發展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④삭제 <1991.11.22>

附則 <제4400호,1991.11.22>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소방법) <제4419호,1991.12.14>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제2조 내지 제6조 省略

제7조(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5호중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新築등의 許可·확인에 대한 同意"를 "소방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한 건축물의 新築등의 허가·사용검사에 대한 동의"로, "同法 第42條의10"을 "동법 제62조"로, "同法 第15條"를 "동법 제16조"로, "同法 第16條"를 "동법 제17조"로 한다.

⑤내지 ⑧省略

제8조 省略

附則(수도법) <제4429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⑨省略

⑩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水道法 第12條(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⑪내지 <18>省略

附則 <제4552호,1993.6.11>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유효기간) 第47條第1項第4號의 規定은 同法 施行日부터 2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第3條(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開墾·干拓한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당해 開墾·干拓 農地에 대하여는 第43條의2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農地改革法 第25條의2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법 施行당시 開墾·干拓중인 者가 당해 開墾·干拓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農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4條(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43條의3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施行전에 相續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契約外의 原因으로 인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

2. 이 법 施行전에 離農을 한 者

第5條(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農地擔保法에 의하여 취득한 抵當權은 第69條의2의 改正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廢止) 農地擔保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의 保全및利用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號중 "相對農地"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이하 "振興地域"이라 한다)밖의 農地"로 하고, 第21條第1項중 "絕對農地"를 "振興地域안 的 農地"로 同條第2項중 "相對農地"를 "振興地域밖 的 農地"로 한다.

附則(임업협동조합법) <제4556호,1993.6.11>

第1條(施行日등)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④省略

⑤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第2項중 "山林組合中央會"를 "山林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⑥省略

附則(국토이용관리법) <제4572호,1993.8.5>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중 "耕地地域"을 "農林地域 및 準農林地域"으로 한다.

⑥및 ⑦省略

附則(국채법) <제4675호,1993.12.31>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57條를 削除한다.

第58條第3項중 "債券의 交付 및 償還業務와 基金의 運用·관리"를 "基金의 運用 및 관리"로 한다.

第63條第1項중 "債券의 發行으로 造成되는 資金"을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借入金 및 發行債券의 元利金の 償還金"을 "借入金の 元利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の 償還金"으로, "債券發行費用·財産賣却費用"을 "財産賣却費用"으로 한다.

⑩및 ⑪省略

附則(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690호,1993.12.31>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 내지 第66條를 削除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법의 해당 條項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2號 "同法 第20條의2"를 "同法 第20條"로 한다.

②내지 ⑩省略

附則(수도법) <제4781호,1994.8.3>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2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와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竣工檢査 및 水質檢査

⑥내지 ⑩省略

第6條 省略

附則(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⑫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 本文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한다.

第36條第1項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로 하고, 同條第2項중 "郡守"를 "市長·郡守"로 한다.

第43條의3第1項중 "市長"을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으로 한다.

第67條第1項 本文중 "郡守가 開發計劃의"를 "市長·郡守가 開發計劃의"로 한다.

第4條 省略

附則(농지법) <제4817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6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의 敷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の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거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設置한 第2條第1號나目的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의 敷地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기존 農地所有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農地을 所有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6條第1項·第10條·第11條·第22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當해 所有農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을 처분하여야 하는 者가 처분하지 아니한 處分對象農地에 대한 處分期限 및 協議買受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다.

②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된 農業振興地域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8條 (農地轉用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와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 또는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거나 農地轉用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및 ③省略

第9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종전의 法律에 의한 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農地賃貸借管理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附則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法의 改正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地改革法,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및 農地賃貸借管理法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장의 題名을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投資財源등"으로 한다.

第40條 내지 第43條, 第43條의2 내지 第43條의4, 第44條·第45條, 第47條, 第69條의2, 第75條, 第75條의2, 第76條第1號 및 第78條第1項第1號·第2號를 削除하며 第77條중 "第75條 내지"를 削除한다.

第45條의2第1項第1號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第4條第4項"을 "農地法 第40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6項을 第7項으로 하며, 同條第5項중 "農地의保全및利用에 관한法律 第19條"를 "農地法 第53條"로 하여 同項을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5項"을 "第6項"으로 하여 同項을 第5項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④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의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의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第67條第1項第1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的 許可

②및 ⑨省略

第16條 省略

附則 <제4818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專業農漁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專業農漁家は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專業農業者등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農漁民後繼者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선정된 農業者後繼者등으로 본다.

第3條(委託營農會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委託營農會社는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으로 본다.

第4條(農水産技術政策審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技術政策審議會는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農林水産技術政策審議會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3號"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4號"로 한다.

第6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農漁民後繼者 또는 委託營農會社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第4條 또는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農業者後繼者등 또는 農業會社法人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농어촌정비법) <제4823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集團마을造成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및 地方讓與金法에 의한 集團마을造成事業은 이 법에 의한 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으로 본다.

第4條(農漁村休養資源開發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農漁村休養地 및 民泊農漁家は 이 법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休養地事業者 및 民泊農漁家로 본다.

第5條 및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를 削除한다.

③내지 ⑥省略

附則(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의2第2項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農地의 公示地價(해당農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個別土地價格)"를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農

地の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公示地價의 수준"을 "個別公示地價의 수준"으로 한다.

⑧내지 ⑩省略

附則(농어촌정비법) <제5279호,1997.1.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 本文을 다음과 같이 한다.

定住生活圈의 開發은 面의 地域을 대상으로 하되, 定住生活圈開發事業의 施行중에 面에서 邑으로 변경된 地域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面으로 본다.

②및 ③省略

附則(낙농진흥법) <제5349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13號을 削除한다.

②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農業·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③생략

④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및 第3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農業人등"이라 함은 農業·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專業漁業人"이라 함은 漁業의 경영규모와 技術水準, 投入勞動時間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漁業人을 말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專業漁業人の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漁業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經營合理化를 도모함으로써 生産性を 향상시킬 수 있도록 漁業에 관한 經營能力和 意慾이 있는 漁業人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漁業人으로 육성한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漁業人後繼者の 육성)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漁村에 定着하여 漁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靑少年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人後繼者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4條의2를 削除한다.

第5條第2項第3號중 "第6條"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로 하고, 同項第4號중 "第7條"를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로 한다.

第5條의2, 第6條, 第7條, 第10條, 第10條의2 및 第1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1條第1項중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發展基本方針"을 "農業·農村基本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으로 한다.

第34條第1項중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6條第1項중 "市·郡農漁村發展審議會"를 "農業·農村基本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農政審議會"로 한다.

第38條 및 第4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7章(第48條 내지 第52條)을 削除한다.

⑤내지 <19>생략

第11條 생략

附則<제5761호,1999.2.5>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16>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6號중 "同法 第23條"를 "同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17>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생략

⑦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9號중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를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로 한다.

⑧내지 <35>생략

第8條 생략

附則(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⑦생략

⑧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⑨내지 <41>생략

第5條 생략

부칙(農漁村整備法) <제6221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第7號·第8號, 第21條第2項第2號, 第22條, 第23條, 第26條 내지 第28條, 第5章(第32條 내지 第39條), 第46條 및 第67條 내지 第69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및 ③省略

第8條 省略

부칙(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제6223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1. 내지 3.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및 第13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및 ③省略

第9條 省略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①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의2.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1.27, 2005.12.29>

1. 농림부장관이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농림부의 재해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

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제5조 (보험사업자) ①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험요율의 산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모집) ①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7>

1.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의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제8조 (손해평가)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농작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과 보험업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농업인 그 밖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회계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대상농작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재정지원)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재보험사업)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3 (기금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4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6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4조의7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 (보고 등) 농림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업법의 적용)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7조·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4조·제127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62조·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농협중앙회"로 본다. <개정 2005.1.27>

제17조 (벌칙)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과태료)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②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부칙 <제6377호,2001.1.26>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373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6>내지 <68>생략

부칙 <제8281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8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과 국내외 농어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4.12.31>

1.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어업·농어촌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理解)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4.12.31, 2006.9.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12인 이내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4인 이내
3.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7인 이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개정 2004.12.31>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 또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농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임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어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상임위원장의 직을 대행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은 상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 ①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지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는 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6636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부칙 <제7274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5>내지 <68>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농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

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

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용자한다.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 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

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불 방법,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만 해당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목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나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 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

지가 없는 경우

4. 채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농림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⑩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9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⑪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 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 (원상회복 등)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시·구·읍·면의 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인 시·구·읍·면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

③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구·읍·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 (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2. 농지의 위탁경영자
3. 농지의 임대인
4. 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56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자

제6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52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9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은 농지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어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을 낸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지원부는 이 법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제10조 (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793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同法 第38條第1項"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科學館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第4號 중 "農地法 第37條 또는 第45條"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農地法 第30條"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7>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農地法 第40條"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第40條"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送油管安全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36조"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土地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8條"을 "동법 제36조"로 한다.

<69>學敎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第34條第1項第7號 중 "「농지법」 第40條"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第46條"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業人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바탕으로 農業人의 經濟적·社會적·文化적 地位의 향상과 農業의 競爭力強化를 통하여 農業人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組合"이라 함은 地域組合과 品目組合을 말한다.
2. "地域組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 地域畜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3. "品目組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을 말한다.
4. "中央會"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말한다.

第3條 (명칭) ①地域組合은 地域名을 붙이거나 地域의 特性을 나타내는 農業協同組合 또는 畜産業協同組合의 명칭을, 品目組合은 地域名과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協同組合의 명칭을, 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가 아니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條 (法人格등) ①이 법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과 中央會는 각각 法人으로 한다.

②組合과 中央會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第5條 (最大奉仕의 원칙) ①組合과 中央會는 그 業務에 있어서 組合員 또는 會員을 위하여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②組合과 中央會는 일부 組合員 또는 일부 會員의 이익에 偏重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組合과 中央會는 營利 또는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中央會의 責務) ①中央會는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中央會는 會員의 사업과 직접 競爭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會員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第7條 (公職選舉에의 干渉금지) ①조합, 제112조의3의 規定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規定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公職選舉에 있어서 特定政黨을 支持하거나 特定人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②누구든지 조합등과 中央會를 이용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第8條 (賦課金の 免除) 조합등과 中央會의 業務 및 財産에 대하여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租稅外의 賦課金を 免除한다. <개정 2004.12.31>

第9條 (國家 및 公共團體의 協力등) ①國家와 公共團體는 조합등과 中央會의 自律性を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②國家와 公共團體는 조합등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필요한 經費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中央會의 會長은 조합등과 中央會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國家와 公共團體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와 公共團體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10條 (다른 協同組合등과의 協力)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法律에 의한 協同組合 및 外國의 協同組合과의 相互協力·理解增進 및 共同事業開發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11條 (다른 法律의 적용등)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제37조 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5조의3제2호 내지 제4호(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69조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②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③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5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銀行計定 및 信託計定에 의한 信用供與에 한한다.

④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中央會의 信用事業會計에 속하는 業務用不動産에 한한다.

⑤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銀行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정함에 있어서는 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金融機關의 健全性監督에 관한 원칙과 中央會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農林部長官과 이를 協議하여야 한다.

⑥組合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商法 第155條 내지 第1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①組合과 中央會의 사업에 대하여는 保險業法, 糧穀管理法

第19條, 鐵道小運送業法 第3條,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5條·第9條 및 第73條, 貨物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5.7.29>

②제112조의3의 規定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의 規定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철도소운송법 제3조 및 貨物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③中央會가 租稅特例制限法 제106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4, 2004.10.22>

第2章 地域農業協同組合

第1節 目的과 區域

第13條 (目的) 地域農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地域農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農業生産性を 제고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하며,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技術, 資金 및 情報등을 제공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4條 (區域과 支事務所) ①地域農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등을 고려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區域안에서는 2 이상의 地域農協을 設立할 수 없다.

②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2節 設立

第15條 (設立認可등) ①地域農協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區域안의 20人 이상의 組合員資格을 가진 者가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은 후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組合員數·出資金 등 認可에 필요한 기준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創立總會의 議事は 開議전까지 發起人에게 設立同意書를 제출한 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發起人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申請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發起人이 申請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農協의 設立認可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申請日부터 60日 이내에 이를 認可하여야 한다.

1. 設立認可 具備書類가 未備된 때
2. 設立의 節次, 定款 및 事業計劃書의 내용이 法令에 위반된 때
3. 기타 設立認可 기준에 미달된 때

第16條 (定款記載事項) 地域農協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區域
4.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5.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脫退 및 除名에 관한 사항
6. 出資 1座의 금액과 組合員의 出資座數限度 및 納入方法과 持分計算에 관한 사항
7. 經費賦課와 過怠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
8. 積立金의 종류와 積立方法에 관한 사항
9. 剩餘金의 처분과 損失金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會計年度와 會計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12. 總會 기타 議決機關과 任員의 定數, 選出 및 解任에 관한 사항
13. 幹部職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14.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存立時期 또는 解散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16. 設立후 現物出資를 약정한 때에는 그 出資財産의 명칭, 數量, 價格, 出資者의 姓名·住所와 現金出資로 轉換 및 還買特約條件
17. 設立후 讓受를 약정한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명칭, 數量, 價格과 讓渡人의 姓名·住所

第17條 (設立事務의 引繼와 出資納入) ①發起人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務를 組合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長이 그 事務를 引受한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出資金을 納入하게 하여야 한다.

③現物出資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入期日內에 出資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 登記·登錄 기타 權利의 移轉에 필요한 書類를 구비하여 地域農協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8條 (地域農協의 成立) ①地域農協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地域農協의 設立無效에 관하여는 商法 第328條를 準用한다.

第3節 組合員

第19條 (組合員의 資格) ①組合員은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農業人이어야 하며, 2 이상의 地域農協에 加入할 수 없다.

②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으로서 그 主된 事務所를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두고 農業을 經營하는 法人은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準組合員) ①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의 區域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로서 그 地域農協의 事業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를 準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②地域農協은 準組合員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加入金 및 經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準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할 權利를 가진다.

第21條 (出資) ①組合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을 出資하여야 한다.

②出資 1座의 금액은 均一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出資 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④組合員의 出資額은 質權의 目的이 될 수 없다.

⑤組合員은 出資의 納入에 있어서 地域農協에 대한 債權과 相計할 수 없다.

제21조의2 (우선출자) 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第22條 (回轉出資) 地域農協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外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利用實績에 의하여 組合員에게 配當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組合員으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1條第5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23條 (持分の 讓渡·讓受와 共有禁止) ①組合員은 地域農協의 승인없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②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고자 하는 때에는 加入申請, 資格審査등 加入의 예에 의한다.

③持分讓受人은 그 持分에 관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④組合員의 持分은 共有할 수 없다.

第24條 (組合員의 責任) ①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한도로 한다.

②組合員은 地域農協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生産한 農産物을 地域農協을 통하여 出荷하는 등 그 事業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第25條 (經費와 過怠金の 賦課) ①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에게 經費와 過怠金を 賦課할 수 있다.

②組合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와 過怠金の 納入에 있어서 地域農協에 대한 債權과 相計할 수 없다.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1]

第27條 (議決權의 代理) ①組合員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議決權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組合員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代理人은 組合員 또는 本人과 同居하는 家族(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경우에는 組合員·社員등 그 構成員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代理人이 代理할 수 있는 組合員의 數는 1인에 한한다.

③代理人은 代理權을 증명하는 書面을 地域農協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8條 (加入) ①地域農協은 正當한 사유없이 組合員의 加入을 거절하거나 加入에 관하여 다른 組合員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새로이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하여야 한다.

③地域農協은 組合員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④死亡으로 인하여 脫退된 組合員의 相續人(共同相續인 경우에는 共同相續人이 선정한 1人의 相續人을 말한다)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出資를 承繼하여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承繼한 相續人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9條 (脫退) ①組合員은 地域農協에 脫退의 의사를 통지하고 脫退할 수 있다.

②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1. 組合員의 資格이 없는 때

2. 死亡한 때

3. 破産한 때

4.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

5. 組合員인 法人이 解散한 때

③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는 組合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第2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지를 確認하여야 한다.

第30條 (除名) ①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組合員에 대하여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

1. 1年 이상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組合員

2. 出資 및 經費의 納入 기타 地域農協에 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組合員

3. 기타 定款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組合員

②第1項의 경우에 地域農協은 總會開會 10日전에 그 組合員에 대하여 除名의 사유를 통지하고 總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31條 (持分還給請求權과 還給停止) ①脫退組合員은 脫退당시 會計年度의 다음 會計年度부터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된다.

③地域農協은 脫退組合員이 地域農協에 대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을 정지할 수 있다.

第32條 (脫退組合員의 損失額負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分을 계산함에 있어서 地域

農協이 그 財産으로 地域農協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脫退組合員이 부담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3條 (議決取消의 請求등) ①組合員은 總會(創立總會를 포함한다)의 召集節次, 議決方法, 議決內容 또는 任員選舉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定款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議決이나 選舉에 따른 當選의 取消 또는 無效確認을 農林部長官에게 請求하거나 이를 請求하는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請求하는 때에는 議決日 또는 選舉日부터 1月 이내에 組合員 300人 또는 100分の 5 이상의 同意를 얻어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그 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3月 이내에 이에 대한 措置結果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에 관하여는 商法 第376條 내지 第3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節 機關

第34條 (總會) ①地域農協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組合員으로 구성한다.

③ 定期總會는 매년 1회 定款이 정하는 時期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召集한다.

第35條 (總會議決事項등)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定款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3. 組合員의 除名

3의2. 합병

4. 任員의 選出 및 解任

5. 規約의 制定 및 改廢

6. 事業計劃의 수립, 收支豫算의 編成과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定款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

8. 中央會의 設立發起人이 되거나 이에 加入 또는 脫退하는 것

9. 任員의 報酬 및 實費辦償

10.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경우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第36條 (總會의 召集請求) ①組合員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分の 10 이상의 同意를 얻어 召集의 目的과 이유를 기재한 書面을 제출하여 總會의 召集을 組合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組合長은 2週 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總會를 召集할 者가 없거나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날부터 2週日 이내에 正當한 사유없이 組合長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에는 監事가 5日 이내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監事가 第3項의 기간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召集을 請求한 組合員의 代表가 이를 召集한다. 이 경우 組合員이 議長의 職務를 수행한다.

第37條 (組合員에 대한 통지와 催告) ①地域農協이 組合員에게 통지 또는 催告를 하는 때에는 組合員名簿에 기재된 組合員의 住所 또는 居所로 하여야 한다.

②總會召集의 통지는 總會開會 7日전까지 會議目的 등을 기재한 總會召集通知書의 發送에 의한다. 다만, 같은 目的으로 總會를 다시 召集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會 전일까지 통지한다.

第38條 (總會의 開議와 議決) 總會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組合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3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9條 (議決權의 제한등) ①總會에서는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地域農協과 組合員과의 利害가 相反되는 議事에 관하여 해당組合員은 그 議決에 參與할 수 없다.

③組合員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組合長에 대하여 書面으로 일정한 사항을 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40條 (總會의 議事錄) ①總會의 議事に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の 進行狀況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議長과 總會에서 選出한 5人 이상의 組合員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1條 (總會議決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組合員投票로써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議決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組合員投票의 통지·방법 기타 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1. 해산·분할 또는 品目組合으로의 組織變更
2. 제45조제4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의 選出
3.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解任
4. 합병

②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한 議決 또는 選出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1. 第1項第1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

2. 第1項第2號의 사항은 有效投票의 最多得票者를 選出. 다만, 最多得票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결정한다.

3. 第1項第3號의 사항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第42條 (代議員會) ①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41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總會의 議決에 관하여 總會에 같음하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②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③代議員의 定數, 任期 및 選出方法은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任期滿了年度 決算期의 最終月 이후 그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전에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定期總會가 終結될 때까지 그 任期가 연장된다.

④組合長을 제외한 地域農協의 任員이나 職員은 代議員을 兼職하여서는 아니된다.

⑤代議員會에는 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代議員의 議決權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第43條 (理事會) ①地域農協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組合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하되, 組合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組合員의 資格審査 및 加入承諾

2. 法定積立金の 사용

3. 借入金의 最高限度

4. 經費의 賦課와 徵收方法

5.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중 第35條第1項第6號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幹部職員의 任免

7. 業務用 不動産의 취득과 처분

8. 業務規程의 制定 및 改廢와 事業執行方針의 決定

9.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法令 또는 定款에 規定된 사항

11. 기타 組合長 또는 理事 3分の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理事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組合長 또는 常任理事의 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⑤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者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幹部職員은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44條 (運營評價諮問會議의 구성·운영) ①地域農協은 地域農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組合員 및 外部專門家 15人 이내로 運營評價諮問會議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運營評價諮問會議는 地域農協의 運營狀況을 評價하고 그 개선사항을 組合長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③組合長은 運營評價諮問會議의 建議事項을 理事會 및 總會에 보고하고, 地域農協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第45條 (任員의 定數 및 選出) ①地域農協에 任員으로서 組合長 1人을 포함한 7人 이상 25人 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그 定數는 定款으로 정한다. 이 경우 理事중 3分の 2 이상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②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을 포함한 理事중 2人 이내, 監事중 1人을 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組合長을 非常任으로 운영하는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常任理事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아닌 이사중 1인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④組合長은 組合員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의 방법으로 選出한다.

1. 組合員이 總會 또는 總會외에서 投票로 直接選出
2. 代議員會가 選出
3. 理事會가 理事중에서 選出

⑤組合長외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常任理事는 組合業務에 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總會에서 選出한다. <개정 2004.12.31>

⑥常任인 任員을 제외한 地域農協의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⑦任員의 選出 및 추천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46條 (任員의 職務) ①組合長은 地域農協을 代表하며 業務를 執行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때에는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組合長은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③理事(組合員이 아닌 理事를 제외한다)는 組合長이 闕位·拘禁되거나 30일 이상의 長期入院등의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12.31>

④監事는 地域農協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며, 專門적인 會計監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에 會計監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⑤監事는 地域農協의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總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總會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에게 總會의 召集을 요구하거나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⑥監事는 總會 또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監事の職務에 관하여는 商法 第412條의4·第413條·第413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 (監事の代表權) ①地域農協이 組合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하는 때에는 監事が 地域農協을 代表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地域農協과 組合長 또는 理事間의 訴訟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任員の任期) ①組合長과 理事의 任期는 다음 각호와 같고, 監事の 任期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 한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設立 당시의 組合長·理事 및 監事の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조합장·상임이사 및 조합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경우에는 2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집행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속 여부를 정한다. <신설 2004.12.31>

③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の 任期滿了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9條 (任員の缺格事由)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域農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다만, 第11號의 規定은 組合員인 任員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7.21>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64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만료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8.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9. 第172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罰金 100萬원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4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0. 이 法에 의한 任員選舉에서 당선되었으나 歸責事由로 인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取消된 者로서 그 無效 또는 取消가 確定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選舉日公告日 현재 당해 地域農協에 대하여 定款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債務償還을 延滯하고 있는 者

②삭제 <2004.12.31>

③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任員은 당연히 退職된다. <개정 2004.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전에 關여한 行위는 그 效力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第50條 (選舉運動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5.7.21>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金錢·物品·響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約束하는 행위

2.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1號에 規定된 行위를 하는 행위

3. 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이익이나 職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任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選舉運動을 위하여 組合員을 戶別로 訪問하거나 特定場所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地域農協의 任員 또는 代議員選舉와 關連하여 演說·壁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를 誹謗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關連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⑤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7.2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關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①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제외한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고자 하는 해당 조합을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7.21]

第51條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개정 2004.12.31>) ①地域農協은 任員選舉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4.12.31>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理事會가 組會員(임·직원을 제외한다)과 選舉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위촉하는 7人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31>

③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④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4.12.31>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第52條 (任職員의 兼職禁止 등) ①組合長과 理事는 그 地域農協의 監事를 兼職할 수 없다.

②地域農協의 任員은 그 地域農協의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③地域農協의 任員은 다른 組合의 任員 또는 職員을 兼職할 수 없다.

④地域農協의 任職員의 競業禁止에 관하여는 商法 第39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組合長 및 理事는 理事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당해 地域農協과 定款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第53條 (任員의 義務와 責任) ①地域農協의 任員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命令 및 定款의 規定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地域農協에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개정 2004.12.31>

③任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3者에게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행위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議決에 贊成한 理事도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이 경우 議決에 참가한 理事중 異議를 제기한 사실이 議事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者는 그 議決에 贊成한 것으로 推定한다.

⑤任員이 허위의 決算報告·登記 또는 公告를 하여 地域農協 또는 第3者에게 끼친 損害에 대하여도 第2項 및 第3項과 같다.

第54條 (任員의 解任) ①組會員은 組會員 5分の 1이상의 同意로 總會에 任員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總會는 組會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組會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組會員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選出方法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의 방법으로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代議員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代議員 3分の 1 이상의 요구로 代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代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解任議決

2. 理事會에서 選出된 組合長은 理事會의 解任要求에 의하여 總會에서 解任議決. 이 경우 理事會의 解任要求와 總會의 解任議決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 準用한다.

3. 組合員이 直接選出한 組合長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組合員投票로 解任決定. 이 경우 代議員會의 議決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를 準用하며, 組合員投票에 의한 解任決定은 組合員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③解任의 議決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任員에게 解任의 이유를 통지하여 總會 또는 代議員會에서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55條 (民法·商法の 準用) 地域農協의 任員에 관하여는 民法 第35條, 第63條와 商法 第382條第2項, 第385條第2項·第3項, 第386條第1項, 第402條 내지 第4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보고,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第56條 (職員의 任免) ①地域農協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長이 任免한다. 다만, 常任理事를 두는 地域農協의 경우에는 常任理事의 提請에 의하여 組合長이 任免한다.

②地域農協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幹部職員을 두어야 하며, 幹部職員은 中央會의 會長이 실시하는 銓衡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組合長이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任免한다.

③幹部職員에 관하여는 商法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7條와 非訟事件 節次法 第149條, 第179條 내지 第1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節 사업

第57條 (사업) ①地域農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7.13>

1. 教育·支援事業

가. 農業生産의 增進과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教育訓練

나. 農業 및 農村生活關聯 情報의 蒐集 및 제공

다. 住居 및 生活環境 개선과 文化向上을 위한 教育·지원

라.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마.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農業技術의 擴散을 위한 示範圃, 育苗場, 研究所의 운영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教育 및 弘報

2. 經濟事業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등의 사업

나. 組合員이 生産하는 農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등의 사업

다.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마.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農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加功事業·觀光事業등 農外所得增
大事業

바.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의 仲介
사. 委託營農事業
아. 農業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자. 農村型 住宅普及등 農村住宅事業
차. 보관사업

3. 信用事業

가. 組合員의 預金과 積金의 受入
나. 組合員에게 필요한 資金의 貸出
다. 內國換
라. 어음割引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보관등 保護預受業務

4. 共濟事業

5. 福祉厚生事業

가. 福祉施設의 設置 및 관리
나. 葬祭事業
다. 醫療支援事業

6.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7.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8. 다른 法令이 地域農協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0.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地域農協은 第1項의 事業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中央會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③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한도와 방법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農協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할 수 있는 資金의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地域農協에 第1項第7號의 사업을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農協과 委託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地域農協은 第1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補填資金 및 貸損補填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第58條 (非組合員의 사업이용) ①地域農協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57條第1項第2號 目(農業人이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바目·사目·차目, 第3號 目, 第5號 目·나目, 第7號 및 第10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組合員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組合員과 동일한 世帶에 속하는 者, 다른 組合 또는 다른 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地域農協의 組合員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地域農協은 品目組合의 組合員이 地域農協의 信用事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59條 (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①地域農協은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 및 그 加工品등의 流通을 지원하기 위하여 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運用한다.

1. 農産物의 契約栽培事業
2.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出荷調節事業
3. 農産物의 共同規格 出荷促進事業
4. 買取事業
5. 기타 地域農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流通關聯사업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中央會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

第60條 (組合員에 대한 敎育) ①地域農協은 組合員에게 協同組合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地域農協은 組合員의 權益이 增進될 수 있도록 組合員에 대하여 品目別 專門技術敎育과 經營相談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地域農協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相談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品目別로 專門相談員을 둘 수 있다.

제61조 (공제규정) ①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第6節 會計

第62條 (會計年度) 地域農協의 會計年度는 定款으로 정한다.

第63條 (會計의 구분등) ①地域農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一般會計는 綜合會計로 하되, 信用事業會計와 信用事業의의 會計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特別會計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特定資金を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一般會計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置한다.

④一般會計와 特別會計間,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의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 및 組合과 組合員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은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信用事業部門과 信用事業의의 事業部門間의 財務關係에 관한 財務基準을 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組合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會의 會長이 정한다. 다만, 信用事業의 會計處理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할 수 있다.

第64條 (事業計劃과 收支豫算) ①地域農協은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와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事業計劃과 收支豫算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3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65條 (운영의 公開) ①組合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작성하여 그 運營狀況을 公開하여야 한다.

②組合長은 定款, 總會와 理事會의 議事錄 및 組合員名簿를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③組合員과 地域農協의 債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閱覽하거나 그 書類의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域農協이 정한 費用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組合員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會計帳簿 및 書類등의 閱覽 또는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으며 地域農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⑤組合員은 地域農協의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同意를 얻어 地域農協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法院에 檢査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46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31>

제65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조합장의 임기개시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당해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감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지역농협의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66條 (餘裕資金의 運用) ①地域農協의 業務상의 餘裕資金은 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中央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置
2. 國債·公債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預置를 함에 있어서 그 下限比率 또는 金額은 餘裕資金의 健全한 運用을 阻害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中央會의 理事會가 정한다.

第67條 (法定積立金, 移越金 및 任意積立金) ①地域農協은 每 會計年度의 損失補填과 財産에 대한 減價償却에 相當하고 剩餘가 있는 때에는 自己資本의 3배에 달할 때까지 剩餘金의 100分の 10 이상을 積立(이하 "法定積立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己資本은 納入出資金, 回轉出資金, 加入金, 諸積立金 및 未處分利益剩餘金의 合計額(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地域農協은 第57條第1項第1號의 事業비용에 相當하기 위하여 剩餘金의 100分の 20 이상을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하여야 한다.

④地域農協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準備金등을 積立(이하 "任意積立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7조의2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68條 (損失의 補填과 剩餘金의 配當) ①地域農協은 每 會計年度의 決算結果 損失金(當期損失金を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未處分移越金·任意積立金·法定積立金·資本積立金·回轉出資金의 順으로 이를 補填하며, 補填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한다.

②地域農協은 損失을 補填하고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法定積立金, 移越金 및 任意積立金を 공제한 후가 아니면 剩餘金의 配當을 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31>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이 정하는 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第69條 (利益金의 積立)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발생하는 金額을 資本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1. 減資에 의한 差益
2. 資産再評價差益
3. 合併差益.

第70條 (法定積立金の 사용금지) 法定積立金は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의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地域農協의 損失金を 補填하는 때

2. 地域農協의 區域이 다른 組合의 區域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財産의 일부를 다른 組合에 讓與할 때

第71條 (決算報告書の 제출, 비치와 總會承認) ①組合長은 定期總會日 1週전까지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등을 말한다)를 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主된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組合員과 債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閱覽하거나 그 寫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地域農協이 정한 費用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組合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와 監事の 의견서를 定期總會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任員의 責任解除에 관하여는 商法 第45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2條 (출자감소의 의결<개정 2004.12.31>) ①地域農協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議決한 때에는 그 議決이 있는 날부터 2週 이내에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경우 異議가 있는 債權者는 일정한 期日내에 이를 陳述하라는 취지를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1月 이상 公告하고,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催告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이 있는 날부터 2週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73條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개정 2004.12.31>) ①債權者가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日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②債權者가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地域農協이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議決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74條 (組合의 持分取得등의 금지) 地域農協은 組合員의 持分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第7節 合併·分割·組織變更·解散 및 清算

第75條 (合併) ①地域農協이 다른 組合과 合併하는 때에는 合併契約書를 작성하고 各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合併은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合併으로 인하여 地域農協을 設立하는 때에는 各 總會에서 設立委員을 選出하여야 한

다.

④設立委員의 定數는 20人 이상으로 하고 合併하고자 하는 各 組合의 組合員중에서 同數를 選任한다.

⑤設立委員은 設立委員會를 開催하여 定款을 작성하고 任員을 選任하여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⑥設立委員會에서 任員을 選出하는 때에는 設立委員이 추천한 者중 設立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⑦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農協의 設立에 관하여는 合併設立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⑧組合의 合併無效에 관하여는 商法 第5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75조의2 (합병에 따른 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잔여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조합장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로 한다.

②합병후 존속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잔여임기는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76條 (合併支援) 國家와 中央會는 地域農協의 合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豫算의 범위안에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77條 (分割) ①地域農協이 分割하는 때에는 分割設立되는 組合이 承繼하여야 하는 權利義務의 범위를 總會에서 議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設立에 관하여는 分割設立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8條 (組織變更) ①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組織變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農協의 組織變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第2節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組織變更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에 관하여는 合併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④信用事業을 행하고 있는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組織變更을 한 경우에는 組織變更 당시 행하고 있는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第79條 (合併으로 인한 權利義務의 承繼) ①合併후 存續하거나 設立되는 地域農協은 消滅되는 地域農協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地域農協의 合併후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消滅된 地域農協의 名義는 存續되거나 設立된 合併地域農協의 名義로 본다.

第80條 (合併·分割 또는 組織變更의 公告, 催告등) 第72條 및 第73條의 規定은 地域農協의 合併·分割 또는 組織變更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81條 (合併登記의 效力) 地域農協의 合併은 合併후 存續하거나 設立되는 地域農協이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으로써 그 效力을 가진다.

第82條 (解散事由) 地域農協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解散한다.

1. 定款에서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2. 總會의 議決
3. 合併, 分割
4. 設立認可의 取消

第83條 (破産宣告) 地域農協이 그 債務를 完濟할 수 없게 된 때에는 法院은 組合長이나 債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破産을 宣告할 수 있다.

第84條 (清算人) ①地域農協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組合長이 清算人이 된다. 다만, 總會에서 다른 사람을 清算人으로 選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清算人은 職務의 범위안에서 組合長과 동일한 權利義務를 가진다.

③農林部長官은 地域農協의 清算事務를 監督한다.

第85條 (清算人의 職務) ①清算人은 就任후 지체없이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貸借對照表를 작성하여 財産處分의 方法을 정한 후 이를 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회 이상 總會를 召集하여도 總會가 開議되지 아니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第86條 (清算殘餘財産) 解散한 地域農協의 清算殘餘財産은 따로 法律로 정하는 것 외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第87條 (清算人의 財産分配制限) 清算人은 債務를 辨濟하거나 辨濟에 필요한 金額을 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財産을 分配할 수 없다.

第88條 (決算報告書) 清算事務가 終結된 때에는 清算人은 지체없이 決算報告書를 작성하고 이를 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第85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9條 (民法등의 準用) 地域農協의 解散과 清算에 관하여는 民法 第79條, 第81條, 第87條, 第88條第1項·第2項, 第89條 내지 第93條第1項·第2項과 非訟事件節次法 第12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節 登記

第90條（設立登記）①地域農協은 出資金의 納入이 완료된 날부터 2週 이내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設立登記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第16條第1號 내지 第4號와 第15號 내지 第17號에 規定한 사항
2. 出資總座數와 納入한 出資金의 總額
3. 設立認可年月日
4. 任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③設立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④第2項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設立認可書·創立總會議事錄 및 定款의 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合併 또는 分割로 인한 地域農協의 設立登記申請書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외에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催告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나 擔保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1條（支事務所의 設置登記）地域農協의 支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 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4週 이내에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92條（事務所의 移轉登記）①地域農協이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前所在地와 現所在地에서 각각 3週 이내에 移轉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第93條（變更登記）①第90條第2項 各號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主된 事務所 및 당해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각각 3週 이내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第90條第2項第2號의 사항에 관한 變更登記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計年度末을 기준으로 그 會計年度 종료후 1月 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書에는 登記事項의 변경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出資減少, 合併 또는 分割로 인한 變更登記申請書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외에 第72條 및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 또는 催告한 사실과 異議를 陳述한 債權者에 대하여 辨濟나 擔保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4條（行政區域의 地名變更과 登記）①行政區域의 地名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登記簿 및 定款에 기재된 당해 地域農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區域에 관한 地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地域農協은 지체없이 이를 登記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登記所는 登記簿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第95條（合併登記등）①地域農協이 合併한 때에는 合併한 날부터 2週 이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併후 存續하는 地域農協은 變更登記를, 合併으로 消滅되는 地域農協은 解散登

記를, 合併으로 設立되는 地域農協은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各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合併으로 消滅되는 地域農協의 組合長이 申請人이 된다.

③第2項의 경우에는 解散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6條 (組織變更登記) 地域農協이 品目組合으로 변경된 때에는 2週 이내에 그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地域農協에 관하여는 解散登記를, 品目組合에 관하여는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解散登記에 관하여는 第97條第3項의 規定을, 設立登記에 관하여는 第90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97條 (解散登記) ①地域農協이 解散한 때에는 合併과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 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 이내에 解散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清算人이 申請人이 된다.

③解散登記申請書에는 解散事由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設立認可의 取消로 인한 解散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第98條 (清算人登記) ①清算人은 그 就任日부터 2週 이내에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그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組合長이 清算人이 아닌 경우에는 申請人의 資格을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9條 (清算終結登記) ①清算이 終結된 때에는 清算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 이내에, 支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 이내에 清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申請書에는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決算報告書의 승인을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00條 (登記日の 起算日) 登記事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認可·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認可등의 文書가 到達한 날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101條 (登記簿) 登記所는 地域農協登記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102條 (非訟事件節次法の 準用) 地域農協의 登記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중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章 地域畜産業協同組合

第103條 (目的) 地域畜産業協同組合(이하 이 章에서 "地域畜協"이라 한다)은 組合員의 畜産業生産性を 提고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하며, 組

會員이 필요로 하는 技術, 資金 및 情報등을 제공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04條 (區域) 地域畜協의 區域은 行政區域 또는 經濟圈등을 중심으로 하여 定款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區域안에서는 2이상의 地域畜協을 設立할 수 없다.

第105條 (組合員의 資格) ①組合員은 地域畜協의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者로서 畜産業을 經營하는 農業人이어야 하며, 組合員은 2 이상의 地域畜協에 加入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을 經營하는 農業人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6條 (사업) 地域畜協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7.13>

1. 教育·支援事業

가. 畜産業生産 및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教育訓練

나. 畜産業 및 農村生活關聯 情報의 蒐集 및 제공

다. 農村生活 개선 및 文化向上을 위한 教育·지원

라. 都市와의 交流促進을 위한 사업

마. 畜産關聯 自助組織의 육성 및 지원

바.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畜産技術의 擴散을 위한 飼育場, 研究所의 운영

사. 家畜의 改良·増殖·防疫 및 診療事業

아. 畜産物의 安全性에 관한 教育 및 弘報

자.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차.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教育 및 弘報

2. 經濟事業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등의 사업

나.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등의 사업

다. 組合員이 生産한 畜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마. 組合員의 勞動力 또는 農村의 賦存資源을 活用한 加工事業·觀光事業등 農外所得增大事業

바. 委託養畜事業

사. 畜産業勞動力의 斡旋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信用事業

가. 組合員의 預金과 積金의 受入

나. 組合員에게 필요한 資金의 貸出

다. 內國換

라. 어음割引

마. 國家·公共團體 및 金融機關의 業務의 代理

바. 組合員을 위한 有價證券·貴金屬·重要物品의 보관등 保護預受業務

4. 共濟事業
5. 組合員을 위한 醫療支援事業 및 福祉施設의 운영
6.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7.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8. 다른 法令이 地域畜協의 사업으로 規定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0.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07조 (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6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축협"은 각각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각각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의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 마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제1항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 <개정 2005.7.21>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4.12.31]

第4章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第108條 (目的) 品目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品目이나 業種의 農業 또는 定款이 정하는 韓牛飼育業, 酪農業, 養豚業, 養鷄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飼育業의 畜産業을 經營하는 組合員에게 필요한 技術·資金 및 情報등을 提供하고, 組合員이 生産한 農畜産物의 販路擴大 및 流通圓滑化를 도모함으로써 組合員의 經濟적·社會적·文化적 地位向上을 증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09條 (區域) 品目組合의 區域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10條 (組合員의 資格등) ①品目組合의 組合員은 그 區域안에 住所나 居所 또는 事業場이 있는 農業人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로 한다.

②組合員은 동일 品目 또는 業種을 대상으로 하는 2 이상의 品目組合에 加入할 수 없다.

다만, 連作에 따른 被害로 인하여 事業場을 品目組合의 區域外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1條 (사업) 品目組合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7.13>

1. 教育·支援事業

- 가. 生産力의 增進과 經營能力의 향상을 위한 相談 및 教育訓練
- 나. 組合員이 필요로 하는 情報의 蒐集 및 제공
- 다. 新品種의 開發, 普及 및 技術擴散등을 위한 示範圃, 育苗場, 飼育場 및 研究所의 운영
- 라. 家畜의 增殖, 防疫 및 診療와 畜産物의 安全性에 관한 教育 및 弘報(畜産業의 品目組合에 한한다)

마.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教育 및 弘報

2. 經濟事業

가. 組合員의 사업과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製造·加工·供給등의 사업

나. 組合員이 生産하는 農産物 또는 畜産物의 製造·加工·販賣·輸出등의 사업

다.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 또는 畜産物의 流通調節 및 備蓄事業

라. 組合員의 사업 또는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운영 및 機資材의 賃貸事業

마. 委託營農 또는 委託養畜事業

바. 勞動力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3. 共濟事業

4. 組合員을 위한 醫療支援事業 및 福祉施設의 운영

5. 다른 經濟團體·社會團體 및 文化團體와의 交流·協力

6. 國家, 公共團體, 中央會 또는 다른 組合이 委託하는 사업

7. 다른 法令이 品目組合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第1號 내지 第7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9.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12조 (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95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각각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호의의 부분 전단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 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 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

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80조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05.7.21>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4.12.31]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04.12.31>

제112조의2 (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3 (법인격 및 명칭)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중에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5 (설립인가 등)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2 이상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자금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6 (정관) ①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7 (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8 (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9 (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2조의10 (준용규정) ①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71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내지 제94조 및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각각 "대표이

사"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은 "회원"으로, 제35조제1항제2호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해산"으로, 제40조제2항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제147조 내지 제152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第5章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第1節 通則

第113條 (目的) 中央會는 會員의 공동이익의 增進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14條 (事務所와 區域) ①中央會는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②中央會는 全國을 區域으로 한다.

第115條 (會員) ①中央會는 地域組合, 品目組合 및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品目組合聯合會를 會員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116條 (準會員) 中央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관련 단체와 법인을 準會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117條 (出資) ①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座數 이상의 出資를 하여야 한다.

②出資 1座의 금액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18條 (當然脫退) 會員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第119條 (會員의 責任) 中央會의 會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다.

第120條 (定款記載事項) ①中央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명칭과 區域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出資에 관한 사항
4. 優先出資에 관한 사항
5. 會員의 加入과 脫退에 관한 사항
6. 會員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
7. 總會와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任員, 執行幹部 및 執行幹部외의 幹部職員(이하 "一般幹部職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10. 經費賦課와 過怠金 徵收에 관한 사항
11. 農業金融債券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會計에 관한 사항
13.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中央會의 定款變更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은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第121條 (設立·解散) ①中央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이상의 組合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고 創立總會의 議決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7條의 規定에 準하여 組合으로 하여금 出資金을 納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中央會의 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2節 機關

第122條 (總會) ①中央會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會長과 會員으로 구성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③會長은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④定期總會는 매년 1회 定款에서 정한 時期에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召集한다.

⑤중앙회의 회원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1표 내지 3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신설 2004.12.31>

第123條 (總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변경
2. 會員의 除名

3. 任員의 選出과 解任 및 任命同意
4. 事業計劃·收支豫算 및 決算의 승인
5. 기타 理事會 또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3조의2 (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124條 (代議員會) ①中央會에 總會에 갈음하는 代議員會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회장의 選出을 위한 總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代議員의 數는 會員의 3分の 1의 범위안에서 定款으로 정하되, 會員인 地域組合 및 品目組合의 代表性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代議員의 임기는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신설 2004.12.31>

⑤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⑥제123조의2의 규정은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第125條 (理事會) ①中央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장
2. 농업경제대표이사
3. 축산경제대표이사
4. 신용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第2項 後段의 會員組合長인 理事의 3分の 1 이상은 品目組合의 組合長으로 한다.

④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개정 2004.12.31>

1. 中央會의 經營目標의 設定
2. 中央會의 事業計劃 및 資金計劃의 綜合調整
3. 組織·경영 및 任員에 관한 規程의 制定 및 改廢
4. 組合에서 中央會에 預置하는 餘裕資金의 下限比率 또는 金額

4의2.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 4의3.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總會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會長 또는 理事 3分の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理事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된 사항에 대하여 會長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業務執行狀況을 監督한다. <개정 2004.12.31>

⑥집행간부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⑦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125조의2 (소이사회) ①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 의장이 된다.

③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소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소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25조의3 (감사위원회) ①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은 제125조제2항 각호의 자가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중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중 제125조제2항 각호의 자가 아닌 자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감사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감

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하여야 한다.

⑦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 제47조는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5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6항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7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⑧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25조의4 (내부통제기준 등) ①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第3節 任員과 職員

第126條 (任員) ①中央會에 任員으로서 會長 1人,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및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理事 21인 이상을 둔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任員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인, 축산경제대표이사 1인, 신용대표이사 1인 및 전무이사 1인은 常任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第127條 (會長の 職務) ①會長은 中央會를 代表한다. 다만, 第12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代表하는 業務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 내지 제6호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각각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 아목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

지 아니하는 업무

③會長이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理事會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4.12.31>

제128조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②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전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사업과 동항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第129條 삭제 <2004.12.31>

第130條 (任員의 選出과 任期) ①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한다.

②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專擔事業에 관하여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定款이 정하는 推薦節次에 따라 추천된 者를 總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개정 2004.12.31>

③會長·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개정 2004.12.31>

④삭제 <2004.12.31>

⑤다음 각호의 임원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2年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1. 회장

2. 회원조합장인 이사

⑥會員組合長이 第1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任인 任員으로 選出된 경우에는 就任전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⑦會長이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131條 (執行幹部 및 職員의 任免등) ①中央會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業務를 보좌하기 위하여 執行幹部를 두되, 그 명칭·職務등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②삭제 <2004.12.31>

③執行幹部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④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 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04.12.31>

⑤職員은 會長이 任免하되, 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職員の 昇進 및 轉補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⑥제1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職員간의 인사 교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⑦執行幹部 및 一般幹部職員에 관하여는 商法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7條와 非訟事件節次法 第149條, 第179條 내지 第18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⑧會長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理事, 執行幹部 또는 職員중에서 中央會의 業務에 관한 一切의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行위를 할 權限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132條 (畜産經濟事業의 特例) ①第13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畜産經濟代表理事는 第12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長代表者會議에서 추천된 者를 會長이 任命한다.

②이 法 施行전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 中央會가 승계한 財産은 畜産經濟代表理事가 관리하며, 당해 財産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代金の 管理 또한 같다. 다만, 信用事業 관련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中央會의 剩餘人力을 調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 각각 承繼한 職員간에 같은 比率를 적용하는 등 衡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中央會는 畜産經濟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事業計劃의 수립등 畜産經濟事業의 自律性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133條 (다른 職業從事의 제한) 常任인 任員과 執行幹部 및 一般幹部職員은 職務와 관련되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할 수 없으며, 理事會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職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4節 사업

第134條 (사업) ①中央會는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1. 教育·支援事業

- 가. 會員의 組織 및 經營의 指導
- 나. 會員의 組合員과 職員에 관한 教育·訓練 및 情報의 제공
- 다.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調查·研究 및 弘報
- 라. 會員과 그 組合員의 사업 및 生活改善을 위한 情報網의 構築, 情報化의 教育 및 普及등을 위한 사업

마. 會員과 그 組合員 및 職員에 대한 補助金의 교부

바. 農業·畜産業關聯新技術 및 新品種의 研究·開發등을 위한 研究所와 示範農場의 운영

사. 會員에 대한 監査

아. 會員과 그 組合員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

2. 農業經濟事業

가. 會員을 위한 購買·販賣·製造·加工등의 사업

나.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다. 人蔘의 耕作指導·人蔘類 製造事業 및 檢査

3. 畜産經濟事業

가. 會員을 위한 購買·販賣·製造·加工등의 사업

나. 會員 및 出資會社의 經濟事業의 助成·指導 및 調整

다. 家畜의 改良·増殖·防疫 및 診療에 관한 사업

4. 信用事業

가. 會員의 與信資金과 事業資金의 貸出

나. 中央會의 事業部門에 대한 資金의 供給

다. 農漁村資金의 貸出

라. 銀行法에 의한 銀行業務

마. 國家·公共團體 또는 金融機關(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그외에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業務의 代理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信託業務

사. 與信專門金融業法에서 정하는 信用卡드 業務

아. 기타 銀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可를 받은 業務

5. 會員의 償還準備金과 餘裕資金의 運用·관리

5의2. 회원의 신용사업의 지도

6. 共濟事業

7. 삭제 <2001.9.12>

8. 醫療支援事業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10.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委託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法令에서 中央會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와 관련되는 對外貿易
13. 第1號 내지 第12號의 사업과 관련되는 附帶事業
14. 기타 設立目的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公共團體·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韓國銀行 또는 다른 金融機關에의 預置등의 방법으로 資金을 運用할 수 있다.

③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際機構·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하거나 物資 및 技術을 導入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업무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⑤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損失補填資金, 貸損補填資金, 組合相互支援資金 및 組合合併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第135條 (非會員의 사업이용) ①中央會는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會員이 아닌 者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중 販賣事業(農業者가 아닌 者의 販賣事業을 제외한다), 第4號 科目 내지 科目, 第6號, 第8號, 第10號, 第11號 및 第14號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非會員의 이용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會員의 組合員의 사업이용은 이를 會員의 이용으로 본다.

第136條 (流通支援資金의 造成·運用) ①中央會는 會員의 組合員이 生産한 農産物·畜産物 및 加工品등의 원활한 流通을 지원하기 위하여 流通支援資金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運用한다.

1. 農産物의 契約栽培事業
2. 農産物 및 그 加工品の 出荷調節事業
3. 農産物의 共同規格 出荷促進事業
4. 買取事業
5. 기타 中央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流通관련사업

③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支援資金의 造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가 동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이 아닌 분야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31]

第138條 (品目組合聯合會) ①品目組合은 그 權益增進을 도모하고 共同事業의 開發을 위하여 5 이상의 品目組合을 會員으로 하는 品目組合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聯合會는 正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조합을 準會員으로 할 수 있으며, 全國을 區域으로 하는 경우에는 全國의 品目組合의 3분의 2 이상을 그 會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전부 또는 일부의 事業을 行한다. <개정 2004.12.31>

1. 會員을 위한 生産·流通調節 및 市場開拓
2. 會員을 위한 物資의 共同購買 및 製品의 共同販賣와 이에 수반되는 運搬, 보관 및 加工事業
3. 製品弘報, 技術普及 및 會員間의 情報交換
4. 會員을 위한 資金의 貸付와 聯合會의 事業을 위한 國家·공공단체 및 中央회로부터의 資金借入
5. 기타 會員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事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目的, 명칭, 區域 및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2. 會員의 資格·加入 및 脫退
3. 出資 및 經費에 관한 사항

4. 任員의 定數와 選任
5. 會員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사항
6. 事業의 種類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④聯合會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聯合會는 그 명칭중에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聯合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者가 아니면 品目 또는 業種名을 붙인 聯合會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39條 (長期貸出) 中央會는 自己資本, 國家로부터의 借入金,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公共團體·國際機構·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1年 이상의 借入金, 1年 이상의 期限附預金 또는 農業金融債券 發行에 의하여 造成한 資金에 한하여 1年을 초과하는 長期貸出을 할 수 있다.

第140條 (與信資金의 管理) ①中央會는 供給하는 資金이 特定된 目的과 計劃에 따라 사용되도록 管理하기 위하여 資金利用者등에 대하여 필요한 監査 또는 기타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②中央會가 國家로부터 借入한 資金중 信用事業資金(組合이 中央會로부터 借入한 資金을 포함한다)은 押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第141條 삭제 <2001.9.12>

第5節 中央會의 指導·監査

第142條 (中央會의 指導) ①會長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을 指導하며 이에 필요한 規程 또는 指針 등을 정할 수 있다.

②會長은 會員의 經營상태를 評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經營개선, 合併勸告 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公告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會長은 會員에 대하여 그 業務의 건전한 運營과 組合員 또는 第3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業務에 관하여 定款 또는 共濟規程의 변경,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 財産의 供託·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143條 (組合監査委員會) ①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會長소속하에 會員의 業務를 指導·監査할 수 있는 組合監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委員長은 常任으로 한다.

③委員會의 監査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에 필요한 機構를 둔다.

第144條 (委員의 選任등) ①委員長은 會長이 總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委員은 委員長이 提請한 者중에서 會長이 任命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과 委員은 監査, 會計 또는 農政에 관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중에서 選任한다.

④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145條 (議決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議決한다.

1. 會員에 대한 監査方向 및 그 計劃에 관한 사항
2. 監査結果에 따른 會員의 任·職員에 대한 懲戒 및 問責의 요구등에 관한 사항
3. 監査結果에 따른 辨償責任의 判定에 관한 사항
4. 會員에 대한 是正 및 개선요구등에 관한 사항
5. 監査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6. 會長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146條 (會員에 대한 監査등) ①委員會는 會員의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에 대하여 2年마다 1回 이상 會員을 監査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會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會員의 부담으로 會計法人에 會計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③會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를 당해 會員의 組合長과 監事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監査結果에 따라 당해 會員에게 是正 또는 業務의 停止, 관련 任·職員에 대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職務의 停止, 譴責 또는 辨償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譴責 또는 辨償

④會員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 任·職員에 대한 措置要求를 받은 때에는 2月 이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會長은 會員이 第4項의 기간내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月 이내에 第3項의 措置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同期間內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6節 優先出資

第147條 (優先出資) ①中央會는 自己資本의 확충을 통한 經營의 健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외의 者를 대상으로 剩餘金配當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優先出資를 발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 1座의 금액은 第117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 1座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優先出資의 總額은 自己資本의 2分の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優先出資者는 議決權 및 選舉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優先出資에 대한 配當은 會員에 대한 配當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配當率은 定款이 정하는 最低配當率과 最高配當率 사이에서 定期總會에서 정한다.

第148條 (優先出資證券의 발행) 中央會는 優先出資의 納入期日후 지체없이 優先出資證券을 발행하여야 한다.

第149條 (優先出資者의 責任) 優先出資者의 責任은 그가 가진 優先出資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第150條 (優先出資의 讓渡) ① 優先出資는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優先出資證券 발행전의 讓渡는 中央會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優先出資를 讓渡하는 때에는 優先出資證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優先出資證券의 占有者는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④ 優先出資證券의 名義變更은 取得者의 姓名 및 住所를 優先出資者名簿에 登錄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 優先出資證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 優先出資者名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51條 (優先出資者總會) ① 中央會는 定款의 변경에 의하여 優先出資者에게 損害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議決은 발행한 優先出資總座數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한 出資座數의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出資者總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52條 (優先出資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優先出資의 발행·모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節 農業金融債券

第153條 (農業金融債券의 발행) ① 中央會는 農業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農業金融債券의 발행은 中央會의 自己資本의 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法律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農業金融債券의 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農業金融債券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발행한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農業金融債券을 그 借換을 위하여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月 이내에 償還時期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農業金融債券에 대하여 그 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農業金融債券을 償還하여야 한다.

⑤ 農業金融債券은 割引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中央會가 農業金融債券을 발행할 때에는 每回 그 금액·조건·발행 및 償還의 방법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54條 (債券의 명의변경요건) 記名式 債券의 명의변경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債券原簿에 기재하고 그 姓名을 證券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다.

第155條 (債券의 質權設定) 記名式 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質權者의 姓名 및 住所를 債券原簿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中央會 기타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56條 (償還에 대한 國家保證) 農業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國家가 全額 보증할 수 있다.

第157條 (消滅時效) 農業金融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한다.

第158條 (農業金融債券에 관한 기타 사항) 이 法에 規定하는 사항외에 農業金融債券의 발행·모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節 會計

第159條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中央會는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會計年度開始 1月전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60條 (決算) ①中央會는 每 會計年度 경과후 2月 이내에 당해 事業年度의 決算을 완료하고 그 決算報告書(事業報告書,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에 관하여 總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報告書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中央會의 決算報告書에는 會計法人의 會計監査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中央會는 每 會計年度 경과후 3月 이내에 그 決算報告書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9節 準用規定

제161조 (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7항,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내지 제74조, 제9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1조 내지 제94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각각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준조합원"은 각각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중 "제21조"는 "제

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중 "7일전"은 "10일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1항 및 제5항중 "조합장"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4조제1항 전단중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임원"은 각각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제외한다)"으로, 제57조제4항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1항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6호"로, 제71조제1항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第6章 監督

第162條 (監督) ①農林部長官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中央會를 監督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上 필요한 命令과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信用事業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監督한다. <개정 2004.12.31>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組合 또는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조합등에 관한 監督權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業務에 대한 監督權의 일부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과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그 經營의 健全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⑤金融監督院長은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에 적용되는 同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관한 檢査權의 일부를 中央會의 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第163條 (違法 또는 不當議決事項의 取消 또는 執行停止) 農林部長官은 조합등과 中央會의 總會 또는 理事會가 議決한 사항이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執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164條 (違法行爲에 대한 行政處分) ①農林部長官은 조합등 또는 中央會의 業務와 會計가 法令,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 또는 中央會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고 관련 任·職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또는 職務의 停止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또는 減俸

②農林部長官은 조합등 또는 中央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任·職員에 대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停止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165條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한 是正措置) ①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의 財務狀態가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이하 이 條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巨額의 金融事故 또는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會의 信用事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권고 또는 要求하거나 그 履行計劃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人力 및 組織運用의 변경등 中央會의 設立目的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農林部長官과 미리 合議하여야 한다.

1. 中央會 및 任·職員에 대한 주의, 警告, 譴責 또는 減俸
2. 資本의 增加 또는 감소, 保有資產의 처분 또는 店舖·組織의 縮小
3. 債務不履行 또는 價格變動등의 위험이 높은 資產의 취득금지 또는 非正常的으로 높은 金利에 의한 受信의 제한
4. 任員의 職務停止 또는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관리인의 選任
5.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停止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에 준하는 措置로서 中央會의 財務健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

②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中央會의 信用事業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營業의 全部停止命令 및 이에 준하는 措置는 中央會의 財務狀態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信用秩序나 預金者의 權益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金融監督委員會는 中央會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短期間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措置를 猶豫할 수 있다.

第166條 (經營指導) ①農林部長官은 조합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어 組合員保護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등에 대하여 經營指導를 행한다. <개정 2004.12.31>

1. 組合에 대한 監査結果 組合의 不實貸出의 合計額이 自己資本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短期間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回收하기가 곤란하여 自己資本의 전부가 蠶食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財産上의 損失이 발생하여 自力으로 經營正常化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組合의 破産危險이 현저하거나 任·職員의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組合의 預金 및 積金의 引出이 쇄도하거나 組合이 預金 및 積金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第142條第2項 및 第146條의 規定에 의한 經營評價 또는 監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中央會의 會長이 建議하는 경우

5. 信用協同組合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에 적용되는 同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經營指導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金融監督院長이 建議하는 경우

②第1項에서 "經營指導"라 함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指導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不法·不實貸出의 回收 및 債券의 확보.
2. 資金의 需給 및 與·受信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등의 經營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가 開始된 때에는 6月の 범위안에서 債務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任員의 職務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會長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등의 財産狀況을 調査(이하 "財産實査"라 한다)하게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에게 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中央會長 또는 金融監督院長은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財産實査의 결과 違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損失을 끼친 任·職員에 대하여 財産照會 및 假押留申請 등 損失金補填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農林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필요한 資料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農林部長官은 財産實査의 결과 당해 조합등의 經營正常化가 가능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撤回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⑦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에 관한 業務를 中央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⑧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 債務의 지급정지 또는 任員의 職務停止의 방법, 기간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7條 (設立認可의 取消등) ①農林部長官은 조합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合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設立認可日부터 90日을 경과하여도 設立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2. 正當한 사유없이 1年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回 이상 第164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是正하지 아니한 때
4. 조합등의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한 때

5. 조합등에 대한 監査 또는 經營評價의 결과 經營이 不實하여 資本을 蠶食한 조합등으로서 第142條第2項, 第146條 또는 第166條의 措置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第三者에게 중대한

損失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합등의 設立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168條 (組合員 또는 會員의 檢査請求) ①農林部長官은 組合員이 組合員 300人 이상이나 組合員 또는 代議員 100分의 10 이상의 同意를 얻어 所屬組合의 業務執行狀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 中央會의 會長으로 하여금 당해 組合의 業務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中央會의 會員이 會員100分의 10 이상의 同意를 얻어 中央會의 業務執行狀況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檢査를 請求한 때에는 金融監督院長에게 中央會에 대한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169條 (청문) 農林部長官은 第16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章 罰則等

第170條 (罰則) ①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 ②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제171조 (벌칙) 조합등과 중앙회 및 그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3. 제46조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25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4.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때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때

6.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7.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때

9.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10.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2.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3.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14.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때

15.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16.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 내지 제93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 내지 제99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행한 때

17.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감사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전문개정 2004.12.31]

제17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21>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第173條 (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員選舉의 當選人이 당해 選舉에 있어서 第172條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懲役刑 또는 100萬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제174조 (과태료) ①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50조의2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7.2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7.21>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1>

[전문개정 2004.12.31]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규정된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7.21]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함은 제172조에 규정된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함 또는 조함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1]

附則 <제6018호,1999.9.7>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2002年 7月1日부터, 第11條(同條第1項에서 적용하고 있는 銀行法 第38條第3號의 規定은 제외한다), 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第68條, 第137條第3項, 第162條第4項·第5項, 第165條(第63條第4項·第5項,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있는 第107條, 第112條 및 第161條를 포함한다) 및 附則 第3條, 第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경우 2000年 6月 30日까지는 "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로, "組合"을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 및 附則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으로 각각 본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業協同組合法
2. 畜産業協同組合法
3. 人蔘協同組合法

第3條 (設立委員會의 設置) ①중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중전의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 및 중전의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이하 "人蔘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의 解散과 中央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農

業協同組合中央會 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設立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職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設立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部次官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중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者가 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1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 60日전까지 中央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中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으로 구성된 創立總會에서 在籍會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農林部長官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會의 定款을 認可함에 있어서 定款事項중 信用事業에 관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⑥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節次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4條(業務引繼) ①設立委員會는 中央會의 設立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會의 會長에게 그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會의 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設立費用의 부담등) ①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解散費用 및 中央會의 設立費用은 中央會가 이를 부담한다.

②國家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不實債權 정리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6條(解散의 特例)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각각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中央會의 設立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合併으로 본다.

第7條(權利·義務의 承繼) ①中央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財産과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法律 第670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0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承繼財産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

②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名義는 中央會의 名義로 본다.

③中央會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8條(農業協同組合中央會등의 任員등의 任期)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任員·執行幹部 및 代議員은 그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第9條(中央會 任員등의 選出·選任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 法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委員會가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定款에 의하여 中央會의 최초의 任員 및 代議員을 選出 또는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選出 또는 選任된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이 法 施行日부터 起算한다.

第10條(中央會의 職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職員은 각각 中央會의 職員으로 본다.

②中央會 合併에 따라 剩餘人力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1998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中전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가 각각 施行한 自體人力減縮 實績과 承繼한 職員의 人원을 고려 하여야 한다.

第11條 (組合 및 中央會의 會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다음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중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등은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등으로 본다.

1. 중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	1. 地域農業協同組合
2. 중전의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	2. 地域畜産業協同組合
3. 중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專門農業協同組合, 중전의 畜産業 協同組合法에 의한 業種別畜産業 協同組合 및 중전의 人蔘協同組合	3.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	

②이 法 施行당시의 農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의 會員은 中央會의 會員으로 본다.

第12條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設立認可基準에 미달하는 組合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 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正當한 사유로 2年 이내에 그 認可基準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年の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組合이 第1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組合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15條(第107條 및 第1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組合은 中央會에 加入할 수 없다.

第13條 (組合 任員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組合長은 第49條第1項第11號(第107條 및 第11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11條第1項의 表의 왼편란에 기재된 중전의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은 각각 같은 表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法에 의한 地域農業協同組合등의 任員·職員 및 代議員으로 보되, 그 任員 및 代議員의 任期는 中전의 規定에 의한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14條 (品目組合의 信用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中전의 法律 第4819號 農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 中전의 法律 第4821號 畜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 및 中전의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組合은 中전의 規定에 의한 信用事業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전의 人蔘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第1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 分離 추진) ①農林部長官은 協同組合에 관하여 國際的으로 權威있는 研究機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分離의 타당성등을 檢討하기 위한 研究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機關의 研究報告書를 이 法 施行후 2年 이내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報告書를 國會에 제출한 날부터 2年 이내에 研究結果에 따른 措置를 施行하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이 法 公布와 동시에 中央會의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分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政府, 協同組合關係者, 農業人代表 및 學界專門家등으로 協議機構를 設置·운영한다.

第17條 (會員의 사업참여등) 中央會는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年 6月 30日까지 中央會 持分의 100分의 50 이상을 會員이 出資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29條第1項·第2項·第4項第1號·第5項,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1條第2項 및 第3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法律 第5720號 畜産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別·業種別 畜産業協同組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5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協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第18條第2項중 "畜協中央會"를 "中央會"로 한다.

③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개정 2000.1.28>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④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개정 2000.1.28>

第1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⑤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3號를 削除한다.

1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⑥預金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目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號 目을 削除한다.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

⑦信用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5條第1項 本文중 "第39條第1項"을 "第39條第1項第1號 및 第6號"로 하고, 同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第39條, 第42條, 第43條, 第78條 및 第83條"를 "第39條第1項第1號·第6號,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78條第1項第5號, 第83條 및 第84條"로 한다.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農業協同組合과 地域畜産業協同組合(信用事業을 실시하는 品目組合을 포함한다)

法律 第5506號 信用協同組合法改正法律 附則 第3條중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9條 (預金保險의 保險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預金者保護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預金保險公社에 납부한 預金保險의 保險料는 中央會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第20條 삭제 <2001.9.12>

第2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協同組合法, 畜産業協同組合法 및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組合과 그 中央會를 인용한 경우 이 法에 의한 組合과 中央會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은행법) <제6177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銀行法 第22條 내지 第26條"를 "銀行法 第22條, 第23條, 第23條의2, 第24條, 第25條 및 第26條"로 하고, "第53條第1項第3號"를 "第53條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附則(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6018號 農業協同組合法 附則 第18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④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 部門은 이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②내지 ④省略

第13條 및 第14條 省略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貨物流通促進法 第39條, 第46條 내지 第48條, 對外貿易法 第10條"를 "貨物流通促進法 第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6514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599호,2002.1.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第10조"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273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제112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제41조·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1항·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의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제1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감사는 제1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명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들이 각각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

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부칙 <제7605호,2005.7.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不動産仲介業法 第4條"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502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信託業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0호], 시행일 2008.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라 함은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황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황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농협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동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입한 공제료

7. "예금자등"이라 함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3조 (중앙회의 책무) ①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 실사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4조 (적기시정조치) ①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대출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증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

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38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1호(동법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의 규정은 조합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관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해당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의 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개회 3일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불이행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당해 부실조합의 정관에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예금·대출등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당해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전에 당해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전에 당해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 인수조합이 이를 취득한다.

⑥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부장관은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등) ①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목적에 따라 당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안에서 부실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

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⑥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5.3.31>

제9조 (파산신청) 농림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①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조합이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 (기금의 설치·운영) ①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들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 그 밖의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의 상환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회사의 부실자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정부는 제2항제4호에 의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제6항 및 제154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기금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신설 2007.8.3>

⑧기금채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12조 (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①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기한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관리기관) ①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 중앙회의 집행간부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농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관련 단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상호간의 대출·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보험금의 지급등) ①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 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때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때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지급외에 당해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 등의 예금 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 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을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 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등)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조합등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 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을 한 때

2.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부실조합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부실조합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부실조합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해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⑤관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당해 조합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제공의 요청) 농림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당해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농협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①관리기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조합의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

회가 정한다.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①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는 약정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약정서에는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 그 밖에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은 약정서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약정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진술을 한 경우 당해 조합에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

"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②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개정 2007.8.3>

③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6, 2007.8.3>

1.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 나. 담보부동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입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입
6.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 또는 중앙회가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자산의 공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 그 밖의 수익금

②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3>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및 제45조의3의 규정은 관리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중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節次에서 買受申告人이 되고자 하거나 第26條第1項第1號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債權의 回收를 委託한 金融機關을 代理하여 買受申告人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제45조의2제1항제2호 "第2條第1號 目 내지 아目에 의한 金融機關"을 "조합,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로 본다. <개정 2002.1.26, 2007.8.3>

제5장 감독등

제33조 (감독) ①농림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권한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관리인 또는 청산인
2.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8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 (과태료) ①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②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514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590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7.4.11>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3. "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4.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차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5.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6. "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제4조 (상호금융자금을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3.5>

④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의2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3.5]

제4조의3 (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③삭제 <2004.3.5>

제5조의2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

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본조신설 2004.3.5]

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③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당해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3.5>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3.5>

제10조 (재원 및 이차보전) ①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정부는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③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 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을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부칙 <제6345호,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2000년도 예산에 의하여 지원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제4172호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573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818호,2002.12.26>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4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0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책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정책자금중 그 이율이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7776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9조의 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⑨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第2條 (會計의 運用·관리) ①이 會計는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개정 1997.4.10>

②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第3條 (計定の 구분) 이 會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林業振興事業計定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0, 2006.12.26>

第4條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歲入 및 歲出) ①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7.4.10, 1999.2.5, 1999.12.31, 2006.12.26>

1. 「농업·농촌기본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6. 기타 收入金

②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
3. 法律 第4228號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 3의2. 제1호의 規定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第4條의2 (林業振興事業計定の 歲入 및 歲出) ①林業振興事業計定の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規定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4. 기타 收入金

②林業振興事業計定の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の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본조신설 1997.4.10]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3. 삭제 <2006.12.3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30>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및 오·폐수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6.12.26]

第6條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①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 全額과 「사료관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 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 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 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2006.12.26>

②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歲出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 轉入받을 수 있다.<개정 1997.4.10>

第7條 (一時借入) ①이 會計는 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一時借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의 元利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 한다.

第8條 (歲出豫算의 移越)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會計年度내에 支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第9條 (剩餘金の 처리) 이 會計의 決算상 剩餘金은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第10條 (豫備費) 이 會計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相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상당한 金額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第11條 (融資條件등) 이 會計의 融資事業의 融資金利와 融資期間등은 農林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개정 1997.4.10>

第12條 (融資事業 取扱事務의 委託) ①農林部長官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 「은행법」에 의한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2006.12.26>

②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務의 일부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農林水産關聯 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業務 및 그에 따

른 會計와 財産管理등 融資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事務

2. 이 會計의 財産의 賣却·관리 및 그에 따른 歲入·歲出에 관한 事務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의 會計處理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기타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④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委託받은 法人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 任命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26>

第13條 (融資金의 回收)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融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償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第14條 (監督과 命令) 農林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取扱事務를 委託받은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또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融資事務 또는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關聯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를 監督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4.10>

附則 <제4772호,1994.8.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農漁村發展基金의 債權·債務등에 관한 經過措置) 法律 第4690號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承繼받은 農漁村發展基金의 債權·債務등 모든 權利·義務 및 財産은 이 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③(債券發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1994年度 歲入豫算중 國債法에 의한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額은 同法에 의하여 발행되는 1994年度 國債發行最高額중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債券發行最高額으로 한다.

④(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の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の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인삼산업법) <제5022호,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중 "金融機關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3條중 "金融機關 또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4條중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省略

第9條 省略

附則 <제5326호,1997.4.10>

①(施行日) 이 법은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債權·債務의 承繼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중 山林分野의 債權·債務등 山林分野의 모든 權利와 義務는 林業振興事業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附則(農業·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생략

③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

第11條 생략

附則(國債法) <제6075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4月 1일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⑩내지 <16>생략

附則(基金管理基本法) <제6101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⑭생략

⑮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2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에 第1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山林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同法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 및 同法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

1의2.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 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狩獵場使用料등 收入金
<16>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061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내지 ⑨생략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84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 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084호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별표1 관세액전입대상수입농림수산물[제6조제1항관련]

별표2 부가가치세액전입대상축산기자재[제6조제1항관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8.4>

1.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목의 핵심정책과제
 - 가. 농어업경영능력향상
 -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4.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③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제6조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①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8.4>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8조 (여성농어업인관련 실태의 조사 등) ①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실태 및 농어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의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개정 2005.8.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5.8.4>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부칙 <제6574호,2001.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제14

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모·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女性農漁業人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제7674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농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라 함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
2. 용수공급·배수로·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촉진
4.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촉진
5.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품종개발·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중

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폐업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구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업인등에 대하여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④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의 폐업지원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업의 지원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안) ①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①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속하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

림부차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
3. 농어업등 분야 협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개정 2006.10.4>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①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8.3>

제19조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8.3>

제20조 (권한의 위임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부칙 <제7207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등의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6조·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 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596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1호 중 "농산물수입이익금"을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으로 한다.

별표에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3호], 시행일 2008.1.14,

第1條 (目的) 이 법은 國家의 基本産業인 農業의 발전과 農業人의 福祉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한 試驗研究事業·農村指導事業 및 農業關聯人에 대한 教育訓練事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사업의 定義) ①이 법에서 "試驗研究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1. 農業科學技術(畜産業, 家畜衛生, 蠶業, 버섯의 育種·栽培, 農·畜産物의 貯藏·이용 및 加工과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개량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을 위한 試驗研究

2. 農業生物産業을 위한 尖端技術開發 및 農業環境保全에 관한 試驗研究

3. 主要優良作物·菜蔬種子·누에씨, 뽕나무苗木, 花卉種苗, 優良果樹의 苗木, 有用微生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과 家畜傳染病豫防藥의 개발 및 생산

4. 農機械·農藥·肥料등 農資材의 標準規格의 설정 및 품질관리

5. 農業經營의 적정규모화·능률화 및 協業화와 農業과 관련된 法人등 農業生産組織體의 경영개선에 관한 調查·研究

6. 農村生活 및 農村生活環境의 향상을 위한 調查·研究

②이 법에서 "農村指導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農業生産力의 증진과 農業人의 生活改善을 目的으로 하는 農業人 組織의 육성

2. 農村靑少年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農業後繼人力의 육성

3. 農·畜産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優良種子 및 種畜의 보급

4. 第1項의 試驗研究事業에서 개발된 技術의 보급

5. 地域農業의 개발과 農業人의 現場隘路技術의 개발 및 보급

6. 農作物病害蟲의 科學的인 豫察, 防除情報의 확산 및 氣象災害에 대비한 技術指導

7. 農作物의 品質 및 品位向上을 위한 指導

8. 家畜疾病豫防을 위한 防疫技術指導

③이 법에서 "教育訓練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1. 試驗研究事業·農村指導事業 및 教育訓練事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教育訓練

2. 農業관련 產業界·學界·官界 및 研究機關의 協同(이하 "農業産·學協同"이라 한다)에 의한 農科系 學校의 敎員 및 學生에 대한 營農技術教育訓練

3. 農業人·農村靑少年·農村女性 및 이와 관련된 團體의 구성원에 대한 教育訓練

4. 農業人의 副業訓練 및 취업알선

5. 專業農業人 및 후계농업경영인등 專門農業人力의 육성을 위한 教育訓練

第3條 (地方農村振興機關)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인 試驗研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規定에 의한 地方農村振興機關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第4條 (사업의 실시 및 調整) ①農村振興廳長은 地域農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農村指導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실시하는 農村指導事業을 調整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特性에 맞는 農村指導事業에 관한 施策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할 수 있는 公共團體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村振興業務를 담당하는 機關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公共團體외의 團體가 農村指導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村振興施策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農村振興廳長은 試驗研究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試驗研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試驗研究機關이 행하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審議·調整하여 試驗研究事業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

1. 研究開發機關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研究開發課題에 관한 사항
3. 研究人力の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07.7.13>

⑥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農村振興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여금 研究 또는 調査業務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2. 농촌지도사업의 시책방향
3. 농촌지도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第5條 (共同研究開發) ①農村振興廳長은 農業人이 營農現場에서 필요로 하는 實用化技術의 개발을 위하여 地方農村振興機關·研究機關·大學教授·關係專門家 및 農業人등으로 하여금 共同研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研究의 수행을 위하여 地方農村振興機關·研究機關·關係大學·關係專門家 및 農業人등에게 이에 필요한 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研究의 대상사업 기타 共同研究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農業科學技術의 研究開發) ①農村振興廳長은 農業科學技術의 효율적인 研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試驗研究事業을 추진한다.<개정 1999.2.5>

1. 農業基礎科學技術의 研究開發
2. 基礎農産物·輸出有望作目に 관한 研究開發 및 農業遺傳工學에 관한 應用研究
3. 農業·農村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技術의 開發

4. 先導技術의 開發
5. 尖端農業生物産業化에 관한 研究開發
6. 地域特性에 맞는 새 技術의 개발 및 現場隘路技術의 개발

② 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研究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農業科學技術開發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基本計劃에 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16>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研究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教育訓練의 실시) ① 農村振興廳長은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事業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教育訓練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基本計劃과 地域特性을 감안하여 教育訓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基本計劃의 수립 및 專門農業人力의 양성등을 위한 教育訓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支援施策등의 建議) ① 農村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試驗研究事業의 結果를 綜合評價하여 개발된 技術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하거나 農林部長官에게 支援施策등을 建議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試驗研究事業의 結果를 綜合評價하여 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村振興廳長에게 農村指導事業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등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村振興廳長의 의견을 들어 農林部長官에게 支援施策등을 建議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施策등에 대한 建議를 받은 農林部長官은 이에 대한 支援施策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技術등이 農家に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협조) 地方自治團體는 地域農業의 균형적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村振興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行政·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0條 (研究·指導職公務員) ① 農村振興事業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研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을 둔다.

② 研究公務員은 試驗研究業務 또는 教育訓練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③ 指導公務員은 農村指導業務 또는 教育訓練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말한다.

④ 農村振興廳長은 停年으로 退職한 研究公務員으로서 그 재직중의 業績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는 名譽職으로 위촉하여 試驗研究業務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 (研究·指導公務員의 資格등) ① 研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專門學術을 이수한 者라야 한다.

②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職으로 위촉할 수 있는 者의 資格·手當·위촉방법 및

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研究·指導公務員의 服務) 研究公務員과 指導公務員은 이 法에 정한 사업외의 事務에 관여하지 못한다.

第13條 (國家의 財政的인 지원) ①國家는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試驗研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에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國家는 農業科學技術開發에 관한 試驗研究事業 및 農村指導事業을 실시하는 學校·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의 지급등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4條 (研究開發成果의 이전) ①農村振興廳長은 소속 試驗研究機關이 企業과 공동으로 研究開發한 성과를 共同研究開發에 참여한 企業이 사용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使用料를 徵收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技術使用料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研究開發에 참여한 研究公務員에게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農村振興廳長은 所屬公務員이 職務와 관련하여 研究開發한 技術을 特許(實用新案을 포함한다)出願하는 경우 特許登錄전이라도 당해 技術을 조기에 産業化하는 것이 公益增進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特許廳長과 협의하여 特許登錄전까지 이를 産業化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技術을 産業化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 (農業産·學協同事業의 추진) 農村振興廳長은 農業科學技術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추진할 수 있다.

第16條 (農業産·學協同事業의 지원) 政府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豫算에서 農村振興機關이 農科系 學校·農業團體·研究機關·企業·農業人과 農業産·學協同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17條 (權限의 위임) 農村振興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附則 <제5020호,19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國家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農村振興法 第7條의 規定"을 "農村振興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으로 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2>省略

<33>農村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34>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農業·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農村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農業·農村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技術의 開發

⑩내지 <19>생략

第11條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6997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5호중 "農業人後繼者"를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農村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地方自治法 第104條"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503호,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제정 2006.9.27 법률 제799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예 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업대학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농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한국농업대학을 둔다.

제3조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업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입학자격) 한국농업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5조 (학위의 수여)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6조 (교과 및 수업) ① 한국농업대학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학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능력은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 한국농업대학에 학장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원을 둔다.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학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 한국농업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업대학에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997호, 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여 백

Ⅱ. 식량 및 환경농업



여 백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5호], 시행일 2008.2.4.

第1章 總則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3.3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9.1.21, 2005.3.31>

1. "糧穀"이라 함은 米穀·麥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穀類·薯類와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澱粉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政府管理糧穀"이라 함은 政府가 民間으로부터 買入하거나 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糧穀을 말한다.

2의2. "공공비축미곡"이라 함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을 말한다.

3. "糧穀賣買業者"라 함은 糧穀의 賣買 또는 賣買의 仲介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4. "糧穀加工業者"라 함은 糧穀을 原料로 하여 加工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한 者를 말한다.

第2章 糧穀의 관리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第4條 (糧穀의 買入 및 先金支給등 <개정 1997.1.13>) ①農林部長官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 또는 所有者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3.31>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糧穀의 買入約定을 체결하여 糧穀을 買入하는 경우에는 國高금관리법 제26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買入約定金額의 일부(이하 "先金"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2.12.30, 2005.3.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金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約定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先金에 約定利子를 加算하여 返納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3.31>

④삭제 <2005.3.31>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先金, 約定利子 기타 買入約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第5條 (糧穀買入價格등의 決定) 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제23조의 規定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5.3.31>

②삭제 <2005.3.31>

③農林部長官이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糧穀을 買入하는 경우의 糧穀買入價格은 所有者가 買入한 糧穀의 價格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附帶費用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13, 2005.3.31>

第6條 삭제 <2005.3.31>

第7條 삭제 <2005.3.31>

第8條 삭제 <2005.3.31>

第9條 (政府管理糧穀의 販賣) ①農林部長官은 政府管理糧穀을 다음 各號의 用途에 따라 販賣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에 대하여는 그 代金を 收納하기 전에 糧穀을 引渡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1. 관수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민수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大統領령이 정하는 용도
6. 삭제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管理糧穀의 販賣價格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管理糧穀을 민수용으로 販賣하는 경우로서 政府管理糧穀의 流通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開入札의 方法에 의하여 販賣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④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⑥삭제 <1999.1.21>

제9조의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3. 당해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년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4. 당해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1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3.31]

제10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①농림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31]

第11條 (糧穀의 輸出入)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을 輸入 또는 輸出할 수 있다. <개정 1996.8.8>

第12條 (米穀등의 輸入許可등) 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이하 "許可對象米穀등"이라 한다)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②양허세율로 許可對象米穀등이 아닌 糧穀을 輸入하거나 農林部令이 정하는 糧穀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糧穀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推薦物量·推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外國援助機關 또는 外國의 民間援助團體가 제공하는 許可 또

는 推薦對象인 糧穀의 輸入을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協議를 거쳐 輸入認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4.12.31]

第13條 (輸入糧穀의 관리등)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入糧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糧穀을 輸入하는 者나 輸入된 당해 糧穀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사항은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の 賦課·徵收 對象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2000.12.29>

1. 輸入糧穀의 販賣價格·방법 및 시기
2. 輸入糧穀의 用途制限
3. 輸入糧穀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1994.12.31]

第13條의2 (輸入利益金の 徵收등) ①農林部長官은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아 糧穀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품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業豫算會計法 第3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規定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4.12.31, 2005.3.31>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1.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1994.12.31]

第14條 삭제 <1999.1.21>

第15條 삭제 <1999.1.21>

第16條 (穀價安定을 위한 糧穀의 出荷등) ①農林部長官은 糧穀의 出荷 및 價格을 調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農業協同組合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糧穀의 買入 및 販賣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買入資금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融資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②삭제 <1999.1.21>

③삭제 <2005.3.31>

④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政府의 買入量의 일정량에 대하여 政府買入價格과 產地價格의 差額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을 買入하는 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價格과 產地價格의 差額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⑥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등으로 하여금 糧穀을 買入하게 하는 경우에 第4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예에 따라 買入約定締結 및 先金支給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第17條 삭제 <1999.1.21>

第18條 삭제 <1999.1.21>

第19條 (糧穀加工業의 登錄 및 申告<개정 1999.1.21>)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 또는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2.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③삭제 <1999.1.21>

第20條 (糧穀賣買業者등에 대한 命令) ①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賣買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糧穀生産者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1. 販賣價格의 게시

2. 삭제 <1999.1.21>

3. 삭제 <2005.3.31>

②農林部長官은 糧穀의 加工方法改善, 加工生産品의 品質保障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主務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糧穀加工業者에 대하여 기간과 地域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3.31>

1. 加工施設의 개선

2. 加工收率·加工方法 및 加工生産品의 規格制限

3. 삭제 <1999.1.21>

4. 包裝規格·包裝資材 및 포장방법의 제한
5. 加工生産品에 대한 標識의 첨부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第21條 (營業停止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糧穀加工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을 정지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2007.8.3>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营业을 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④삭제 <1999.1.21>

第22條 (米穀流通業의 육성) ①農林部長官은 米穀의 流通構造改善·品質向上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生産者로부터의 米穀의 買入, 買入한 米穀의 건조·選別·보관·加工 및 販賣등 종합적인 米穀의 流通機能을 담당하는 米穀流通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農業協同組合 기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米穀의 流通機能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米穀綜合處理場등 米穀의 건조·보관·加工·流通·販賣 施設의 設置 및 米穀의 買入에 필요한 資金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融資金의 利子등 融資條件에 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第23條 (양곡정책심의위원회<개정 2005.3.31>) ①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31>

②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第24條 (業務代行) 農林部長官은 政府管理糧穀의 輸出·輸入·賣買·貯藏·出納·輸送 및 加工 및 糧穀의 買入約定締結·先金支給등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당해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第25條 삭제 <1999.1.21>

第3章 補則

第26條 (融資 및 보조)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 食生活의 개선, 糧穀의 加工·보관·流通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資金을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第27條 (監督) ①農林部長官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의 所有者·糧穀賣買業者·糧穀加工業者, 糧穀을 輸出·輸入·보관 또는 輸送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27조의2 (명예감시원) ①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7조의3 (포상금 지급)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본조신설 2005.3.31]

第28條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7.12.13]

第29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第4章 罰則

第30條 삭제 <1999.1.21>

第31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한 糧穀을 時價로 換算한 價額의 3倍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對象米穀등을 輸入한 者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糧穀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는 輸出하거나 輸入한 糧穀을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糧穀을 時價로 換算한 價額을 追徵한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전문개정 2005.3.31]

第33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2005.3.31>

1. 삭제 <2005.3.31>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對象인 糧穀加工業을 영위한 者
3.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당해 營業을 계속한 者

第34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4.12.31, 1996.8.8, 1999.1.21, 2005.3.31, 2006.12.28>

1. 第1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 내지 第3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9.1.21>

第36條 (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5.3.31>

1. 삭제 <1999.1.21>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對象인 糧穀加工業을 영위한 者
3.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2002.1.1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는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707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이와 관련되는 糧穀加工業에 관한 規定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①法律 第2237號 糧穀管理基金法은 이를 廢止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하여 設치된 糧穀管理基金의 負債 및 資産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第3條 (糧穀賣買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중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糧穀賣買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糧穀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중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糧穀加工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産物價格維持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糧穀管理法 第15條의3 및 第16條"를 "糧穀管理法 第18條 및 第19條"로 한다.

③農村近代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한다.

④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糧穀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 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の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842호,1994.12.31>

이 법은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함이라 케쉬協定の 효력이 國內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7>省略

<28>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第8條, 第9條第1項 本文·第2項 내지 第6項, 第10條, 第11條, 第12條, 第13條 本文, 第13條의2第1項, 第14條, 第16條, 第17條 本文, 第20條第1項 本文·第2項, 第22條第1項·第2項, 第23條第1項, 第24條, 第25條, 第26條, 第27條第1項, 第29條, 第33條第1號, 第34條第2號 및 第36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23條第1項중 "農林水産部"를 "農林部"로 한다.

第12條第2項, 第13條의2第1項·第2項, 第18條第2項第2號, 第19條第2項, 第21條第1項, 第22條第3項 및 第25條第1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29>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제5280호,1997.1.13>

이 법은 1997年 2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665호,1999.1.21>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糧穀加工業 登錄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關稅法 第16條"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594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豫算會計法 第68條"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432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433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糧穀管理特別會計"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8105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5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糧穀證券整理基金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糧穀證券의 元利金を 償還하기 위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의 設置와 그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99.12.31>

1. "糧穀證券"이라 함은 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糧穀證券整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된 糧穀證券을 말한다.

2. "負債"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것을 말한다.

가. 糧穀證券의 元利金중 未償還額

나. 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의 부담으로 導入한 借款糧穀의 元利金중 未償還額

다.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중 未償還額

第3條 (糧穀證券의 償還·관리) ①糧穀證券의 償還方法·償還期間 기타 糧穀證券의 償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糧穀證券의 登錄·元金償還·利子支給등에 관한 事務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理에 따른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④糧穀證券의 償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債法을 準用한다.

第4條 (糧穀證券整理基金의 設置) ①負債의 정리 및 糧穀證券의 관리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糧穀證券整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개정 1999.12.31>

1.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基金으로 造成된 資金

2.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3. 삭제 <2006.10.4>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의 會計로부터 받는 資金

5. 出捐金

6. 基金의 決算上 剩餘金

③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은 會計年度마다 償還하여야 할 糧穀證券의 元金과 이를 償還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한 國債의 元金의 合計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12.31>

第5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1. 負債의 償還
2.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
- ③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의하여 計理한다.

第6條 (豫算에의 반영) 政府는 다음 各號의 費用 및 財源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第5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費用
2. 負債의 규모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財源

第7條 (資金의 一時借入) ①農林部長官은 基金의 運用상 일시적으로 資金이 부족할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政府의 會計, 다른 基金 또는 韓國銀行으로부터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資金을 일시 借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 한다.

第8條 (基金運用計劃) ①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財政經濟部長官 및 豫算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金의 運用規模
2. 負債의 償還計劃
3.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사항

第9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任免은 基金의 出納을 담당하는 官署에 設置된 職位를 지정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第10條 (決算報告)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會計年度 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 (基金運用에 관한 法適用) 基金의 運用에 관하여 이 法이 특별히 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附則 <제5662호,19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糧穀證券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設置된 糧穀

證券整理基金은 이 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으로 본다.

②중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의 모든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糧穀證券整理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③중전의 糧穀證券法에 의하여 任命된 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出納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出納公務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2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糧穀證券整理基金法에 의한 負債의 償還

②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糧穀證券整理基金法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糧穀證券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國債法) <제6075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⑩省略

①糧穀證券整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日目중 "國債管理基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한다.

第4條第2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4條第3項중 "國債管理基金"을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國債管理基金의 부담으로 발행한 債券"을 "公共資金管理基金의 부담을 발행한 國債"로 한다.

⑫乃至 <16>省略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양곡증권정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1>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糧穀證券整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가대여양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이하 "농가대여양곡"이라 한다)의 판매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시장·군수가 농가대여양곡을 판매한 대금으로서 보유하는 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제2조 (양곡대금 납부의무의 면제와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양곡전용) ①농가대여양곡의 판매대금중 이 법 시행당시 당해 시장·군수가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은 당해 시·군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한다. 이 경우에 그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지구·경지면적 및 기간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가 면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3조 (절량대책) ①농가대여양곡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은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절량대책으로 농가에 대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대여한 양곡과 그 이곡은 대여한 후 최초의 수확기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천재·지변·홍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곡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2621호,1973.6.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농가대여양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가에 대여한 양곡중 이 법 시행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양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대여양곡 상환의무자의 사망·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대여양곡을 징수할 수 없게 된 때

2. 대여양곡상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면세대상자로 되어 그 대여양곡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된 때

③(동전)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양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동전) 전항의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전에 농가대여양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수산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한 양곡은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된 것으로 본다.

⑥(폐지법률) 농가대여양곡법은 이를 폐지한다.

⑦(벌칙적용)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농가대여양곡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③(他法律의 改正) 다른 法律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法律 第2621號 農家貸與糧穀의轉用에관한法律 附則 第2項第2號중 "地方稅法 第70條"를 "地方稅法 第174條"로 한다.

2. 내지 4. 省略

④내지 ⑧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0>省略

<31>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2>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목표가격"이라 함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4조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 안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동장(이하 "읍·면·동"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들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②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는 고정하며, 3년 단위로 변경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1.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현지확인조사) ①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제14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로서 5인 이내
 - 나.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으로서 5인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5인 이내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②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제17조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①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

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운용계획) ①농림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기금사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

원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24조 (차입금)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 (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부칙 <제7433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정하는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쌀소득보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기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

제4조 (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쌀소득보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2004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糧穀管理特別會計"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4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7호], 시행일 2008.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植物의 新品種에 대한 育成者의 權利保護, 主要作物의 品種性能의 관리, 種子의 生産·보증 및 流通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種子産業의 발전을 도모하고 農業·林業 및 水産業生産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1. "種子産業"이라 함은 種자를 育成·増殖·生産·調製·讓渡·貸與·輸出·輸入 또는 展示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作物"이라 함은 農産物·林産物 또는 水産物の 生産을 위하여 栽培되는 모든 植物을 말한다.
3. "種子"라 함은 増殖用 또는 栽培用으로 쓰이는 씨앗·버섯種菌 또는 營養體를 말한다.
4. "品種"이라 함은 植物學上 통용되는 最低分類 單位의 植物群으로서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遺傳的으로 發現되는 特性중 한가지 이상의 特性이 다른 植物群과 區別되고 변함없이 増殖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育成者"라 함은 新品種을 育성한 者 또는 발견하여 開發한 者를 말한다.
6. "品種保護權"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에게 부여하는 權利를 말한다.
7. "品種保護權者"라 함은 品種保護權을 보유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8. "保護品種"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品種保護要件을 갖추어 品種保護權이 부여된 品種을 말한다.
9. "실시"라 함은 保護品種의 種자를 増殖·生産·調製·讓渡·貸與·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品種性能"이라 함은 品種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栽培 및 이용상의 價値를 生産하는 能力을 말한다.
11. "保證種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品種의 眞僞性 및 당해 品種의 種자의 品質이 보증된 採種段階別 種자를 말한다.
12. "種子管理士"라 함은 이 법에 의한 資格을 갖춘 者로서 種子業者가 生産하여 販賣·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種자를 보증하는 者를 말한다.
13. "種子業"이라 함은 種자의 生産 및 販賣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種子業者"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種子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15. "農業遺傳資源"이라 함은 農業에 有用하게 활용될 수 있는 植物의 種子·花粉·細胞株 및 이들의 遺傳子와 微生物을 말한다.
16. 삭제 <1999.1.21>

第2章 育成者의 權利保護

第1節 通則

第3條 (在外者の 品種保護管理人) ①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한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の 品種保護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品種保護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品種保護에 관한 農林部 또는 第9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審判委員會(이하 "審判委員會"라 한다)에서의 節次(이하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라 한다)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6.8.8>

②品種保護管理人是 특히 수여된 權限과 그 밖의 일체의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③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在外者는 品種保護管理人の 選任·변경 또는 그 代理權의 수여·取消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④在外者는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할 때 또는 당해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중에는 品種保護管理人을 選任·登錄하여야 한다.

第4條 (代理權의 범위)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부터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代理人은 특별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品種保護出願의 변경·포기 또는 취하
2. 請求 또는 申請의 취하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의 主張 또는 그 취하
4. 第92條 또는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5. 複代理人의 選任

第5條 (複數當事者の 代表) ①2人 이상이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는 때에는 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者가 全員을 代表한다. 다만, 代表者를 선정하여 農林部長官[第4號의 경우에는 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審判委員會委員長(이하 "審判委員會委員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에는 代表者는 代表者로 選任된 사실을 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第6條 (기간의 연장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은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理由 등의 補正期間, 第92條 또는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의 請求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심판위원회위원장, 第9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長(이하 "審判長"이라 한다)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이하 "審査官"이라 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品種

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③ 審判長 또는 審査官은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을 期日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日을 변경할 수 있다.

第7條 (節次의 補正) 농림부장관·심판위원회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2007.8.3>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16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8條 (節次의 無效)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 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懈怠가 天災·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年 이내에 請求에 의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第9條 (書類提出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는 出願書·請求書 기타의書類(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農林部長官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到達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96.8.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書·請求書 기타의書類를 郵便으로 農林部長官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郵便物の 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郵便局에 제출한 날(郵便物の 受領證에 의하여 증명한 날을 말한다)에 農林部長官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到達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の 지연, 郵便物の 紛失 및 郵便業務의 중단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10條 (「특허법」 등의 準用 <개정 2007.8.3>)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에 관하여는 「특허법」 第3條·第4條·第7條·第8條·第9條·第10條第1項·第2項 및 第4項·第13條·第14條·第17條 내지 第24條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제59조·제63조·제87조·제88조·제92조·제94조·제9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특허법」 第13條의 "特許廳 所在地"는 "農林部 所在地"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개정 1996.8.8, 2002.1.26, 2007.8.3>

第2節 品種保護要件 및 品種保護出願

第11條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對象作物)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개정 1996.8.8>

第12條 (品種의 보호요건) 品種이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때에는 이 法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1. 新規性
2. 區別性
3. 均一性
4. 安定性
5. 第10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

第13條 (新規性) ①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日 이전(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 이전)에 大韓民國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國家에서는 4年(果樹 및 林木인 경우에는 6年) 이상 당해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이 이용을 目的으로 讓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1號의 新規性を 갖춘 것으로 본다. <改正 99.1.21, 2001.1.26>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讓渡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性を 갖춘 것으로 본다.

1. 盜用한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2.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移轉하기 위하여 당해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3. 種子를 增殖하기 위하여 해당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하여 당해 種子를 增殖한 후 그 種子 또는 收穫物을 育成者에게 다시 讓渡한 경우
4. 品種의 評價를 위한 圃場試驗, 品質檢査 또는 소규모 加工試驗을 하기 위하여 당해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5. 生物資源의 보존을 위한 調査 또는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品種目錄(이하 "品種目錄"이라 한다)에 登載를 하기 위하여 당해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6. 해당 品種의 品種名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生産된 副産物 또는 剩餘物을 讓渡한 경우

第13條의2 (알려진 品種에 관한 品種保護)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令으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을 定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品種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의 屬 또는 種으로 定하여진 날부터 1年 이내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경우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規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法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8.4>

1.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優良種子の 品種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어 있는 品種
3. 外國에서 品種保護權이 設定登錄된 品種
4. 育成者 및 最初流通日字에 대한 증거가 있는 品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은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起算한다. 다만, 해당 品種이 다음 各號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起算한다.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優良種子의 品種으로 決定된 날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의 登錄日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日

4.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最初流通日

③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種으로서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品種保護權은 당해 품종의 출원공개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전에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실시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品種保護權者에게 相當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⑤第75條第2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1]

第14條 (區別性) ①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日 이전(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 이전)까지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과 명확하게 區別되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2號의 區別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種을 말한다. 다만,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의사에 반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6.8.8>

1. 流通되고 있는 品種

2. 保護品種

3. 品種目錄에 登載되어 있는 品種

4. 農林部令이 정하는 種子產業에 관련된 協會에 登錄되어 있는 品種

③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의 경우 品種保護를 받기 위하여 出願하거나 品種目錄의 登載를 위하여 申請한 品種은 그 出願日 또는 申請日부터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으로 본다. 다만,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지 못하거나 品種目錄에 登載되지 아니한 品種을 제외한다.

第15條 (均一性) 品種의 本質的 特性이 그 品種의 繁殖方法上 예상되는 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均一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3號의 均一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6>

第16條 (安定性) 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이 반복적으로 增殖된 후(1代 雜種 등과 같이 특정한 增殖週期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增殖週期 종료후)에도 그 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4號의 安定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第17條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 ①育成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②2人 이상의 育成者가 공동으로 品種을 육성한 때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개정 2001.1.26, 2007.8.3>

第18條 (外國人の 權利能力) 在外者중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享有할 수 있다.

1. 그 外國人이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대하여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人이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 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3. 條約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第19條 (無權利者の 品種保護出願과 正當한 權利者の 보호)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品種保護를 出願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の 品種保護出願후에 한 正當한 權利者の 品種保護出願은 無權利者가 品種保護出願한 때에 品種保護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하거나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權利者の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60日을 경과한 후에 正當한 權利者가 品種保護를 出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 (無權利者の 品種保護와 正當한 權利者の 보호) 第9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品種保護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出願후에 한 正當한 權利者の 品種保護出願은 無效로 된 그 品種保護의 出願시에 品種保護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品種保護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2年을 경과한 후에 品種保護出願을 하거나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1條 (先出願) ①동일 品種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品種保護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品種保護를 出願한 者만이 그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②동일 品種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品種保護出願이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를 받고자 하는 者(이하 "品種保護出願人"이라 한다)간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者만이 그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品種保護出願人도 그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없다.

③品種保護出願이 無效로 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品種保護出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育成者가 아닌 者로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品種保

護의 出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人에게 기간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第22條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이를 移轉할 수 있다.

②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第23條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①品種保護出願전에 당해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者는 그 品種保護의 出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②同一人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品種保護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人간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者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品種保護出願후에 있어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品種保護出願人이 名義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品種保護出願후에 있어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⑤同一人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申告한 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者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⑥第2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4條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개정 2007.8.3>) ①公務員이 육성한 品種이 성질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品種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公務員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당해 公務員의 權利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承繼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개정 2001.1.26,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承繼한 그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처분 및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林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개정 2007.8.3>)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전담조직이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직무상 육성한 品種을 承繼한 경우에는 正當한 補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의 기준·지급방법 기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 (品種保護의 出願) ①品種保護出願人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品種保護出願書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1. 品種保護出願人의 姓名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品種保護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住所 또는 營業所 所在地
3. 育成者의 姓名 및 住所(育成者와 品種保護出願人이 同一人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學名 및 一般名
5. 品種의 명칭
6. 提出年月日
7. 第27條第3項의 사항(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品種의 特性說明 및 品種育成過程의 설명
9. 品種의 사진 및 試料.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0. 品種保護의 出願手數料 납부증명서

②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공동으로 品種保護出願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의 特性說明 및 育成過程의 설명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 (優先權의 主張) ①大韓民國 國民에게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國家의 國民이 그 國家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후 동일 品種을 大韓民國에 品種保護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21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國家에 品種保護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品種保護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大韓民國 國民에게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國家에 品種保護出願한 후 동일 品種을 大韓民國에 品種保護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 다음 날부터 1年 이내에 品種保護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品種保護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品種保護出願한 國名 및 최초로 品種保護出願한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品種保護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品種保護出願書謄本을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日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부터 3년까지 당해 出願品種에 대한 審査의 延期를 農林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農林部長官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최초의 品種保護出願을 포기하거나 品種保護를 出願한 國家의 拒絕査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優先權을 主張한 者의 요청에 의하여 延期된 出願品種審査日전이라도 당해 品種에 대한 審査를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⑥ 삭제 <2007.8.3>

第28條 (出願書의 접수등) ①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이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對象作物의 屬 또는 種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은 당해 品種保護의 出願을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品種保護出願書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方式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第7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된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의 接受日은 이를 品種保護出願日로 본다.

第29條 (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品種保護出願人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전에는 品種保護出願書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出願書를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拒絕査定謄本이 送達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 請求日부터 30日 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

第30條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①品種保護出願人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品種保護出願書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出願書를 補正할 수 있다.

1.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을 받고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 그 査定의 이유에 관하여 그 請求日부터 30日 이내에 補正하는 때

2.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그 異議申請理由에 관하여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제출기간내에 補正하는 때

3.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관하여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補正하는 때

②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후에 한 補正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品種保護出願은 그 補正을 하기 전의 品種保護出願에 관하여 品種保護가 된 것으로 본다.

第31條 (出願의 요지변경)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2. 不明瞭한 기재를 釋明하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第32條 (補正의 却下) ①出願公告決定謄本の 送達전에 한 補正이 品種保護出願書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고, 지체없이 이를 品種保護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이 品種保護出願人에게 送達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審査官은 당해 品種保護出願의 査定과 出願公告決定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品種保護出願인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審査官은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品種保護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出願公告決定謄本の 송달후에 한 補正이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査定전에 인정된 때에는 審査官은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고, 지체없이 이를 品種保護出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第3節 審査

第33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農林部長官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 및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을 審査하게 한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 (出願公開) ①農林部長官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出願登錄簿에 登錄된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지체없이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公報(이하 "公報"라 한다)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第12條·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品種이 品種保護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農林部長官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34조의2 (임시보호의 권리) ①품종보호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당해 출원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출원공개후 당해 품종보호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때
2. 품종보호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84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11]

제34조의3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법원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출원에 관하여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 그 밖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11]

第35條 (出願品種의 審査) ①審査官은 出願品種이 第13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한 調査 또는 試驗을 研究機關, 大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方法·기준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36條 (資料의 제출등) ①農林部長官은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人에게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提出命令을 받은 品種保護出願人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7條 (拒絕査定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審査官은 다음 各號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拒絕査定을 하여야 한다.

1. 第3條·第11條·第12條·第17條·第18條·第21條第1項·第2項 및 第23條第2項·第5項·第24條第1項 또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無權利者가 出願한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品種保護出願人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이 있는 때에는 그 拒絕査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拒絕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38條 (出願公告) ①審査官은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出願公告決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品種保護出願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農林部長官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60日間 品種保護出願書類 및 그 첨부된 물건을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39條 삭제 <2003.12.11>

第40條 삭제 <2003.12.11>

第41條 (品種保護異議申請) ①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부터 60日 이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에게 品種保護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第13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의 保護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외의 者에 의하여 品種保護出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品種保護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42條 (品種保護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異議申請을 한 者(이하 "品種保護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品種保護異議申請期間의 경과후 30日 이내에 品種保護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第43條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異議申請書 副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③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 및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⑤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4條 (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拒絕査定) ①審査官은 出願公告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職權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하지 아니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한 경우로서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 拒絕査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의 경우에는 第3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 (品種保護異議申請의 競合) ①審査官은 2 이상의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 그 審

査 또는 決定을 併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②審査官은 2 이상의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拒絕査定이 있는 경우 그 拒絕査定謄本을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46條 (品種保護査定) ①審査官은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品種保護査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査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品種保護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47條 (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品種保護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되거나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그 品種保護出願의 審査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査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第48條 (「특허법」 등의 準用 <개정 2007.8.3>) ①品種保護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8.3>

②品種保護異議申請의 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특허법」 第157條·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第16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7.8.3>

第4節 品種保護料 및 品種保護登錄 등

第49條 (品種保護料) ①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品種保護權者는 그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중에는 農林部長官에게 品種保護料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品種保護權에 관한 利害關係人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④品種保護權에 관한 利害關係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料額,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50條 (납부기간 경과후의 品種保護料의 납부) ①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品種保護權者는 第4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料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月 이내에는 品種保護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할 때에는 第4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料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品種保護料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品種保護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品種保護權者의 品種保護權은 品種保護料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品種保護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第51條 (品種保護料의 免除) 第4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品種保護料를 免除한다. <개정 2003.12.11>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중에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國民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수급권자가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第52條 (品種保護料의 반환) 납부된 品種保護料는 品種保護料가 잘못 납부된 경우의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53條 (品種保護原簿) ①農林部長官은 品種保護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개정 1996.8.8>

1. 品種保護權의 設定·移轉·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移轉·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3. 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②第1項에 規定된 것외에 登錄事項·登錄節次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54條 (品種保護公報) 農林部長官은 定期的으로 品種保護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5節 品種保護權

第55條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 ①品種保護權은 第5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거나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가 免除된 때에는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品種保護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者 姓名 및 營業所 所在地)

2. 品種保護登錄番號

3. 設定登錄年月日

4.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

④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品種保護權者에게 品種保護權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56條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은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20年으로 한다. 다만, 果樹 및 林木의 경우에는 25年으로 한다.

第57條 (品種保護權의 효력) ①品種保護權者는 業으로서 그 保護品種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品種保護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保護品種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品種保護權者는 第1項에 規定된 權利외에 業으로서 그 保護品種의 種子의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에 대하여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收穫物에 관하여 正當한 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者가 직접 製造한 産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品種에도 적용된다. <개정 2001.1.26>

1. 保護品種(기본적으로 由來된 品種이 아닌 保護品種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由來된 品種

2. 保護品種과 제14조의 規定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品種

3. 保護品種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種子生産이 가능한 品種

④原品種 또는 기존의 由來品種에서 由來되고, 原品種의 遺傳子型 또는 그 組合에 의하여 發現되는 主要 特性을 보유하고 있는 品種으로서 原品種과 명확하게 區別은 되나 특정의 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정한 特性만의 差異를 제외하고는 당해 品種의 主要 特性이 原品種과 같은 品種은 이를 由來된 品種으로 본다.<개정 1999.1.21, 2001.1.26>

第58條 (品種保護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營利외의 目的으로 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保護品種의 실시

2. 實驗 또는 研究를 하기 위한 保護品種의 실시

3. 다른 品種을 育成하기 위한 保護品種의 실시

②農民이 自家生産을 目的으로 自家採種을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당해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權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범위·節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9條 (品種保護權의 효력제한) 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에 의하여 國內에서 販賣 또는 流通된 保護品種의 種子, 그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販賣 또는 流通된 保護品種의 種子, 그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을 이용하여 保護品種의 種자를 増殖하는 행위
2. 増殖을 目的으로 保護品種의 種子, 그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を 輸出하는 행위

第60條 (品種保護權의 제한금지) 政府는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品種保護權의 實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1條 (品種保護權의 移轉등) ①品種保護權은 이를 移轉할 수 있다.

②品種保護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共有持分을 讓渡하거나 共有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2. 당해 品種保護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의 設定 또는 通常實施權의 許諾

③品種保護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保護品種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第62條 (專用實施權) ①品種保護權者는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당해 保護品種에 대하여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專用實施權者는 실시사업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品種保護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專用實施權者는 品種保護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專用實施權에 관하여는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3條 (品種保護權 및 專用實施權登錄의 효력)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原簿에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品種保護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2. 專用實施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3.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②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質權을 相續 기타 一般承繼한 者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취지를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64條 (通常實施權) ①品種保護權者는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諾받은 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保護品種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第68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 移轉할 수 있다.

④第3項외의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品種保護權者 (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品種保護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⑤第3項외의 通常實施權은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品種保護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⑥通常實施權에 관하여는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5條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品種保護出願시에 그 品種保護出願된 保護品種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保護品種을 育成하거나 그 者로부터 알게 되어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出願된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第66條 (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品種保護權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당해 品種保護權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을 無效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동일 品種에 대한 2 이상의 品種保護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品種保護權者

2. 品種保護를 無效로 하고 동일 品種에 관하여 正當한 權利者에게 品種保護를 한 경우의 原品種保護權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67條 (質權行使로 인한 品種保護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品種保護權者는 品種保護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이전에 당해 保護品種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保護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당해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品種保護權者는 競賣등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68條 (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①保護品種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保護品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에게 그 通常實施權 設定에 관한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的 請求는 그 保護品種의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와 通常實施權 許諾에 관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結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1. 保護品種이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保護品種이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營業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司法的 節次 또는 行政的 節次에 의하여 不公正한 去來行爲로 인정된 사항을 是正하기 위하여 保護品種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保護品種이 品種保護權設定登錄日부터 3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農林部長官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請求別로 通常實施權 設定의 必要性을 檢討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農林部長官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그 通常實施權이 國內需要를 위한 供給을 主目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裁定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⑤農林部長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不公正한 去來行爲를 是正하기 위한 裁定이라는 취지를 그 對價의 決定에 고려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⑥農林部長官은 裁定을 하려고 할 때에는 第158條의 規定에 의한 種子委員會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第69條 (裁定請求書의 送達) 農林部長官은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的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그 請求와 관련된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者 기타 그 品種保護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送達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6.8.8>

第70條 (裁定의 方式등) ①裁定은 書面으로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裁定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通常實施權의 범위 및 기간

2. 對價,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의 기간연장에 관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유가 계속 있는 한 農林部長官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1996.8.8>

第71條 (裁定書 謄本의 送達) ①農林部長官은 裁定을 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品種保護權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裁定書 謄本을 送達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裁定書 謄本이 送달된 때에는 裁定書에 명시된 바에 따라 當事者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第72條 (對價의 供託) 第70條第2項第2號의 對價를 지급하여야 할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1. 對價를 받을 者가 受領을 거부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경우
2. 對價에 대하여 第10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 다만, 質權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3條 (裁定의 失效等) ①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받은 者가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지급시기까지 對價(對價를 定期로 또는 分割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裁定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받은 者가 그 通常實施權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通常實施權을 裁定한 사유가 종료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받은 者가 그 對價를 定期로 또는 分割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최초의 支給分후의 支給分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供託하지 아니한 경우
- ③第2項의 경우에 第68條第6項·第69條·第70條第1項 및 第7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은 그 때부터 消滅된다.

第74條 (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裁定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裁定으로 정한 對價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개정 2007.8.3>

第75條 (通常實施權의 登錄의 효력) ①通常實施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第65條 내지 第68條·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通常實施權의 移轉·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변경·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第76條 (品種保護權등의 포기제한) ①品種保護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62條第4項 또는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品種保護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77條 (포기의 효력) 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은 그 때부터 消滅된다.

第78條 (質權) 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保護品種을 실시할 수 없다.

第79條 (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保護品種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 또는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引導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第80條 (品種保護權의 取消)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品種保護權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權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第15條 또는 第16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01.1.26>

3.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品種의 維持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第1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의 登錄을 取消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取消이 있는 때에는 그 品種保護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에 관하여는 第3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1條 (相續인이 없는 경우의 品種保護權의 消滅) 相續이 開始된 경우로서 相續인이 없는 때에는 品種保護權은 消滅된다.

第82條 (品種保護權의 실시보고) 農林部長官은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保護品種의 실시여부·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第83條 (保護品種維持義務) ①品種保護權者는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동안 品種保護權設定 登錄당시의 당해 保護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品種保護權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의 유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6.8.8>

第6節 品種保護權者의 보호

第84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造成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85條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許諾없이 他人의 保護品種을 業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他人의 保護品種의 品種名稱과 동일 또는 유사한 品種名稱을 당해 保護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의 品種에 사용하는 행위

第86條 (損害賠償請求權) ①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관하여는 「특허법」 第128條 및 第1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8.3>

第87條 (過失의 推定) 他人의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第88條 (品種保護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他人의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떨어뜨린 者에 대하여는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89條 (品種保護의 標示)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品種이 保護品種임을 표시할 수 있다.

第90條 (虛偽標示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品種保護를 받지 아니하거나 品種保護出願중이 아닌 品種의 種子의 容器나 포장에 品種保護를 받았다는 標示 또는 品種保護의 出願중이라는 標示를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標示를 표시하는 행위

2. 品種保護를 받지 아니하거나 品種保護出願중이 아닌 品種을 保護品種 또는 品種保護出願중인 品種인 것같이 營業用 廣告·標札·去來書類등에 표시하는 행위

第7節 審判

第91條 (品種保護審判委員會) ①品種保護에 관한 審判과 再審을 管掌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品種保護審判委員會를 둔다.<개정 1996.8.8>

②審判委員會에 品種保護審判委員會委員長과 品種保護審判委員(이하 "審判委員"이라 한다)을 두되, 審判委員중 1人是 常任으로 한다.

③審判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2조 삭제 <2007.8.3>

第93條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絕査定을 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拒絕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94條 (品種保護의 無效審判) ①品種保護에 관한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品種保護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1.26>

1. 第12條·第17條·第18條·第21條第1項 및 第2項·第24條第1項 또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다만, 제12조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均일성 또는 安定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無效審判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出願人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均일성 또는 安定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

2. 無權利者에 대하여 品種保護된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品種保護된 후 그 品種保護權者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品種保護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請求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品種保護權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때에는 그 品種保護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確定된 때에는 品種保護權은 그 品種保護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品種保護權의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者 기타 品種保護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95條 (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者의 姓名 및 營業所所在地)

2. 品種名稱

3. 品種保護出願日字 및 品種保護出願番號

4. 審査官의 査定日字 또는 決定日字

5.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第1項第5號의 請求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審判長은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 당해 拒絕査定이 品種保護異議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第96條 (審判委員) ①審判委員會委員長은 第9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判委員으로 하여금 이를 審判하게 한다.

②審判委員은 職務상 獨立하여 審判한다.

③審判委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7條 (審判委員의 지정등) ①審判委員會委員長은 각 審判事件에 대하여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合議體를 구성할 審判委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審判委員會委員長은 第1項의 審判委員중 審判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者가 있는 때 에는 다른 審判委員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審判委員會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判委員중에서 1人을 審判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審判長은 그 審判事件에 관한 事務를 總括한다.

第98條 (審判의 合議體) ①審判은 3人의 審判委員으로 구성되는 合議體가 이를 행한다.

②第1項의 合議體의 合議는 過半數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③審判의 合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第99條 (審査規定의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①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는 第29條第1項·第30條·第32條·第37條第2項·第38條 내지 第43條·第44條 第2項 내지 第4項·第45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그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第3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 前段의 경우 第32條第3項중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한 때"는 "第105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한 때"로,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第100條 (「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8.3>) ①제93조 및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관하여는 「특허법」 第139條·第141條·第142條·第147條 내지 第160條·第161條第1項·第3項·第162條 내지 第166條·第171條第2項·第172條 및 第17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8.3>

②第1項의 경우 「특허법」 第139條第1項의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및 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第1項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은 "第94條第1項의 無效審判"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③第1項의 경우 「특허법」 第141條第1項 前段의 "第140條第1項·第3項 내지 第5項 또는 第140條의2第1項"은 "第95條第1項"으로, 同項 後段의 "第82條"는 "第160條"로 본다. <개정 2007.8.3>

④ 삭제 <2007.8.3>

⑤第1項의 경우 「특허법」 第165條第1項의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 및 第137條第1項"은 "第94條第1項"으로, 同條第3項의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同條第7項의 "辨理士"는 "者"로 본다. <개정 2007.8.3>

⑥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⑦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개정 2007.8.3>

第8節 再審 및 訴訟

第101條 (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의 規定을 準

用한다. <개정 2002.1.26>

第102條 (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①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하게 한 때에는 第3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의 경우에는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第103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品種保護權의 효력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品種保護權의 효력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品種保護權이 無效로 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拒絕査定에 대한 審判請求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있었던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경우

第104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品種保護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第103條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第105條 (審決등에 대한 訴) ①審決에 대한 訴와 品種保護出願書·審判請求書 또는 再審請求書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訴는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當事者, 參加人 또는 당해 審判이나 再審에 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審決 또는 決定의 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기간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⑤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訴는 審決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⑥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費用의 審決 또는 決定에 대하여는 獨立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⑦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第106條 (對價에 대한 불복의 訴) ①第70條第2項第2號의 對價에 대하여 決定을 받은 者가 그 對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는 裁定書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를 被告로 하여야 한다.

第107條 (「특허법」 등의 準用 <개정 2007.8.3>) ①品種保護에 관한 再審의 節次 및 再審

의 請求에 관하여는 「특허법」 第180條·第184條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6, 2007.8.3>

②品種保護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특허법」 第187條·第188條 및 第18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8.3>

③第2項의 경우 「특허법」 第187條 本文의 "特許廳長"은 "農林部長官"으로, 同條 但書의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135條第1項·第137條第1項·第138條第1項 및 第3項"은 "第94條第1項"으로, 「특허법」 第189條第1項의 "第186條第1項"은 "第105條第1項"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7.8.3>

第3章 品種의 명칭

第108條 (品種名稱) ①다음 각 호의 品種은 1개의 固有한 品種名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7.8.3>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기 위하여 出願하는 品種
2.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하기 위하여 申請하는 品種
3.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申告하는 品種

②大韓民國 또는 外國에 品種名稱이 登錄되어 있거나 品種名稱登錄出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品種名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第109條 (品種名稱登錄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品種名稱은 第11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의 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1.26, 2007.8.3>

1. 數字 또는 記號로만 표시한 品種名稱
2. 당해 品種 또는 당해 品種의 收穫物의 產地, 品質, 收穫量, 價格, 用途, 生産時期, 生産方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品種名稱
3. 당해 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의 다른 品種의 品種名稱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4. 당해 品種이 사실과 달리 다른 品種에서 派生되었거나 다른 品種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5. 作物의 명칭, 屬 또는 種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作物의 명칭, 屬 또는 種의 명칭으로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6. 국가·인종·민족·성별·장애인·공공단체·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著名한 他人의 姓名·명칭 또는 이들의 略稱을 포함하는 品種名稱.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당해 品種의 原產地를 誤認 또는 混同하게 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9. 品種名稱의 登錄出願日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登錄出願중에 있거나 登錄된 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第110條 (先出願) ①동일 品種名稱에 대하여 2 이상의 品種名稱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品種名稱登錄을 出願한 者만이 그 品種名稱에 대하여 品種名稱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에 관하여는 第21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11條 (品種名稱의 登錄節次등) ①品種名稱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이하 "品種名稱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農林部長官에게 申請을 提出하여 農林部長官에게 品種名稱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②第108條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出願書, 同項第2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目錄登載申請書, 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신고서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한 때에는 品種名稱의 登錄出願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7.8.3>

③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된 品種名稱에 대하여 第109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要件의 具備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出願된 品種名稱이 다음 各號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絕査定을 하여야 한다.

1.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拒絕査定이 있는 경우
2. 第108條第1項에 위반한 경우
3. 第10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의 登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第1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品種目錄登載申請이 거절된 경우

⑤審査官은 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登錄出願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品種名稱登錄出願人에게 거절이유를 通知하여 당해 品種名稱登錄出願人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品種名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하여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부터 30일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品種名稱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1996. 8.8, 2001.1.26>

⑧農林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公告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異議申請節次가 완료된 후에는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品種名稱을 지체없이 品種名稱登錄原簿에 登錄하고 品種名稱登錄出願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⑨第4項의 規定에 의한 拒絕査定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는 第41條第2項 및 第42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12條 (品種名稱의 사용등) ①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品種(제55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保護品種을 제외한다)의 品種名稱을 盜用하여 種子를 판매·보급·輸出 또는 輸入할 수 없다. <개정 2001.1.26>

②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原簿에 등록되지 아니한 品種名稱을 사용하여 種子를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다. <신설 2001.1.26>

③品種名稱登錄出願人 또는 그 品種의 承繼人은 第11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名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商標名稱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品種名稱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第113條 (品種名稱의 取消)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11條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名稱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第111條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2. 品種名稱의 사용을 금지하는 判決이 있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을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登錄된 당해 品種名稱의 出願人에게 取消事由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日 이내에 새로운 品種名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새로운 品種名稱에 관하여는 第111條第3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品種性能의 관리

第114條 (國家品種目錄의 登載對象) 農業·林業 및 水産業生産의 안정상 중요한 作物의 種子에 대한 品種性能의 管리를 위하여 國家品種目錄에 登載할 대상은 벼·보리·콩·옥수수·감자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作物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개정 1999.1.21, 2007.8.3>

第115條 (品種目錄의 登載申請) ①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作物의 品種을 品種目錄에 登載하고자 하는 者(이하 "品種目錄登載申請人"이라 한다)는 品種目錄登載申請書에 당해 品種의 種子試料를 첨부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 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申請書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개정 1996.8.8>

第116條 (品種目錄登載申請品種의 審査등) ①農林部長官은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申請을 한 品種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따라 이를 審査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品種目錄登載申請品種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目錄登載申請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申請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品種目錄登載申請人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6.8.8>

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品種目錄登載申請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品種目錄登載申請人에게 통지하고 당해 品種目錄登載申請品種을 品種目錄에 登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117條 (品種目錄登載品種의 公告) 農林部長官은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종류, 品種名稱,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登載의 有效期間등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載의 有效期間이 연장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第118條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 ①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은 登載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은 그 有效期間延長申請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延長申請은 그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滿了전 1年 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載의 有效期間延長申請이 있는 경우 그 有效期間延長申請品種이 品種目錄登載당시의 品種性能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 延長申請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6.8.8>

第119條 (品種目錄登載의 取消)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의 品種目錄登載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및 第5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目錄의 登載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品種의 性能이 第1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미달된 때
2. 당해 品種의 栽培로 인하여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第11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어 登錄된 品種名稱이 取消된 때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品種目錄의 登載를 받은 때
5. 동일 品種이 2 이상의 品種名稱으로 重複하여 登載된 때(가장 먼저 登載된 品種을 제외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의 登載取消에 관하여는 第3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0條 (品種目錄의 보존) 農林部長官은 品種目錄중 당해 品種에 관련된 부분을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品種의 登載의 有效期間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121條 (品種目錄登載品種의 種子生産) 農林部長官은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를 生産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그 生産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7.8.3>

1. 海洋水産部長官·農村振興廳長 또는 山林廳長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團體·林業團體 또는 水産業團體(이하 "農業團體등"이라 한다)
5. 農林部令이 정하는 種子業者 또는 農漁民

[전문개정 1999.1.21]

第122條 삭제 <1999.1.21>

第123條 삭제 <1999.1.21>

第5章 種子の 보증

第124條 (種子保證의 구분) 種子の 보증은 農林部長官이 행하는 보증(이하 "國家保證"이라 한다)과 種子管理士가 행하는 보증(이하 "自體保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1996.8.8>

第125條 (國家保證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1. 농림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種子檢定機關이 보증한 種子에 대하여는 이를 國家保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第126條 (自體保證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自體保證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1.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種子를 生産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作物의 種子를 生産·販賣하기 위하여 自體保證을 받고자 하는 경우

第127條 (種子管理士의 資格基準등) ①種子管理士의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種子管理士가 이 法에서 정하는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過誤를 범한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④種子管理士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登錄하고, 登錄證을 교부받을 수 있다.<신설 1999.1.21>

第128條 (圃場檢査) ①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을 받는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 또는 種子管理士로부터 1回 이상 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種段階別 圃場檢査의 기준·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第129條 (種子生産의 圃場條件) 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을 받는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品種 또는 다른 系統의 作物과 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交雜危險이 있는 品種 또는 作物의 栽培地域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隔離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130條 (種子檢査等) ①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을 받는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 또는 種子管理士로부터 第1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圃場檢査의 기준에 合格한 圃場에서 生産된 種子에 대하여는 種子檢査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種子檢査를 실시한 農林部長官 또는 種子管理士에게 再檢査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採種段階別 種子檢査 또는 再檢査의 기준·방법·節次등에 關於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개정 1996.8.8>

第131條 (保證標示) ①第128條의 規定에 의한 圃場檢査에 合格하여 第130條의 規定에 의한 種子檢査를 받은 保證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保證種子에 대하여 保證標示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標示 및 보증의 有效期間에 關於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개정 1996.8.8>

第132條 삭제<1999.1.21>

第133條 (保證書의 發給) 農林部長官 또는 種子管理士는 第1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標示한 保證種子에 대하여 檢査를 받은 者로부터 保證書의 發給요구가 있는 때에는 保證書を 發給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第134條 (事後管理試驗) ①農林部長官은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保證種子에 대하여 事後管理試驗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試驗에 關於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개정 1996.8.8>

第135條 (보증의 失效) 保證種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種子保證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1. 제13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第1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의 有效期間이 경과한 때

3. 보증한 包裝種子를 解裝 또는 開裝한 때. 다만, 당해 種子를 보증한 保證機關 또는 種子管理士의 監督하에서 행하는 分包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方法으로 보증을 받은 때

第136條 (分包裝 種子의 保證標示) 第135條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分包裝한 種子의 保證標示는 分包裝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당해 品種의 保證標示와 동일 내용의 保證標示를 하여야 한다.

第6章 種子의 流通

第137條 (種子業의 登錄<개정 1999.1.21>) ①種子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種子管理士 1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의 種子를 生産·販賣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1999.1.21>

④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農業團體 등이 種子의 增殖·生産·販賣·普及·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1, 2001.1.26>

第138條 (種子의 販賣등) ①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種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1. 1代 雜種의 親 또는 合成品種의 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增殖目的으로 販賣한 후 生産된 種子를 販賣者가 다시 全量 買入하는 경우
3. 試驗 또는 研究目的으로 쓰이는 경우
4. 生産된 種子를 全量 輸出하는 경우
5. 기타 種子用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林部長官은 流通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가 取消된 品種이라 하더라도 取消日전에 生産되었거나 生産중에 있는 당해 品種의 種子에 대하여 取消日의 다음 해까지 販賣 또는 普及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販賣 또는 普及對象地域 및 기간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品種의 種子외의 品種의 種子를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에게 당해 品種의 種子試料를 첨부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3.12.11, 2007.8.3>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

第139條 (種子業登錄의 取消등) ①市·道知事は 種子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種子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7.8.3>

1. 種子業의 登錄을 한 날부터 1年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休業한 때
2. 種子業者가 種子業의 登錄을 한 후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한 때
3. 種子業者가 第137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種子管理士를 두지 아니한 때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種子業의 登錄을 한 때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 ②市·道知事は 種子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營業을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種子業을 再登錄할 수 없다. <개정 1999.1.21, 2007.8.3>
-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の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140條 (種子の 輸出入) ①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種子を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者가 試驗 또는 研究를 目的으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數量 이하의 種子を 輸出 또는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2007.8.3>

②第1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미달하는 輸入種子は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輸入申告를 할 수 없다.

③農林部長官은 國內 生態系保護 및 資源保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種子の 輸出·輸入 또는 輸入된 種子の 國內流通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삭제 <1999.1.21>

第141條 (輸入適應性試驗) ①農林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作物의 種子로서 國內에 처음으로 輸入되는 品種의 種子を 販賣하기 위하여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品種의 種子에 대하여 農林部長官이 실시하는 輸入適應性試驗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1, 2007.8.3>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輸入適應性試驗結果가 農林部令이 정하는 審査基準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品種의 種子の 國內流通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第142條 (種子の 輸入推薦)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種子を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の 輸入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關聯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143條 (流通種子의 品質標示) 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의 대상이 아닌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하고자 하는 者는 種子의 生産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그 밖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種子의 容器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1.26, 2003.12.11>

第144條 삭제 <1999.1.21>

第145條 (種子의 流通調査등) ①農林部長官은 優良種子의 生産과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種子業者나 種子賣買業者의 營業場所·事務所등에 出入하여 당해 施設, 關係書類나 帳簿, 種子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種子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②農林部長官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에 위반하여 生産 또는 販賣되고 있는 種子에 대하여 그 生産 또는 販賣를 中止하게 하거나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收去한 種子에 대하여는 그 目錄을 작성하여 收去당시 당해 種子를 所有 또는 소지하고 있던 者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農林部長官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된 種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種子로서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種子의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改正 1996.8.8, 2001.1.26>

④農林部長官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種子에 대하여 이를 種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收去당시 당해 種子를 所有 또는 소지하고 있던 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收去당시 당해 種子를 所有 또는 소지하고 있던 者의 住所가 불분명하거나 그가 引受를 거절하는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保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146條 삭제 <1999.1.21>

第147條 (種子試料의 보관)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種子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試料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1.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이 設定登錄된 品種의 種子
2.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
3.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品種의 種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試料의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148條 (流通種子の紛爭) ①流通中の種子에 관하여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紛爭當事者は 당해品種의種子를 보증한農林部長官 또는種子管理士에게 당해品種의種子保證에 관한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第1項의規定에 의한紛爭當事者は農林部長官에게 당해紛爭의對象種자와第147條의規定에 의하여 보관·관리중인種子試料와의對比試驗을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紛爭當事者が第2項의規定에 의하여對比試驗을申請하고자 할 때에는紛爭當事者が種子試料採取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種子試料를密封하여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第2項의規定에 의하여對比試驗을申請받은農林部長官은對比試驗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紛爭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⑤農林部長官은第1項의規定에 의한紛爭當事者에게第4項의規定에 의한對比試驗에 필요한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⑥流通中の種자와 관련된被害가種子의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被害者는種子業者에게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補償을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6.8.8>

第7章 삭제 <2000.1.21>

第149條 삭제 <2000.1.21>

第150條 삭제 <2000.1.21>

第151條 삭제 <2000.1.21>

第152條 삭제 <2000.1.21>

第153條 삭제 <2000.1.21>

第154條 삭제 <2000.1.21>

第155條 삭제 <2000.1.21>

第156條 삭제 <2000.1.21>

第157條 삭제 <2000.1.21>

第8章 補則

제158조 (중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자위원회를 둔다.

1. 중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

3. 종자업자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58조의2 (분쟁의 조정) 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158조의3 (위원의 제척 등) ①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종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158조의4 (자료요청 등) ①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158조의5 (출석의 요구) ①종자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제158조의6 (조정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8.3]

제158조의7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第159條 (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第1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管理士의 資格取消
2. 第1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業登錄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第160條 (手數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管理人을 選任 또는 변경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2.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出願하고자 하는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

4.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公告하는 경우 당해 品種의 品種保護出願을 한 者

5.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

6.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

7. 第92條 내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에 관한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

8.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

9.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의 登載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

10.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延長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

11. 第12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保證을 받고자 하는 者

12. 第13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발급받고자 하는 者

13.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種子를 申告하

고자 하는 者

14. 第141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適應性試驗을 받고자 하는 者

15. 각종 書類의 謄本·抄本·寫本 또는 證명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額,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61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3.12.11]

第162條 (手數料의 반환) 납부된 手數料는 手數料가 잘못 납부된 경우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163條 (使用文字) 이 法에 의한 모든 書類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漢字 및 外國文字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第164條 (書類의 보관등) ①農林部長官은 品種保護出願의 포기·無效·취하 또는 拒絕査定이 있거나 品種保護權의 消滅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당해 品種保護出願 또는 品種保護權에 관한 書類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品種保護에 관한 利害關係人은 品種保護出願 關聯書類, 品種保護權 關聯書類, 第35條 또는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된 試驗에 관한 書類의 閱覽 및 複寫를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2007.8.3>

1. 第57條第3項第2號에 해당하는 品種으로서 당해 品種保護出願人의 非公開要請이 있는 경우

2. 出願公開되지 아니한 品種保護出願에 관한 書類인 경우

3. 삭제 <2007.8.3>

第165條 (種子産業의 육성) ①農林部長官은 種子産業의 振興과 農業遺傳資源의 蒐集·評價·보존·관리 및 優秀品種의 開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1.1.26>

②農林部長官은 農業遺傳資源의 多樣性 확보와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農業遺傳資源의 수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③農林部長官은 農業遺傳資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農業遺傳資源의 활용도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 分讓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④農林部長官은 第121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種子生産의 代行者에게 種子의 生産·普及등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1.21>

⑤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農業遺傳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6>

第166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海洋水産部長官, 시·도지사, 시장·군수, 소속기관의 장 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林水産業關聯 法人 또는 團體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1.1.26>

第16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山林用種子·桑苗·煙草種子·水産植物種子 및 人蔘種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사업법」·「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7.8.3>

第168條 (「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8.3>)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에 있어서의 書類의 송달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第2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8.3>

第9章 罰則

第169條 (侵害罪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12.11>

1.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
 2. 제34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침해한 者. 다만, 당해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品種保護査定 또는 審決을 받은 者
-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罪는 高소가 있어야 公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第170條 (偽證罪) ①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54條 또는 第1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審判委員會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査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71條 (虛偽標示의 罪)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72條 (秘密漏泄罪등) 農林部職員(第166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機關의 職員을 포함한다)·審判委員會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알게 된 品種保護出願중의 品種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8.8, 1999.1.21>

第173條 (無登錄種子業의 罪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

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8.8, 1999.1.21>

1. 第1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品種의 他人의 品種의 品種名稱을 盜用하여 種子를 販賣·普及·輸出 또는 輸入한 者
2. 삭제 <1999.1.21>
3. 第13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허위로 발급한 種子管理士
4.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하지 아니하고 種子業을 영위한 者
5. 第13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物의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한 者
6.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고 品種의 種子를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한 者
7. 第1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이 取消된 種子業을 계속 영위하거나 營業停止를 받고도 種子業을 계속 영위한 者
8. 第14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種子를 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輸入된 種子를 유통시킨 者
9. 삭제 <1999.1.21>
10. 第1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種子에 대하여 輸入適應性試驗을 받지 아니하고 種子를 輸入한 者
11. 第14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産 또는 販賣를 중지하게 한 種子를 生産 또는 販賣한 者

第17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事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69條第1項·第171條 또는 第17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75條 (沒收등) ①法院은 第16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造成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물건을 被害者에게 교부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②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價額을 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176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1.1.26>

1. 제112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品種名稱을 사용하여 種子를 판매 또는 보급한 者
2. 삭제 <1999.1.21>
3. 삭제 <1999.1.21>
4. 삭제 <1999.1.21>
5. 삭제 <1999.1.21>
6. 삭제 <1999.1.21>
7. 第14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고 種子를 輸出 또는 輸入한 者
8. 삭제 <1999.1.21>
9. 第1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流通種子에 대한 品質標示를 하지 아니하고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한 者

10.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삭제 <1999.1.21>

②제143조의 規定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3.12.11>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6.8.8, 2002.1.26, 2007.8.3>

1.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으로서 農林部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品種保護權·專用實施權 또는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취지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실시보고의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4.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54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鑑定人 및 通譯人외의 者로서 審判委員會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5.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委員會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正當한 사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6.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54條 또는 第1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委員會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正當한 사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3.12.11>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할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3.12.11, 2007.8.3>

⑦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3.12.11>

附則 <제5024호,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1條 내지 第107條의 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主要農作物種子法 및 種苗管理法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第3條 (特許法의 準用에 관한 적용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法 第3條, 第9條, 第10條 第1項·第2項 및 第4項, 第17條, 第19條 내지 第23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와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法 第157條, 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 第16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되는 同法의 해당 規定을 準用하는 것으로 보되, 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2月 28日까지는 이 法 施行당시의 特許法의 해당 規定을 準用하는 것으로 본다.

第4條 (이 法 施行당시에 알려진 品種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알려진 品種으

로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品種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種苗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登錄이 되어 있는 品種
2.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優良種子의 品種
3. 山林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어 있는 品種
4. 外國에서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된 品種
5. 育成者 및 最初流通日字에 대한 증거가 있는 品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은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은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起算한다. 다만, 해당 品種이 다음 각號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起算한다.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의 登錄日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種子委員會의 審議決定日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의 登錄日
4.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의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日
5.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最初流通日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品種保護權은 당해 品種保護出願日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은 경우 그 品種保護出願日전에 선의로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品種保護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에 관하여는 第75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條 (品種名稱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種의 品種名稱은 第11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名稱으로 본다.

第6條 (種苗登載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生産한 優良品種과 종전의 種苗管理法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중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의 登載對象作物에 해당하는 品種인 경우에는 第1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되어 公告된 品種으로 보며, 品種目錄의 登載對象作物외의 品種인 경우에는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品種으로 본다.<개정 1996.8.8>

第7條 (種子保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生産한 優良品種중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의 登載對象作物에 해당하는 品種의 種子에 대하여는 第124條의 規定에 의한 種子の 보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第8條 (種子業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種苗管理法에 의하여 種苗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種苗管理法에 의하여 種苗商의 申告를 한 者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種子商의 申告를 한 者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種子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보게 된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管理士 1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第9條 (種子の 輸出入申告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輸入되어 販賣되고 있는

輸入品種에 대하여는 第138條第1項의 적용은 2년간 이를 猶豫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輸出入申告를 한 者는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의 輸出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 또는 種苗管理法에 의하여 種子의 輸入推薦을 받은 者는 第142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推薦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10條 (輸入適應性試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 또는 種苗管理法에 의하여 國內適應性試驗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種子는 第141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輸入適應性試驗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種子로 본다.

第11條 (流通種子의 品質標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種苗管理法에 의하여 種苗의 포장에 品質의 標示를 한 者는 第1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種子의 品質標示를 한 것으로 본다.

第12條 (種子基金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設置된 種子基金은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種子基金으로 본다.

第1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 또는 種苗管理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2>省略

<43>法律 第5024號 種子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但書,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 本文, 第8條, 第9條第1項·第2項, 第21條第5項, 第23條第4項, 第24條第2項, 第26條第1項 本文, 第27條第5項·第6項, 第28條第1項, 第33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項, 第35條第2項, 第36條第1項, 第38條第2項·第3項, 第41條第1項 本文·第2項, 第43條第4項, 第44條第3項, 第45條第3項, 第46條第3項, 第49條第2項, 第53條第1項 本文, 第54條, 第55條第2項·第3項 本文·第4項, 第58條第2項, 第63條第2項, 第68條第1項 本文·第3項 내지 第6項, 第69條, 第70條第3項, 第71條第1項, 第73條第2項 本文, 第80條第1項 本文, 第82條, 第83條第2項, 第107條第3項, 第111條第1項·第2項·第7項·第8項, 第113條第1項 本文·第2項, 第115條第1項, 第116條, 第117條, 第118條第4項, 第119條第1項 本文, 第120條, 第121條第1項第1號, 同條第2項 本文, 第122條第2項 내지 第5項, 第1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24條, 第125條第1項第1號·第2號, 同條第2項, 第127條第2項, 第128條第1項, 第130條第1項·第2項, 第132條, 第133條, 第134條第1項, 第138條第2項·第3項 本文, 第140條第1項·第3項·第4項, 第141條, 第142條, 第145條第1項 내지 第4項, 第146條第1項·第2項, 第147條第1項 本文, 第148條第1項 내지 第5項, 第150條第1號, 第151條, 第152條第1項, 第153條, 第154條第1項第1號, 同條第2項, 第155條第1項·第2項·第4項, 第156條, 第157條, 第158條第1項, 第159條, 第164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第165條, 第166條, 第173條第2號, 第176條第3項, 附則 第6條 및 附則 第7條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 第10條, 第91條第1項, 第158條第1項, 第172條 및 第176條第2項第1號중 "農林水産部"를 각각 "農林部"로 한다.

第9條第3項, 第11條, 第14條第2項第4號, 第34條第3項, 第35條第3項, 第37條第4項, 第38

條第4項, 第46條第4項, 第49條第5項, 第53條第2項, 第115條第2項, 第116條第1項, 第121條第2項第3號, 第122條第6項, 第123條第2項, 第127條第3項, 第128條第2項, 第130條第3項, 第131條第2項, 第134條第2項, 第139條第4項, 第140條第1項 但書, 第141條第2項, 第142條第2項, 第143條, 第144條第2項, 第145條第6項, 第147條第2項, 第148條第6項, 第160條第2項, 第163條 但書 및 第166條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第121條第2項第1號 및 第166條중 "水産廳長"을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44>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種子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1條중 "財政投融资特別會計"를 "財政融資特別會計"로 한다.

第6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668호,1999.1.21>

①(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190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種子基金의 폐지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種子産業法에 의하여 설치된 種子基金의 債權·債務 등 일체의 權利·義務 및 財産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2중 第12號를 削除한다.

第4條 (基金廢止에 따른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種子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74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수 및 임목품종의 신규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과수 또는 임목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 출원된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제1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중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民事訴訟法 第54條第2項·第55條·第59條·第80條·第83條·第85條·第87條"를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제59조·제63조·제87조·제88조·제92조·제94조·제96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民事訴訟法 第133條·第271條 및 同法 第339條"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01조제2항중 "民事訴訟法 第422條 및 同法 第424條第1項"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民事訴訟法 第429條第1項"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條"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99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9조, 제40조 및 제16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보호의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규정의 시행당시 품종보호출원된 품종의 임시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제4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9조, 제40조 및 제16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種子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山林法 第45條第2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山林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597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業 및 漁業生産에 대한 災害의 豫防과 그 事後對策을 강구함으로써 農業 및 漁業의 生産力을 增進하고 農業 및 漁業의 經營의 安定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2001.4.7, 2007.4.11>

1. "災害"라 함은 農業災害와 漁業災害를 말한다.
2. "農業災害"라 함은 旱害·水害·風害·冷害·우박·서리·潮害·雪害·凍害·病蟲害 기타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農業用 施設·農耕地·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漁業災害"라 함은 異常潮流·赤潮現象, 태풍·해일 기타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水産養殖物 및 어업용 시설의 被害를 말한다.
4. "農業用 施設"이라 함은 畜舍·蠶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4의2. "임업용 시설"이라 함은 묘포장 기타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 4의3. "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그물, 부자, 로프, 지주목 기타 수산양식물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5. "農作物"이라 함은 食用作物·工藝作物·飼料作物·綠肥作物·園藝作物·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6. "家畜"이라 함은 畜産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家畜을 말한다.
7. "災害對策"이라 함은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農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農業·農村基本法 第15조 및 第16조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9. "漁家"라 함은 그 世帶主 또는 同居家族이 家計維持를 目的으로 직접 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가구단위와 「수산업법」 第10조의 規定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말한다.
10. "水産養殖物"이라 함은 漁家가 養殖하는 魚類·貝類·海藻類 기타의 水産動植物을 말한다.

第3條 (災害對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災害對策을 실시한다.

1. 災害의 豫防을 위한 裝備·기재 또는 人力의 지원 및 動員에 관한 사항
2. 災害의 發生時의 農業用 施設·農耕地·農作物등의 復舊에 관한 사항
3.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の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災害對策의 실시에 관한 사항

第4條 (補助 및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災害對策에 소요되는 費用을 전부 또는 최대한 補助하고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自然災害對

策法 기타의 法令에 의하여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지원의 措置를 받은 農家 및 漁家は 이 法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3.6.11, 1995.12.6>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農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1.4.7>

1. 旱害對策의 경우

가. 揚水를 한 때에는 그 揚水에 소요된 油類代金 및 電氣料

나. 揚水機 및 揚水用 發動機의 購入費

다. 揚水用 펌프 및 管井의 施設費

2.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病害蟲을 防除하는 경우 : 農藥代金

3.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代播하는 경우 : 種苗代金 및 肥料代金

4. 流失 또는 埋沒된 農耕地를 復舊하는 경우 : 復舊費

5. 流失 또는 破損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6. 流失되었거나 죽은 家畜에 갈음하여 入殖하는 경우 : 어린 家畜의 入殖費

7. 流失 또는 埋沒된 草地를 復舊하는 경우 : 復舊費

8. 流失되었거나 죽은 牛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飼育費

9. 災害를 입은 農家の 生計安定과 經營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罹災民의 救護

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

다. 營農資金의 償還期限延期 및 그 利子の 減免

라. 政府糧穀의 支給등

10. 기타 지원사항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漁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개정 2001.4.7, 2005.3.31>

1. 어업재해로 인한 水産養殖物의 被害가 있는 경우:

가. 種苗代金 또는 稚魚代金

나. 죽은 養殖物의 撤去費

2. 유실 또는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3. 災害를 입은 漁家の 生計安定과 經營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罹災民의 救護

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

다. 營漁資金의 償還期限延期 및 그 利子の 減免

라. 政府糧穀의 支給등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의 基準과 方法에 관하여는 自然災害對策法을 準用하되, 同法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共同部令(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1997.12.13, 2001.4.7, 2005.3.31>

⑥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에 소

요되는 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第5條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 등) ①農業災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に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를 둔다.<개정 1997.12.13>

②漁業災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に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를 둔다.<개정 1997.12.13>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 및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災害對策에 필요한 資材確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每年度 災害對策에 필요한 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第7條 (應急措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災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應急措置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地域의 住民을 應急措置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當該 地域안의 土地·家屋·施設 또는 物資를 사용 또는 收用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災害對策命令書로 이를 執行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營事業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管轄 地方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⑤公營事業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規定은 第4項의 裁決에 대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2.4>

第8條 (應急對策의 지원)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災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應急措置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公共機關의 長 또는 自動車運輸事業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運送事業者(이하"運輸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災害對策에 필요한 物資의 應急輸送,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者는 業務遂行에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④第7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補償에 관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9조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이라 한다)를 복구이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 또는 어가는 선급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간 이내에 일기불순 등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복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의 지원비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실시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7]

[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01.4.7>]

第10條 (補助 및 지원의 제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家 및 漁家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災害의 豫防 및 事後復舊의 管理를 故意로 게을리하여 그 被害를 擴大시킨 경우
2. 災害에 대한 被害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중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01.4.7>]

제11조 (과태료) ①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4.7]

第1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運輸業者로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고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者

[제10조에서 이동<2001.4.7>]

附則 <제4250호,1990.8.1>

①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補助 및 지원에 관한 特例) 1990年 1月 1日부터 이 法 施行日까지 發生한 農業災害 및 漁業災害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附則 <제4555호,1993.6.11>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자연재해대책법) <제4993호,1995.12.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農漁業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風水害對策法"을 "自然災害對策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風水害對策法"을 "自然災害對策法"으로 한다.

④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제6468호,2001.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土地收用法 第73條 내지 第75條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38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農漁業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水産業法 第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5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農業의 生産性向上과 經營 개선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機械"라 함은 農林畜産物의 生産 및 生産후 處理作業과 生産施設의 環境制御 및 自動化등에 사용되는 機械·設備 및 그 附屬 機資材를 말한다.

2. "農業機械化事業"이라 함은 農業機械의 研究·調査·開發·生産·普及·이용·技術訓練·사후관리·安全管理등을 통하여 農業生産技術의 향상과 農業의 構造 및 經營改進黨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第3條 (農業機械化促進義務)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化事業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條 (資金支援)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를 購入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附帶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의 製造業者에게 農業機械의 開發·生産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5條 (農業機械化基本計劃) ①農林部長官은 農業機械化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農業機械化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農業機械의 需給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農業機械의 研究·開發 및 檢査에 관한 사항
3. 農業機械에 대한 技術訓練에 관한 사항
4. 農業機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農業機械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6. 기타 農業機械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第6條 (施行計劃) 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行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第7條 (新技術農業機械) ①農林部長官은 新技術을 이용한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新技術의 이용에 적합한 農業機械를 新技術農業機械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新技術農業機械를 生産 또는 購入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그 生産 또는 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第8條 (공동이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機械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業機械의 共同利用事業者에게 그 農業機械의 購入과 附帶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9條 (農業機械의 檢査) ①農林部長官은 農業機械의 開發과 普及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의 申請에 따라 農業機械에 대한 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삭제 <1999.3.31>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農業機械와 동일한 型式의 農業機械에 대하여 品質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後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④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檢査에 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檢査의 종류·기준·방법 및 檢査用 供試品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第10條 (檢査合格의 無效·取消등) ①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農業機械에 대하여는 그 合格을 無效로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檢査結果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基準에 미달한 農業機械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出荷를 금지하고 補完을 지시하거나, 檢査合格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삭제 <1999.3.31>

第11條 (사후관리등)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되는 農業機械의 製造業者·輸入業者 및 販賣業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業機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農業機械에 대한 사후봉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과 技術·人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第12條 (安全管理) ①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및 輸入業者는 農業機械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安全裝置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裝置의 構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農林部長官·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裝置를 임의로 改造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는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第13條 (農業機械化事業의 委託)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農業機械化事業의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2.5, 2005.12.29>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2.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3.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林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삭제 <1999.2.5>
6. 기타 農業機械化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

第14條 (청문) 農林部長官은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第15條 (權限의 위임)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그 所屬機關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2.13>

第16條 삭제 <1999.3.31>

第17條 삭제 <1999.3.31>

第18條 (過怠料) ①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裝置를 부착하지 아니한 農業機械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에 대하여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신설 1999.3.31>

②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3.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3.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9.3.3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3.31>

附則 <제4788호,1994.11.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普及機種農業機械에 대한 經過措置) 중전의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普及機種農業機械에 대하여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機械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중전

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6號중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5條"를 "農業機械化促進法 第11條"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業機械化促進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物價安定에관한法律"로 한다.

③내지 ⑥省略

第5條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3>省略

<34>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項, 第6條, 第7條第1項, 第9條第1項·第3項·第6項, 第10條第2項, 第12條第3項, 第13條 本文, 第14條 本文, 第15條 및 第18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2項·第4項·第5項, 第10條第2項 및 第11條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35>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5759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16條 생략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號를 削除한다.

4.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

⑤및 ⑥생략

第18條 생략

附則 <제5951호,1999.3.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1호], 시행일 2008.8.4.

第1條 (目的) 이 법은 肥料의 品質을 보전하고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통하여 農業生産力을 유지·增進시키며 農業環境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3.12.11>

1. "肥料"라 함은 植物에 營養을 주거나 植物의 栽培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化學的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物質과 植物에 營養을 주는 物質을 말한다.

2. "普通肥料"라 함은 副産物肥料외의 肥料로서 公定規格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副産物肥料"라 함은 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製造業 또는 販賣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나온 副産物, 人糞尿, 飲食物類廢棄物, 土壤微生物製劑(土壤酵素製劑를 포함한다), 토양 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定規格"이라 함은 農林部長官이 그 規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肥料에 대하여 그 主成分의 最少量 또는 含有할 수 있는 有害成分의 最大量 기타 主成分의 效能維持에 필요한 附加成分의 含有量 등 肥料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規格을 말한다.

5. "保證成分"이라 함은 肥料業者가 생산·수입 또는 販賣하는 肥料에 대하여 그 肥料가 含有하고 있는 主成分의 最少量을 百分率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肥料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肥料生産業者 : 肥料를 生産(製造·配合·加工 또는 採取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

나. 肥料輸入業者 :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

다. 삭제 <2003.12.11>

라. 肥料販賣業者 : 肥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

第3條 (적용의 예외등) ①肥料를 工業用 또는 飼料用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生産·輸入 또는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②農業·林業·畜産業 또는 水産業을 영위하는 者가 그 營爲過程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③삭제 <1999.3.31>

第4條 (公定規格의 設定등) ①農林部長官은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 廢止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公定規格의 設定·변경 또는 廢止나 副産物肥料의 지정 또는 廢止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그 設定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定規格設定 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肥料公定規格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肥料의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30日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 또는 지정의 告示가 되지 아니한 肥料를 生産·輸入하여 農業용으로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公定規格의 設定이나 副産物肥料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定規格이 設定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生産·輸入하여 販賣할 수 없다. 다만, 試驗用 또는 研究用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第3項의 肥料公定規格審議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삭제 <2003.12.11>

第6條 (農業環境保護 및 肥料開發) 農業環境 및 土壤을 보호하고 農業生産性 增大와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地域別·作物別 肥料의 開發促進과 品質改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肥料의 供給) ①農林部長官은 비료의 수급(需給)조절 및 가격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肥料를 供給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②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肥料의 滅失·毀損·成分低下 및 포장의 파손 등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그 損失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賠償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8.3>

第8條 (肥料計定の 設置 및 財政支援) ①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는 自體의 經理와 구분하여 肥料計定을 따로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그 肥料의 供給으로 인하여 缺損額이 생긴 때에는 이를 政府豫算에서 第1項의 肥料計定에 補填한다.

③第2項의 缺損額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一般會計歲計剩餘金으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第9條 삭제 <1999.3.31>

第10條 (危害性肥料 등의 輸入制限) ①農林部長官은 重金屬이 含有되어 있거나 病害蟲이 流入되어 土壤環境 및 植物에 중대한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 副産物肥料와 그 原料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危害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 副産物肥料와 그 原料에 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危害性의 기준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肥料生産業의 登錄<개정 1999.3.31>)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9, 2007.8.3>

②삭제 <19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3.31>

④肥料生産業者는 登錄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廢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第12條 (肥料輸入業의 申告<개정 1999.3.31>) ①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輸入業을 申告하는 者는 시·군·구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第13條 (營業의 承繼) ①비료업자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을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3.12.11>

②삭제 <1999.3.31>

第14條 (보증표시 및 販賣管理) ①비료업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普通肥料 및 副産物肥料의 容器나 포장의 외부에 肥料의 명칭, 保證成分量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3.12.11>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肥料를 讓渡·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肥料
2. 肥料의 容器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肥料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을 초과한 肥料
4. 肥料의 容器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誤認하기 쉬운 표시를 한 肥料
5. 公定規格에서 정하는 原料외의 物質을 사용하여 製造한 肥料
6.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외의 者가 生産 또는 輸入한 肥料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第15條 삭제 <1999.3.31>

第16條 삭제 <1999.3.31>

第17條 삭제 <1999.3.31>

第18條 (品質檢査) ①삭제 <1999.3.31>

②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生産·輸入·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肥料의 品質에 대하여 檢査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7.8.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9條 (販賣中止·回收·폐기 등의 措置)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당해 肥料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販賣中止·回收·폐기·讓渡禁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12.11, 2007.8.3>

1.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肥料
2. 公定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되지 아니한 肥料
3. 第14條第1項에 의한 保證成分量(重量을 포함한다)과 實際含有成分量과의 差異가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肥料
4.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第20條 (登録取消와 營業의 정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生産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録을 取消하거나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5號 또는 第1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録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肥料生産業의 登録을 한 때

2. 登錄한 날부터 1年이 경과하여도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肥料를 生産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4.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主成分 最少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肥料를 生産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5.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제11조제3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된 保證成分量에 미달한 肥料를 生産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8.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9. 삭제 <1999.3.31>
10. 삭제 <1999.3.31>
11. 삭제 <1999.3.31>
12.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그 營業을 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輸入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所의 閉鎖 또는 3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肥料輸入業의 申告를 한 때
2.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主成分 最小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4.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된 保證成分量에 미달한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6.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그 營業을 한 때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の 구체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第21條 (課徵金處分) ①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가 第20條第1項第7號·第8號 또는 第2項第6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 이하의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賦課는 營業停止處分으로 肥料需給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價格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31,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の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④삭제 <1999.3.31>

第22條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肥料輸入業者의 營業所에 대한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전문개정 1997.12.13]

第23條 (登錄 또는 申告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1999.3.31>

1.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肥料生産業者와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할 때
 3. 第27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生産業 및 輸入業의 營業을 하고자 할 때
- ②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輸入業을 하고자 하는者로서 閉鎖命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肥料의 輸入業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1999.3.31>

第24條 (監督) ①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業者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肥料의 運送業者 또는 倉庫業者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7.8.3>

②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肥料의 品質管理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農業協同組合中央會와 肥料業者·肥料의 運送業者 및 倉庫業者의 事務所·店鋪·倉庫·工場 등에서 肥料 또는 그 原料를 分析·檢査하기 위하여 필요한 最少量의 試料를 無償으로 採取하게 하거나 필요한 資料 및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7.8.3>

第25條 삭제 <1999.3.31>

第26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3.31>

第2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3.3.19>

1.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者
2. 삭제 <1999.3.31>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肥料를 生産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者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者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者
6. 第14條第2項第3號에 해당하는 肥料를 讓渡·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者
7. 삭제 <1999.3.31>
8.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肥料의 販賣中止·回收·폐기 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9.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고도 營業을 한 者
10.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閉鎖命令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고도 營業을 한 者

第28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3.12.11, 2007.8.3>

1. 제14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제7호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삭제 <1999.3.31>
4. 삭제 <1999.3.31>
5. 삭제 <1999.3.31>
6. 삭제 <1999.3.31>

第2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 또는 第2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0條 (過怠料)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3.31>

1. 삭제 <1999.3.31>
2. 삭제 <1999.3.31>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試料採取 또는 資料 및 서류의 提出要求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제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 [전문개정 2007.8.3]

第32條 (過怠料의 賦課節次) ①第30條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8.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019호,19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第3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肥料의 生産業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生産業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肥料의 生産業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③(肥料의 販賣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販賣業을 登錄한 者는 이 法에 의한 肥料의 販賣業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8>省略

<59>肥料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第3條第1項·第3項·第4項, 第4條第1項, 第5條, 第6條, 第8條第1項·第3項, 第9條, 第11條第1項 本文, 同條第2項·第4項, 第17條 但書, 第21條 및 第26條第1項 내지 第3項 중 "農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2項, 第11條第3項, 第13條第1項·第3項, 第16條 및 第25條중 "農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60>法律 第5019號 肥料管理法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第4號, 第4條第1項·第2項·第4項, 第5條第1項·第3項·第4項, 第7條, 第9條, 第10條第1項·第2項, 第11條第1項 本文, 同條第2項·第4項, 第18條第2項, 第19條 本文 및 第24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3項, 第4條第2項, 第11條第5項, 第12條第1項, 第13條第2項, 第14條第1項, 第19條第1號·第3號, 第20條第1項第3號·第4號, 同條第3項 및 第25條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61>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947호,1999.3.31>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肥料生産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生産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1條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의 登錄 또는 肥料輸入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肥料生産業을 登錄한 者는 이 법 施行후 3월 이내에 관할 市·道知事에게 肥料生産業登錄證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부칙 <제6865호,2003.3.1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000호,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肥料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591호,2007.8.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도지사에게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農藥管理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藥의 製造·輸入·販賣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農藥의 品質向上, 流通秩序의 확립 및 安全使用을 도모하고 農業生産과 生活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1996·8·8>

1. "農藥"이라 함은 農作物(樹木 및 農·林産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菌·昆蟲· 응애·線蟲·바이러스·雜草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動·植物(이하 "病害蟲"이라 한다)의 防除에 사용하는 殺菌劑·殺蟲劑·除草劑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藥劑와 農作物의 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藥劑를 말한다.

2. "品目"이라 함은 有效成分量 및 製劑形態가 같은 農藥의 종류를 말한다.

3. "原劑"라 함은 農藥의 有效成分이 농축되어 있는 物質을 말한다.

4. "製造業"이라 함은 國內에서 農藥을 製造(加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5. "原劑業"이라 함은 國內에서 原劑를 生産하여 이를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6. "輸入業"이라 함은 農藥 또는 原劑를 輸入하여 이를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7. "販賣業"이라 함은 製造業 및 輸入業외의 農藥을 販賣하는 業을 말한다.

8. "防除業"이라 함은 農藥을 사용하여 病害蟲을 防除하거나 農作物의 生理機能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業을 말한다.

第2章 營業의 登錄 등

第3條 (營業의 登錄 등) ①製造業·原劑業 또는 輸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1999.3.31, 2002.12.11>

③삭제 <1999.3.31>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人力·施設·裝備 등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1996·8·8>

第3條의2 (營業의 申告) ①防除業중 輸出入植物에 관한 防除業(이하 "輸出入植物防除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하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植物防除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植物防除業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人力·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第4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개정·2002.12.11>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5條 (製造業者 등의 地位承繼) ①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 (이하 "製造業者등"이라 한다)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製造業者등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製造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地位를 承繼한 法人이 第4條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開始日 또는 合併日로부터 6月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하거나 그 任員을 改任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3.31>

第6條 삭제 <1999.3.31>

第7條 (登錄의 取消 등) ①農村振興廳長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原劑業 또는 輸入業을 登錄한 者(이하 각각 "製造業者", "原劑業者" 또는 "輸入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營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999.3.31>
3. 삭제 <1999.3.31>
4. 第8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農藥 또는 原劑를 製造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한 때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6.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보관·陳列 또는 販賣한 때
7.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虛偽廣告 또는 誇大廣告를 하거나 同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方法에 따르지 아니하고 廣告를 한 때
8.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취급한 때
9.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農藥의 品質이 不良하다고 判明되거나 自體檢査成績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自體檢査成績書を 제출한 때

10.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試料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收去 또는 폐기의 命令에 위반한 때

1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등의 補完命令을 위반하거나 同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管理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3. 삭제 <1999.3.31>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販賣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營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9.3.31, 2002.12.11>

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 중 第4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第1項第6號·第7號 또는 第10號 내지 第12號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또는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③國立植物檢査機關의 長은 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植物防除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輸出入植物防除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12.11>

1. 삭제 <1999.3.31>

2. 第1項第10號 내지 第12號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또는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4. 이 법에 위반하여 死亡事故가 발생한 때

5. 防除酬價 過多徵收등 防除秩序를 문란하게 한데 대한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輸出入植物防除業者가 1年 이상 防除實績이 없거나 國立植物檢査機關의 長이 정하는 輸出入植物檢査處理規程을 위반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6.8.8>

第3章 農藥의 登錄 등

第8條 (國內製造品目的 登錄) ①製造業者가 農藥을 國內에서 製造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品目別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研究機關에서 실시한 農藥의 藥效·藥害·毒性 및 殘留性에 관한 試驗

의 成績을 기재한 書類(이하 "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農藥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의 만료로 再登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を 登錄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成績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免除할 수 있다.<改正 1996.8.8>

1. 申請人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을 말한다. 이하 같다)·住所·住民登錄番號

2. 農藥의 명칭

3. 理化學的 性狀 및 有效成分 기타 成分의 종류와 각각의 含有量

4. 品目の 製造工程

5. 容器 또는 포장의 종류·材質 및 그 容量

6. 適用病害蟲 및 農作物의 범위, 農藥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藥效保證期間

8. 사람과 家畜에 유해한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解毒방법

9. 水棲生物에 유해한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

10. 引火性·爆發性 또는 皮膚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

11.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製造場의 所在地

13.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製造品目の 登錄에 필요한 사항

第9條 (品目登錄申請書類등의 檢討 등) ①農村振興廳長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農業科學技術에 관한 業務를 관장하는 行政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申請人이 제출한 書類를 검토하고, 農藥의 試料를 檢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書類의 檢討 및 農藥試料의 檢査基準은 農村振興廳長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한다.

③農村振興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檢討 및 農藥試料檢査結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申請書類를 반려하거나 그 補完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1. 申請書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

2. 당해 農藥의 藥效가 현저히 낮아 農藥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3. 申請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農藥을 사용할 경우 農作物에 해가 있을 때

4. 당해 農藥의 사용·취급요령에 따라 사용·취급하더라도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당해 農藥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水棲生物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6. 申請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農藥을 사용할 경우 農作物에 잔류되어 그 農作物을 이용하는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申請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農藥을 사용할 경우 農耕地 등의 土壤에 잔류되어 土壤生態界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農耕地에서 生育된 農作物을 이용하는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당해 農藥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의 規定에 의한 公共水域의 水質이 오염되어 水生生態界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家畜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9. 당해 農藥의 명칭이 그 主成分 또는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申請書類를 補完한 경우의 再檢査 등에 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條 (品目登録證의 교부) 農村振興廳長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檢討 및 農藥試料檢査結果 第9條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반려 또는 補完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이 기재된 品目登録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1. 登録番號 및 登録年月日
2. 製造業者의 姓名
3. 第8條第2項第2號·第3號 및 第6號에 規定된 사항
4. 製造場의 所在地
5. 登録의 有效期間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11條 (品目登録의 有效期間)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登録의 有效期間은 10年으로 한다.

第12條 (品目登録者의 地位承繼)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を 登録한 製造業者(이하 "品目登録製造業者"라 한다)에 대한 品目登録에 관한 製造業者의 地位承繼에 관하여는 第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1999.3.31>

第13條 (申請에 의한 品目變更登録 등) ①品目登録製造業者는 第8條第2項第6號에 規定된 適用病害蟲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登録證 및 변경내용에 대한 試驗成績書를 첨부하여 農藥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②品目登録製造業者는 第8條第2項第1號·第4號·第5號 또는 第7號 내지 第13號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내용을 農村振興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品目登録證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品目登録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變更登録에 관련된 品目登録申請書類 등의 檢討 및 반려 등과 品目登録證의 再交付에 관하여는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4條 (職權에 의한 品目登録의 取消 등) ①農村振興廳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を 登録한 者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品目を 登録한 때에는 그 品目の 登録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쳐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당해 품목이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③農村振興廳長은 病害蟲 防除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중 適用病害蟲 또는 農作物의 범위에 관한 品目登錄事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④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품목등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⑤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과 등록취소 또는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15조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농약 및 원제에 대한 금지·제한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의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

4. 그 밖에 로테르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第16條 (原劑의 登錄) ①原劑業者가 原劑를 생산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劑를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研究機關에서 실시한 原劑의 理化學的 分析 및 毒性試驗成績을 기재한 書類를 첨부하여 原劑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劑를 登錄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類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1996·8·8>

1. 申請人의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

2. 原劑의 명칭·理化學的 性狀 및 主成分 기타 成分의 종류와 각각의 含有量

3. 原劑의 合成·製造工程

4. 引火性·爆發性 등 위험이 있는 原劑는 그 내용

5. 製造場의 所在地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原劑登錄에 필요한 사항

③農村振興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農村振興廳長이 정하여 告示하는 原劑登錄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1. 登録番號 및 登録年月日
2. 原劑業者의 姓名
3. 第2項第2號의 內容
4. 製造場의 所在地
5.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劑登録에 관련된 原劑登録者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變更登録 등, 職權에 의한 登録取消에 관하여는 第12條·第13條 및 第14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品目"은 "原劑"로, "製造業者"는 "原劑業者"로 본다.<개정 1999.3.31>

第17條 (輸入農藥 등의 登録) ①輸入業者는 農藥 또는 原劑를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의 종류별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用 또는 學術研究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된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와 동일한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를 동일한 製造業者로부터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登録에 같음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改正 19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農藥의 品目登録의 申請, 品目登録申請書類 등의 檢討 등, 品目登録證의 교부, 品目登録의 有效期間, 品目登録者 등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品目變更登録, 職權에 의한 品目登録의 取消 등에 관하여는 第8條第2項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을, 輸入原劑의 登録, 輸入原劑登録者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輸入原劑의 變更登録, 職權에 의한 輸入原劑 登録의 取消에 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이 경우 "製造業" 또는 "原劑業"은 "輸入業"으로, "製造業者" 또는 "原劑業者"는 "輸入業者"로, "農藥"은 "輸入農藥"으로, "原劑"는 "輸入原劑"로 본다.<개정 1999.3.31>

第4章 農藥의 流通管理 등

第18條 (農藥의 需給調節 등) 農林部長官은 農藥의 需給安定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製造業者·原劑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 대하여 農藥의 需給調節과 流通秩序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農藥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協中央會"라 한다)에 대하여 農藥의 備蓄·供給을 권고할 수 있다.<改正 1996·8·8>

第19條 (農藥計定設置 및 財政支援) ①農協中央會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藥을 備蓄·供給할 경우에는 따로 農藥計定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農協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計定の 設置·운영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6·8·8>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計定の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지원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第20條 (農藥의 표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당해 業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農藥을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容器 또는 포장에 農藥의 명칭·有效成分別 含有量·適用病害蟲名·藥效保證期間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第21條 (보관·陳列 또는 販賣의 금지)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農藥을 보관하거나 陳列 또는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8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品目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農藥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容器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識別이 곤란한 農藥
4. 改包裝 또는 分包裝을 한 農藥. 다만, 輸入業者가 輸入하여 改包裝 또는 分包裝을 한 農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畢證이 첨부되지 아니한 農藥
6.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藥效保證期間이 경과된 農藥

第22條 (虛偽廣告 등의 금지) ①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당해 業者가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農藥에 대하여 虛偽廣告나 誇大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農藥의 廣告에 관한 방법과 誇大廣告의 범위는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第23條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등) ①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第1項의 安全使用基準과 取扱制限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流通農藥의 檢査 등) ①農村振興廳長,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國立植物檢査機關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製造業者·原劑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또는 防除業者가 製造·輸入·販賣 또는 사용하는 農藥·그 原料, 關係帳簿 또는 施設·裝備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農藥 또는 그 原料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는 당해 業者가 製造 또는 輸入한 農藥에 대하여 出荷전에 自體檢査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檢査에 합격한 農藥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自體檢査畢證을 첨부하여 出荷하여야 한다. 이 경우 出荷된 農藥에 대한 自體檢査成績書는 이를 지체 없이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③農村振興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出荷전에 農藥에 대한 檢査를 의뢰한 때에는 이를 檢査(이하 "申請檢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農村振興廳長은 出荷된 農藥의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農藥에 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된 農藥에 대하여 그 危害防止를 위한 安全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封印한 후 그 收去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⑦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5條 (農藥管理에 관한 보고 등) ①農村振興廳長,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은 製造業者·原劑業者·輸入業者·販賣業者 또는 輸出入植物防除業者에게 農藥管理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人力·施設·裝備 등에 대하여는 그 補完을 명할 수 있다. <改正 1999.3.31, 2002.12.11>

②削除 <1999.3.31>

第5章 補則

第26條 (異議申請) ①第8條第1項·第13條第1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登錄 또는 品目變更登錄 등을 申請한 者는 그 登錄申請書類를 반려받거나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에 의한 品目變更登錄 또는 品目登錄取消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農村振興廳長에게 書面으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期日과 場所를 통지하여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農村振興廳長은 第1項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第27條 (提出資料의 보호) ①農村振興廳長은 第8條第2項(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3條第1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條第2項(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資料에 대하여 해당 登錄申請者가 보호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料를 公開하는 것이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提出資料를 閱覽·檢討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8條 (手數料) ①第3條第1項 및 第2項, 第8條第1項, 第13條第1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해당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②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檢査를 의뢰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料를 農村振興廳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③第8條第2項 및 第16條第2項(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의한 試驗研究機關이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原劑業者의 의뢰를 받아 藥害·藥效·毒性 또는 殘留性 試驗을 실시할 때에는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1996.8.8>

第29條 (청문) 農村振興廳長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9.3.31, 2002.12.11>

1.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登錄取消

2. 第14條(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第30條 (適用排除) ①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1.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에 관한 제한처분의 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대상으로 고시한 농약 또는 원제

②이 법에 의한 農藥 및 原劑에 대하여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3.31>

第31條 (權限의 위임·위탁) ①農村振興廳長은 이 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科學技術에 관한 業務를 관장하는 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또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農村振興廳長은 이 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聯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章 罰則

제31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2.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제11호, 동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3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자

②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11]

第3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1. 第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業 등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農藥의

品目이나 原劑의 製造·輸入·販賣를 業으로 한 者

2. 第8條第1項·第16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하지 아니한 農藥 또는 原劑를 製造 또는 輸入하거나 販賣한 者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자

2의3. 제1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품목을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한 자

2의4.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規定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수출입한 자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者

4.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보관·陳列 또는 販賣한 者

5.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收去 또는 폐기의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提出資料를 외부에 公開한 者

第3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虛偽廣告 또는 誇大廣告를 한 者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試料의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出荷한 製造業者·輸入業者와 허위의 自體檢査 成績書를 작성한 檢査責任者

第34條 (罰則) 製造業者, 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취급한 때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3.31>

1. 第13條第2項(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의 安全使用基準 또는 取扱制限基準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한 防除業者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등의 補完命令을 위반하거나 同項의 規定에 의한 農藥管理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삭제 <1999.3.31>

第36條 삭제 <1999.3.31>

第37條 삭제 <2002.12.11>

第38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1조의2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11>

第39條 (沒收)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을 받은 者가 소유·소지하는 農藥과 그 情을 알고 第3者가 취득한 農藥은 그 전부를 沒收한다. 다만, 그 農藥을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40條 (過怠料) ①第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輸出入植物防除業을 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防除業者외의 農藥使用者가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藥을 사용한 때에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2.1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본조신설 1999.3.31]

附則 <제5023호,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본칙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輸出入植物防除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植物防除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본칙 第3條第2項 但書 規定의 施行日에 이 法에 의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施行日로부터 6月 이내에 이 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人力·施設·裝備 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3條 (行政處分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행한 登錄, 登錄의 取消 기타 農林部長官의 행위 또는 각종 登錄申請 기타 農林部長官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農村振興廳長의 행위 또는 農村振興廳長에 대한 행위로 본다.<改正 1996·8·8>

第4條 (品目 등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農藥의 品目 및 原劑(輸入農藥의 品目 및 原劑를 제외한다)는 第8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며, 登錄된 農藥중 輸入農藥의 品目 및 原劑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보는 品目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品目の 告示日로부터 10年이 경과한 品目에 대한 최초의 品目登錄有效期間은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年으로 한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農藥管理基金의 廢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造

成된 農藥管理基金은 중전의 規定에 의한 基金管理者가 農藥의 安全使用·취급 및 관리에 관한 試驗·教育 및 弘報費用과 基金의 管理費用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基金管理者는 基金使用計劃을 수립하여 會計年度 개시 30日전까지 基金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6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農藥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6>省略

<57>農藥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第4條第2項 前段, 第5條第1項·第2項·第3項第6號·第5項, 第7條第1項·第3項·第4項, 第8條, 第9條, 第12條 本文, 第12條의2第4號, 第13條第1項 本文·第2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1項, 第20條의2, 第22條第6項·第8項, 第24條 및 法律 第4786號 農藥管理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6項중 "農林水産部"를 "農林部"로 한다.

第2條第1號, 第5條第1項,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第1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1條의2第2項 本文·第2號, 第13條第1項 本文, 第15條, 第17條第2項, 第19條第2項·第6項, 第20條第2項, 第21條 및 第22條第2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위 第57項의 改正事項은 農藥管理法이 1995년 12월 6일 法律 第5023號로 全文改正되기 이전의 舊法에 대한 事項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部處名稱變境에 따른 整理次元의 改正이기에 그 處理를 省略함.]

<58>法律 第5023號 農藥管理法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 第19條第2項, 第28條第4項, 附則 第3條 및 附則 第6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1號, 第3條第4項, 第5條第3項,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第2項 本文·第13號, 第10條第6號, 第13條第1項, 第16條第2項 但書, 同條同項第6號, 同條第3項第5號, 第17條第2項, 第20條, 第22條第2項, 第24條第2項·第6項, 第25條第2項, 第28條第1項·第2項 및 第30條第1項 但書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59>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945호,1999.3.31>

①(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輸出入植物防除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植物防除業을 登錄한 者는 第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63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로테르담협약의 효력이 국내에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등록, 등록의 취소,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農藥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4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農藥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줄이며, 親環境農業을 실천하는 農業人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추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1.26>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6.9.27>

1. "親環境農業"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農畜林産物(이하 "農産物"이라 한다)을 生産하는 農業을 말한다.

2. "親環境農産物"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生産된 農産物을 말한다.

3. "親環境農業技術"이라 함은 親環境農業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農法이나 理論 또는 資材의 生産方法등을 말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親環境農業에 관한 基本計劃과 정책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 등의 自發的 참여를 촉진하는 등 親環境農業을 振興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親環境農業에 관한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第4條 (農業人의 責務) 農業人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環境親和的인 農法을 실천하여 營農活動으로 인한 汚染을 줄임으로써 環境을 보전하고 親環境農産物을 生産하기 위한 農業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第5條 (民間團體의 役割) 親環境農業의 研究와 親環境農産物의 生産·流通·消費促進의 目的을 위하여 구성된 民間團體(이하 "民間團體"라 한다)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親環境農業 施策에 협조하고 그 會員들과 農業人 등에게 필요한 教育·訓練·技術開發·營農指導를 실시함으로써 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第2章 親環境農業 육성 및 지원 <개정 2001.1.26>

第6條 (親環境農業 育成計劃<개정 2001.1.26>) ①農林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每 5年마다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親環境農業育成計劃(이하 "育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삭제 <2002.12.30>

③育成計劃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1. 農業分野의 環境保全을 위한 政策目標 및 基本방향
2. 農業의 環境汚染 實態 및 改善對策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각종 技術開發 方案
5. 親環境農業示範團地 育成方案
6. 親環境農産物의 生産, 流通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方案
7. 農業의 公益的機能 增大方案
8.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國際協力 強化方案
9. 育成計劃의 추진에 소요되는 財源의 調達方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11. 기타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

④ 農林部長官은 育成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育成計劃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6>

⑤ 農林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育成計劃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7條 (親環境農業 實踐計劃<개정 2001.1.26>) ①市·道知事は 育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道 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 實踐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고,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市·道 實踐計劃에 따라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한 市·郡 實踐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第8條 (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개정 2001.1.26>) ①育成計劃 및 親環境農業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親環境農業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6>

②委員會의 委員長은 農林部次官으로 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2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1.1.26>

1. 育成計劃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親環境農業의 生産性 增大方案
4. 農業을 環境親和的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方案과 施策
5. 기타 親環境農業과 관련하여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⑤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農業으로 인한 環境汚染 방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藥, 肥料, 畜産糞尿, 廢營農資材등 農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해 農藥安全使用基準 및 殘留許容基準 준수, 肥料의 作物別 施肥基準量 준수, 畜産糞尿의 放流水 水質基準 준수 및 廢營

農資材 投棄 방지 등의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第23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5.17>

第10條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 農業用水, 大氣 등 農業資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農業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農耕地 개량, 農業用水 오염방지, 溫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施策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第16條,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6, 2001.3.28, 2006.9.27>

第11條 (農業資源 및 農業環境의 實態調査)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을 위해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週期的으로 調査하여야 한다.

1. 農耕地의 肥沃度, 重金屬, 農藥成分, 土壤微生物 등의 변동사항
2. 農業用水로 이용되는 地表水와 地下水에 대한 水質
3. 農藥·肥料 등 農業投入材의 사용실태
4. 農業의 水資源涵養, 土壤保全 등 公益的機能 實態
5. 기타 農業資源의 보전 및 農業環境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農林部長官은 農林部 所屬機關의 長 또는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에 規定한 사항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 (他人土地에의 出入)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環境의 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地域 또는 그 地域에 인접한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최소량의 調査試料를 採取하게 할 수 있다.

②土地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관리인은 正當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3條 (親環境農業技術의 開發 및 보급<개정 2001.1.26>)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親環境農業技術의 研究開發과 보급 및 指導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技術 및 資材를 研究開發·보급 또는 指導하는 者에게 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第14條 (親環境農業에 관한 教育訓練<개정 2001.1.26>)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하여 農業人 또는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教育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第15條 (親環境農業技術의 交流 및 홍보 등<개정 2001.1.26>) ①國家·地方自治團體·民間團體 및 農業人은 親環境農業技術을 상호 交流하여 親環境農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親環境農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優秀事例를 發掘·弘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第3章 親環境農産物의 流通管理<개정 2001.1.26>

第16條 (親環境農産物의 分類<개정 2001.1.26>) ①親環境農産物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 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 농산물로 分類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②親環境農産物의 生産을 위한 資材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6]

제17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하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외의 국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9.2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9.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인증업무의 범위 등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6]

제17조의3 (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선고를 포함한다)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각각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신청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포장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6]

제17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6]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1.26]

제17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7조의7 (승계) ①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인증기관(해당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본조신설 2001.1.26]

제18조 (표시변경의 명령 등) ①농림부장관은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9.27>

[전문개정 2001.1.26]

제18조의2 (인증의 취소)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6]

제18조의3 (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영농자재의 사용 및 인증품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점검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第19條 (親環境農産物 生産·流通支援<개정 2001.1.26>)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親環境農産物 生産者,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施設 設置資金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6.9.27>

②親環境農産物 生産·流通에 대한 지원은 親環境農業에 대한 寄與度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제20조 (우선구매)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9.27]

第4章 國際協力등

第21條 (國際協力) 政府는 環境關聯 國際機構 및 關聯國家와의 國際協力を 통하여 親環境農業關聯 情報 및 技術을 교환하고, 人力交流·共同調査·研究開發등에 상호 協力하며, 環境危害 農業活動 및 資材의 交易抑制등 親環境農業의 발전을 위한 國際的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第22條 (國內 親環境農業 기준 및 目標 수립<개정 2001.1.26>) 政府는 國際與件, 國內資源, 環境 및 經濟與件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國內 親環境農業基準 및 目標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22조의2 (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2의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第2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市·道知事 또는 農林部 所屬機關의 長에 위임하거나 民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제24조 (청문 등) ①농림부장관은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9.27>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9.27>

[전문개정 2001.1.26]

제24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6]

第5章 罰則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전문개정 2001.1.26]

제2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3. 제17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1.1.26]

第2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26>

第27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442호,1997.12.13>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 品質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를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削除한다.

第14條第1項 本文중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 및 有機農産物"을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으로 한다.

第18條第1項第3號를 削除한다.

부칙 <제6378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경농산물표시를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환경농산물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제27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7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農水産物"을 "農産物(親環境農業育成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토양환경보전법)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4條"를 "土壤環境保全法 제4조의2"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친환경농업육성법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親環境農業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水質環境保全法 第47條"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2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96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신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의5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8조의2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 5년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農産物(「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輸出入植物과 國內植物을 檢疫하고 植物에 해를 끼치는 動·植物의 防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農·林業生産의 安全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6.8.8, 1999.2.5, 2002.5.13>

1. "植物"이라 함은 種子植物·羊齒植物·이끼植物·버섯류와 그 種子·果實 및 加工品(植物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加工한 것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第3號의 有害植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有害動物"이라 함은 곤충·응애·선충·달팽이 그 밖에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3. "有害植物"이라 함은 眞菌·粘菌·細菌·바이러스 등의 植物性病原體와 寄生植物 및 雜草(그 種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植物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4. "規制病害蟲"이라 함은 有害動物 및 有害植物(이하 "病害蟲"이라 한다)중 消毒·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植物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目的의 病害蟲을 말한다.

가. 潜在的으로 經濟的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重要性이 있고, 國內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國內의 일부 地域에 분포되어 있지만 發生豫察事業 기타 防除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病害蟲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이하 "檢疫病害蟲"이라 한다)

나. 栽植用植物에 대하여 經濟的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國內에서 規制되는 非檢疫病害蟲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이하 "規制非檢疫病害蟲"이라 한다)

5. "暫定規制病害蟲"이라 함은 輸入植物檢査過程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을 실시중인 病害蟲으로서 規制病害蟲에 준하여 暫定的으로 消毒·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病害蟲을 말한다.

6. "非檢疫病害蟲"이라 함은 規制病害蟲 및 暫定規制病害蟲을 제외한 病害蟲으로서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植物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第3條 (植物防疫公務員) ①이 법의 檢疫 또는 防除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植物防疫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地方公務員인 植物防疫官을 둘 수 있다.<改正 1996.8.8, 2006.9.27>

②第1項의 植物防疫官의 資格·選拔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第4條 (植物防疫官의 權限) ①植物防疫官은 規制病害蟲·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禁止品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②植物防疫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規制病害蟲, 暫定規制病害蟲 또는 제20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防除對象病害蟲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禁止品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植物등·土地·貯藏所·倉庫·事業場·船舶·車輛이나 항공기 등을 所有한 者 또는 所有者로부터 處分權限을 위임받은 代理人(이하 "代理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毒·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6.8.8, 1999.2.5, 2002.5.13>

③植物防疫官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檢査에 필요한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최소량의 試料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第5條 (證票의 제시) 植物防疫官이 이 法에 의하여 職務를 수행할 때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章 輸出入植物檢疫

第6條 (輸入制限) ①植物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輸出國의 政府機關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檢査結果 規制病害蟲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檢査證明書 또는 그 寫本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植物등을 植物檢疫에 관한 政府機關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1999.2.5, 2002.5.13>

②植物등과 제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禁止品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檢疫場"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02.5.13, 2004.1.29>

③삭제 <2002.5.13>

④農林部長官은 外國의 特定地域에서 規制病害蟲이 발생하여 國內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病害蟲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에서 生産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地域을 경유한 植物등의 輸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2.5>

⑤農林部長官은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구한 檢査 또는 消毒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國家의 植物의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9.2.5>

第7條 (輸入禁止)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 등(이하 "禁止品"이라 한다)은 輸入하지 못한다. <개정 1996.8.8, 1999.2.5, 2002.5.13>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國內에 유입될 경우 國內植物에 被害가 크다고 인정되는 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地域에 生育하고 있는 植物과 당해 地域을 경유한 植物. 이 경우 對象病害蟲·對象地域 및 對象植物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2. 病害蟲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 등의 容器·포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禁止品을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病害蟲을 死滅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病害蟲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病害蟲危險分析結果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病害蟲의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禁止品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4.1.29>

第8條 (病害蟲危險分析) ①農林部長官은 外國으로부터 病害蟲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農作物·自然環境 등에 미칠 수 있는 經濟的 損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 정도를 評價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病害蟲危險에 관한 分析·評價(이하 "病害蟲危險分析"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2002.5.13>

②病害蟲危險分析의 方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령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第9條 (輸入植物등의 檢査) ①植物등이나 제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禁止品을 輸入하는 者는 지체없이 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申告하고 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의 위반여부, 禁止品인지 여부 또는 規制病害蟲의 유무에 대하여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경우와 郵便物로 輸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1999.2.5, 2002.5.13>

②삭제 <2004.1.29>

③植物防疫官은 輸入되는 植物등이나 禁止品에 規制病害蟲이 있다고 의심이 가며 그 規制病害蟲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植物등이나 禁止品에 대하여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通關에 앞서 檢査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5.13>

④通關節次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郵便局長은 植物등 또는 禁止品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郵便物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植物防疫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郵便局長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郵便物을 檢査하여야 한다. 이 경우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郵便局公務員의 참여하여 그 郵便物을 열어 볼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植物등 또는 禁止品이 담겨져 있는 郵便物을 받은 者는 그 郵便物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에게 申告하고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⑦植物防疫官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種子에 대한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規制病害蟲의 유무를 判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種子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게 隔離栽培를 명하여 그 栽培地에서 檢査하거나 당해 種子의 일부를 國立植物檢疫機關에서 隔離栽培하여 檢査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2.5, 2002.5.13>

⑧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規定에 의한 隔離栽培의 檢査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3>

제9조의2 (검사장소의 지정 등) ①제9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檢査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사장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檢査에 필요한 시설 등 農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림부령으로 정한다.

④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農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관세법 제169조의 規定에 의한 지정장치장 및 동법 제173조의 規定에 의한 세관검사장은 檢査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9]

제9조의3 (검사장소의 지정취소 등) ①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2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장소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9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장소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식물등의 수입량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檢査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때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檢査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檢査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6.9.27>

[본조신설 2004.1.29]

제10조 (소독·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所有者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農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檢査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②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③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④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⑥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1.29>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5.13]

第11條 (輸出植物등의 檢査) ①植物등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植物등이 輸入國의 要求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植物防疫官의 檢査를 받아야 하며, 그 檢査를 받은 결과 合格한 것이 아니면 輸出하지 못한다. 다만, 郵便物로 輸出하거나 輸入國이 檢査合格證明書を 要求하지 아니하는 植物등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植物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國의 要求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이를 告示한다.<改正 19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이 있는 場所에서 실시한다. 다만,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가 檢査對象植物등의 栽培地 등에서 檢査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植物防疫官이 당해 場所가 檢査場所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栽培地 등에서 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④植物防疫官은 輸入國의 要求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植物등에 대하여 再檢査를 할 수 있다.

第12條 (檢査의 方法 등) 第9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方法, 檢査結果 행하는 行政處分의 기준, 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第13條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개정 1999.2.5, 2002.5.13>)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植物防疫官을 輸出國에 출장하게 하여 輸入할 植物등에 대한 檢査(이하 "現地檢査"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2.5, 2002.5.13>

1. 輸出國이 당해 國家의 植物등을 輸出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植物防疫官이 당해 國家에서 輸出전에 檢査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植物을 輸入하는 경우

3. 기타 規制病害蟲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地檢査에 필요한 檢査의 方法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方法 등을 準用하여 農林部長官이 決定·告示한다. <개정 1996.8.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現地檢査結果가 표시된 檢査合格證明書가 첨부된 植物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또는 제7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④農林部長官은 規制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國家에서 輸入되는 植物에 대하여는 栽培地에서 檢査 또는 消毒措置를 하도록 輸出國에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要求對象國家 및 對象植物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신설 1999.2.5>

제3장 국내지역경유 외국식물등의 검역 <신설 2004.1.29>

제13조의2 (국내지역경유의 승인) ①국내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

은 검역장간에 한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국내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경유출발지인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적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결과 신청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3 (국내지역 경유기간)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경유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4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 ①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해·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 발생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5 (안전조치문제의 조사 및 방제)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를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역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6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7 (경유물품의 도착신고) ①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8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방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13조의9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①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식물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식물방역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第4章 國內植物檢疫 및 防除<개정 1999.2.5>

第14條 (國內檢疫) 農林部長官은 처음으로 國內에 流入되었거나 이미 國內의 일부 地域에

발생되어 있는 病害蟲이 퍼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植物에 대하여 檢疫을 실시하고, 당해 植物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게 消毒·폐기 등을 명하거나 移動制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疫의 對象植物·對象地域 및 방법 등을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1996.8.8, 1999.2.5>

第15條 삭제 <1999.2.5>

第16條 삭제 <1999.2.5>

第17條 삭제 <1999.2.5>

第18條 삭제 <1999.2.5>

第19條 (防除) ①農林部長官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처음으로 國內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國內의 一部地域에 침입되어 있는 病害蟲이 퍼져서 農·林産物에 중대한 被害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病害蟲으로 인하여 農·林産物의 輸出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病害蟲을 없애거나 病害蟲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防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山林의 病害蟲防除 등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防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改正 1996.8.8>

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때에는 防除實施 14日전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1. 防除를 실시할 地域 및 일시
2. 防除對象病害蟲의 종류
3. 防除의 내용
4. 기타 防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第20條 (防除計劃) ①農林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防除計劃의 수립 및 防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指針(이하 "防除基本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에게 示達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②市·道知事は 農林部長官으로부터 防除基本指針을 示達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地域에 적합한 防除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基本指針 및 防除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防除基本指針
 - 가. 防除의 基本方向
 - 나. 防除對象病害蟲의 종류
 - 다. 防除의 추진요령 및 防除豫算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防除計劃의 수립 및 防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防除計劃
 - 가. 地域特性에 맞는 防除의 基本방향
 - 나. 防除對象地域 및 일시

다. 防除對象病害蟲의 종류

라. 구체적인 防除의 내용 기타 防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市·道公報에 告示하여야 하며, 農林部長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防除計劃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改正 1996.8.8>

第21條 (病害蟲發生의 豫察)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市·道知事は 病害蟲중 그 분포가 局地的이 아니고 급격히 널리 퍼짐으로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被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病害蟲에 대하여는 당해 病害蟲의 繁殖, 氣象 및 농·임산물의 生育에 관한 狀況을 조사하여 그 情報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5.13>

第22條 (報告義務)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は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2002.5.13>

第23條 (共同防除) 市·道知事は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市·郡·自治區,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農業人등"이라 한다) 또는 農藥管理法에 의한 防除業者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안에서 共同防除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1996.8.8, 1999.2.5, 2002.5.13>

第24條 (防除命令의 내용)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명령을 할 수 있다.<改正 1996.8.8>

1.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植物을 栽培하는 者에 대한 당해 植物의 栽培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 대한 당해 植物등의 讓渡·移動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植物등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 대한 당해 植物등의 消毒·폐기 등 조치명령

4. 防除對象病害蟲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農機具·運搬用具 등의 物品이나 倉庫등 施設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에 대한 당해 物品 또는 施設의 消毒 등의 조치명령

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고 植物防疫官으로 하여금 第1項 第3號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8.8>

第25條 삭제 <1999.2.5>

第26條 (費用負擔) 市·道知事が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除를 실시한 경우 그 費用은 補助金の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基準補助率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市·道知事は

防除의 실시로 인하여 受益者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일부를 受益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改正 1996.8.8, 1999.2.5>

第27條 (損失補償) ①國家와 市·道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情狀에 따라 損失을 補償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補償받을 물건 등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에 대한 신청은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③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2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 및 節次에 의하여 補償與否 등을 決定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第28條 (藥劑의 비치 및 讓與 등) ①農林部長官은 防除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藥劑를 비치하거나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그 藥劑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防除計劃에 의하여 防除를 실시할 地方自治團體나 農業人등 또는 農藥管理法에 의한 防除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한 藥劑를 讓與하거나 防除에 필요한 藥劑購入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改正 1996.8.8>

第5章 補則

第29條 (異議申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日 이내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書面으로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에 대한 신청은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관할市·道知事를 경유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者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不合格이 된 者
3. 삭제 <1999.2.5>
4. 삭제 <1999.2.5>
5. 第2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與否 등의 決定을 받은 者

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期日과 場所를 통지하여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6.8.8>

③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日 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6.8.8>

제30조 (명예식물검역감시원) ①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30조의2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등을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제30조의3 (청문)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장소의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第31條 (權限의 위임) ①農林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1996.8.8>

②市·道知事는 이 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6章 罰則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12.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한 자
 - 14.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의 명령을 위반한 자
 - 15. 제1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전문개정 2002.5.13]

第33條 (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2.5, 2002.5.13, 2004.1.29>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試料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者(휴대하여 식물등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
-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合格을 받지 아니하고 輸出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檢査合格을 받아 輸出한 者
- 5.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3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5條 (過怠料)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2.5, 2002.5.13, 2004.1.29>

- 1. 휴대하여 輸入하는 식물등에 대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은 者
- 2. 第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의 隔離栽培命令에 위반한 者
-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命令에 위반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4.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 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021호,1995.12.6>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檢査節次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國으로부터 발송된 植物등의 제한, 檢査節次 등에 관하여는 第6條第4項 및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2>省略

<63>法律 第5021號 植物防疫法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4項, 第7條 本文, 第8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13條第1項 本文·第3號, 同條第2項, 第14條, 第15條第1項·第3項·第5項, 第19條第1項 本文, 同條第2項 本文, 第20條第1項·第2項·第4項 前段, 第22條, 第23條 但書, 第24條 내지 第26條, 第27條第2項·第3項, 第28條 내지 第30條, 第31條第1項 및 第35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農林水産部"를 "農林部"로 한다.

第2條第1號·第4號, 第3條第2項, 第4條第2項,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號 後段, 第8條第2項, 第9條第1項 本文, 同條第2項·第7項, 第10條第1項·第3項 但書, 同條第4項 本文,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 第15條第5項, 第16條 但書, 第17條, 第27條第2項 前段·第3項 및 第29條第1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64>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農業·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植物防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業人 및 農·林産物의 生産者團體"를 "農業·農村基本法 第3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體 및 生産者團體"로 한다.

⑤내지 <19>省略

第11條 省略

附則 <제5764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6條第5項 및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發送된 植物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96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36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4호,2006.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법률 제8589호], 시행일 2008.8.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원"이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4. "농업유전자원"이란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야생종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 나. 재래종 :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종
 - 다. 육성·사육종 :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 라. 도입종 :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사육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5.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사육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조사·등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외국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유전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유전자원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분석·평가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외반출승인 등) 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및 이용 촉진)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등

제15조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①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기관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유전자원의 증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 (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농업유전자원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21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제2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제2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589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농 산 물 유통



여 백

農水産物流通公社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35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農産物·林産物·畜産物 및 水産物(이하 "農水産物"이라 한다)의 價格安定 및 流通改善事業을 통하여 農水産物 需給의 安定을 기함으로써 農漁民의 所得增進과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①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社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 支社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4條 (資本金) 公社의 資本金은 2천억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개정 2004.1.29>

第5條 (登記) ①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支社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三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6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農水産物流通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7條 (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 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第8條 (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行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9條 (秘密漏泄 금지 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 (事業) ①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4.1.29>

1. 農水産物 流通産業(農水産物의 貯藏·처리·加工·販賣 및 流通改善에 관한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建設 및 운영

2. 農水産物 流通産業에 대한 投資와 資金의 貸與 및 그 알선

3. 農水産物 流通産業에 관한 技術指導와 外國技術의 導入 및 그 알선

4. 農水産物 流通産業에 관한 經營指導
 5. 農水産物과 그 加工製品의 市場開拓과 輸出入 및 그 알선
 6. 農水産物 및 그 加工製品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事業
 7. 農水産物 流通産業에 관한 調査·研究 및 教育
 8. 삭제 <2004.1.29>
 9.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위한 農水産物의 收買·備蓄 및 販賣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11. 기타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 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 流通産業의 종류·범위와 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종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損益金の 처리) ①公社は 每 事業年度の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9>

1. 移越損失金の 補填
2.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의 利益金の 10分の 2 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國庫에의 納入

②公사는 매 사업연도의 決算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04.1.29>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第12條 (社債의 발행등) ①公社は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社債의 發行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2倍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政府는 公社가 발행하는 社債의 元利金の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第13條 (借入金) 公社は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事業에 필요한 資金을 借入(借款 및 政府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第14條 (補助金) 政府는 公社의 事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を 교부할 수 있다.

第15條 (監督) 農林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개정 1997.12.13>

第16條 (罰則)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7條 (過怠料) ①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7.12.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7.12.13>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公社의 組織 및 經營등에 관한 사항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다.

附則 <제3887호,19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農漁村開發公社"는 이 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로 본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제7135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의 이익을 보호하고 國民生活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1.3>

1.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林産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特別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の 전부 또는 일부를 都賣하게 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이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管轄區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3.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特別시·광역시 또는 特別자치도가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중 당해管轄區域 및 그 隣接地域의 都賣의 中心이 되는 農水産物都賣市場으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地方都賣市場"이라 함은 中央都賣市場외의 農水産物都賣市場을 말한다.

5.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特別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開設·운영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6.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共販場을 開設할 수 있는 者외의 者(이하 "民間人등"이라 한다)가 農水産物을 都賣하기 위하여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特別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

7. "都賣市場法人"이라 함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지정을 받고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上場하여 都賣하거나 이를 買受하여 都賣하는 法人(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公共出資 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市場都賣人"이라 함은 第3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지정을 받고 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을 하는 法人을 말한다.

9. "仲都賣人"이라 함은 第25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의 許可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各目的의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가.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産物을

買受하여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

나.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은 非上場農水産物을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하는 營業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産地流通人"이라 함은 第29條·第44條·第46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錄하고, 農水産物을 蒐集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에 出荷하는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12.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라 함은 農水産物의 出荷經路를 多元化하고 物流費用을 節減하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蒐集·포장·加工·보관·輸送·販賣 및 그 情報處理 등 農水産物의 物流活動에 필요한 施設과 이와 관련된 業務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

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이 法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農水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民營都賣市場"이라 한다)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이하 "綜合流通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第2章 農水産物의 生産調整 및 出荷調節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第5條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개정 2004.12.31>)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價格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氣象情報·生産面積·作況·在庫物量·消費動向·海外市場情報 등을 調査하여 이를 分析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農業觀測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 (契約生産)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주요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와 生産者간에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契約 또는 出荷契約을 체결하는 生産者團體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契約金の 貸出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7條 (自助金の 積立支援)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生産者團體가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造成·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補助金を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助金の 造成方法, 보조대상이 되는 農水産物과 補助金の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價格豫示)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

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시기이전에 生産者의 보호를 위한 下限價格(이하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豫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豫想經營費, 地域別 豫想生産量 및 豫想需給狀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價格을 豫示한 경우에는 豫示價格을 支持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의 獎勵,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 등을 連繫하여 적절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第9條 (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菜蔬類 등 貯藏性 이 없는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生産者 또는 生産者 團體로부터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農水産物을 收買할 수 있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이를 收買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買한 農水産物은 이를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 社會福祉團體에 寄贈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에 관한 業務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산림조합중앙회·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農水産物流通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10條 (流通協約 및 流通調節命令) ①주요 農水産物의 生産者, 産地流通人, 貯藏業者, 都·小賣業者 및 消費者 등(이하 "生産者등"이라 한다)의 代表는 당해 農水産物의 自律的인 需

給調節과 品質向上을 위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위한 協約(이하 "流通協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腐敗·變質되기 쉬운 農水産物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農水産物에 대하여 現저한 需給不安定을 解消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地域의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에 대하여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하도록 하는 流通調節命令(이하 "流通命令"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③流通命令에는 流通命令을 발하는 이유, 對象品目, 對象者, 流通調節方法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가 流通命令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要請書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流通專門家の 意見收斂節次를 거치고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代表나 당해 生産者團體의 在籍會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第11條 (流通命令의 執行)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命令이 이행될 수 있도록 流通命令의 내용에 관한 弘報, 流通命令 違反者에 대한 制裁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組織 또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 (流通命令 履行者에 대한 지원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協約 또는 流通命令을 이행한 生産者등이 당해 流通協約이나 流通命令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損失에 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補填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는 生産者등의 組織이나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規定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第13條 (備蓄事業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農水産物(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農水産物을 備蓄하거나 農水産物의 出荷를 약정하는 生産者에게 그 代金の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出荷를 調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産物은 生産者 및 生産者團體로부터 收買하여야 한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收買

하거나 輸入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 農水産物을 輸入함에 있어서 國際價格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農林水協中央會 또는 農水産物流通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産物의 收買·輸入·관리 및 販賣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등 사업의 損失處理)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의 施行에 따라 생기는 減耗, 價格下落, 販賣·輸出·寄贈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原價損失 및 輸送·포장·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管理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費用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4.12.31>

第15條 (農産物의 輸入推薦 등) ①世界貿易機構設立을위한나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輸入하는 農産物중 다른 法律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사용용도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對象農産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の 農産物을 第1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農産物로 輸入하거나 生産者團體를 지정하여 輸入하여 販賣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 (輸入利益金の 徵收 등) ①農林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の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간의 差額의 범위 안에서 輸入利益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を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3章 農水産物都賣市場

第17條 (都賣市場의 開設 등) ①都賣市場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또는 2 이상의 部類를 綜合하여 中央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開設하고, 地方都賣市場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開設한다. <개정

2007.1.3>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中央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市가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權者(이하 "開設許可權者"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⑤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開設許可權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의 業務規程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⑥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개월 전에 開設許可權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地方都賣市場을 閉鎖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⑦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運營管理計劃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開設區域)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은 都賣市場이 開設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당해 地域에 있어서의 農水産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에 인접한 일정 區域을 그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으로 編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19條 (許可基準) ①開設許可權者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 <개정 2007.1.3>

1. 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場所가 農水産物去來의 中心地로서 적절한 位置에 있을 것
2.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삭제 <2007.1.3>
4. 運營管理計劃書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實現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開設許可權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요구되는 施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開設許可를 할 수 있다.

第20條 (開設者의 義務) 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關係者의 便益과 消費者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都賣市場施設의 整備·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競爭促進과 공정한 去來秩序의 확립 및 環境改善
3. 商品性向上을 위한 規格化, 포장개선 및 鮮度維持의 촉진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 각號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投資計劃 및 去來制度改善方案 등을 포함한 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1條 (都賣市場의 관리) 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所屬公務員으로 구성된 都賣市場管理事務所(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管理事務所 또는 市場管理者로 하여금 施設物管理, 去來秩序維持, 流通從事者의 指導·監督 등에 관한 業務範圍를 정하여 당해 都賣市場 또는 그 開設區域안의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22條 (都賣市場의 운영)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 그 施設規模·去來額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都賣市場에는 部類마다 都賣市場法人을 두어야 한다.

第23條 (都賣市場法人의 지정)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해당 部類의 都賣業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知識과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業務에 2年이상 종사한 經驗이 있는 業務執行擔當任員이 2人이상 있을 것

2.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3.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

4. 任員중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指定取消處分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④都賣市場法人이 지정후 第3項第1號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月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⑤都賣市場法人은 그 任員이 第3項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⑥都賣市場法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24條 (公共出資法人) 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에 같음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할 法人(이하 "公共出資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公共出資法人에 대한 出資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의한 出資額의 合計가 總出資額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地方自治團體
2. 管理公社
3. 農林水協等
4. 당해 都賣市場 또는 당해 都賣市場으로 移轉되는 市場에서 農水産物을 去來하는 商人과 그 商人團體
5. 都賣市場法人
6.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管理·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③公共出資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개정 2007.1.3>

④公共出資法人은 「상법」 第3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한 날에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第25條 (仲都賣業의 許可) ①仲都賣人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部類別로 당해 都賣市場의 開設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仲都賣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

1.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3. 第8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都賣市場法人의 株主 및 任·職員으로서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仲都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任員이 있는 法人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法人인 仲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④仲都賣人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去來參加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農水産物의 競賣 또는 入札에 不參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⑤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許可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26條 (仲都賣人의 業務範圍 등의 特例)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仲都賣人은 都賣市場안에 설치된 共販場(이하 "都賣市場共販場"이라 한다)에서도 그 業務를 행할 수 있다.

第27條 (競賣士의 任免)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去來를 위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競賣士를 두어야 한다.

②競賣士는 競賣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또는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당해 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 仲都賣人, 産地流通人 또는 그 任·職員

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2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 ①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28條 (競賣士의 業務 등) ①競賣士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에 대한 競賣優先順位의 결정
2.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價格評價
3.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競落者의 결정

②競賣士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7.1.3>

第29條 (産地流通人の 登録) ①農水産物을 蒐集하여 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部類別로 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生産者團體가 구성원의 生産物을 出荷하는 경우
2. 都賣市場法人이 第3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農水産物을 上場하는 경우
3. 仲都賣人이 第31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非上場農水産物을 賣買하는 경우
4. 市場都賣人이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賣買하는 경우
5. 기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都賣市場法人, 仲都賣人 및 이들의 株主 또는 任·職員은 당해 都賣市場에서 産地流通人の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産地流通人은 登録된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의 出荷業務외의 販賣·買受 또는 仲介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을 하여야 하는 者가 登録을 하지 아니하고 産地流通人の 業務를 행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에의 出入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⑥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地流通人の 公정한 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0條 (出荷者登録) 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農水産物의 去來秩序의 확립과 需給安定을 위하여 당해 都賣市場에 農水産物을 出荷하는 生産者 및 生産者團體 등을 登録하게 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의 開設者 또는 都賣市場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한 出荷者가 出荷豫約을 하고 農水産物을 出荷하는 경우에는 委託手数料의 引下, 競賣의 우선 실시 등 優待措置를 할 수 있다.

제30조 (출하자 신고) ①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第31條 (受託販賣의 원칙) ①都賣市場에서 都賣市場法人이 행하는 都賣는 出荷者로부터 委託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買受하여 都賣할 수 있다.

②仲都賣人은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한 農水産物의 農水産物의 去來를 할 수 없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이 上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農水産物 기타 이에 준하는 農水産物로서 그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者로부터 許可를 받은 農水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35條第1項, 第38條, 第39條, 제40조제2항·제4항, 第41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제외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81條의 規定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의 去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1.3>

第32條 (賣買方法)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을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으로 賣買한다. 다만, 다른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價格이 결정되어 바로 入荷된 農水産物을 上場하여 賣買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定價 또는 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

第33條 (競賣 또는 入札方法)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 上場한 農水産物을 受託된 順位에 따라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으로 最高價格 提示者에게 販賣하여야 한다. 다만, 出荷者가 書面으로 제출하는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去來成立最低價格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價格 미만으로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효율적인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量入荷品·標準規格品·豫約出荷品 등을 우선적으로 販賣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은 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舉手手指式·記錄式·書面入札式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公開競賣의 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品目別·都賣市場別로 競賣方式을 제한할 수 있다.

④삭제 <2007.1.3>

第34條 (去來의 特例)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入荷量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去來가 어려운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외의 者에게, 市場都賣人의 경우에는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販賣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第35條 (都賣市場法人의 營業制限)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의 販賣業務를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④都賣市場法人은 農水産物の 販賣業務외의 사업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農水産物の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貯藏·輸出入 등의 사업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兼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경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36條 (市場都賣人の 지정) ①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部類別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場都賣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2. 任員중 당해 都賣市場안에서 市場都賣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하는 者가 없을 것

3.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

4. 任員중 第8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場都賣人의 指定取消處分의 원인이 되는 사상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③市場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④市場都賣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第37條 (市場都賣人の 營業) ①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を 買受 또는 委託받아 都賣하거나 賣買를 仲介할 수 있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を 委託받아 都賣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市場都賣人은 당해 都賣市場의 都賣市場法人·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を 販賣하지 못한다.

第38條 (受託의 거부금지 등)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入荷된 農水産物の 受託 또는 委託받은 農水産物の 販賣를 거부·기피하거나 去來關係人에게 부당한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 (受託의 거부금지 등)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入荷된 農水産物の 受託 또는 委託받은 農水産物の 販賣를 거부·기피하거나 去來關係人에게 부당한 差別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8조의2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39條 (賣買農水産物の 引受 등) ①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부터 農水産物을 買受한 者는 賣買가 성립한 즉시 그 農水産物을 引受하여야 한다.

②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買受한 農水産物の 引受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의 부담으로 그 農水産物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賣買를 解除하여 다시 賣買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 差損金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買受人이 이를 부담한다.

第40條 (荷役業務) 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의 효율화를 위하여 荷役體制의 개선 및 荷役機械化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荷役費의 節減으로 出荷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都賣市場의 開設者가 業務規程으로 정하는 規格出荷品에 대한 標準荷役費(都賣市場 안에서 規格出荷品을 販賣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荷役費를 말한다)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이를 부담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

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都賣市場안에서의 荷役業務에 대하여 荷役專門業體 등과 用役契約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41條 (出荷者에 대한 代金決濟) ①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은 委託받은 農水産物이 賣買된 때에는 그 代金の 전부를 出荷者에게 즉시 決濟하여야 한다. 다만, 代金の 지급방법에 관하여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と 出荷者사이에 特約이 있는 때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金決濟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出荷者에게 발급하여 出荷者가 이를 별도의 精算窓口に 제시하고 代金を 受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都賣市場法人의 경우에는 出荷者에게 代金を 직접 決濟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代金決濟의 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第42條 (手数料 등의 徵收制限) ①都賣市場의 開設者,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錢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1.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부터 都賣市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費用으로서 徵收하는 都賣市場의 使用料

2.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收하는 施設使用料

3.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이 農水産物の 販賣를 委託한 出荷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委託手数料

4. 市場都賣人 또는 仲都賣人이 農水産物の 賣買를 仲介한 경우에 이를 賣買한 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一定率에 해당하는 仲介手数料

5.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쓰레기發生抑制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品目 중 非規格出荷物量에 대하여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荷者·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賣買參加人으로부터 徵收하는 쓰레기誘發負擔金

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및 手数料의 料率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은 農水産物の 規格出荷促進, 쓰레기減量化 및 荷役機械化 등을 위한 사업의 財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4章 農水産物共販場 및 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등

第43條 (共販場의 開設) ①생산자단체와 公益法人이 共販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②第1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4條 (共販場의 去來關係者) ①共販場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들 수 있다.

②共販場의 仲都賣人은 共販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農水産物을 蒐集하여 共販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共販場의 開設者에게 産地流通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地流通人의 登錄 등에 관하여는 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共販場의 競賣士는 共販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第45條 (共販場의 운영 등) 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제39조·제40조, 第41條第1項 및 第4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共販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이를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共販場의 경우에는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46條 (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등에 관한 特例) ①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②都賣市場共販場의 仲都賣人에 관하여는 第25條, 第31條第2項·第3項, 第42條 및 第7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都賣市場共販場의 産地流通人에 관하여는 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都賣市場共販場의 競賣士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⑤都賣市場共販場의 運營主體에 관하여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水協등의 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이를 運營하게 할 수 있다.

第47條 (民營都賣市場의 開設) ①民間人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地域에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②民間人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農

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營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7條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 및 運營管理計劃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民營都賣市場의 운영 등) ①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市場都賣人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民營都賣市場의 仲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第2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農水産物을 蒐集하여 民營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게 産地流通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地流通人의 登錄 등에 관하여는 第29條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民營都賣市場의 競賣士는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業務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⑤民營都賣市場의 市場都賣人은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市場都賣人의 지정 및 營業 등에 관하여는 第36條第2項 내지 第4項,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⑥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가 仲都賣人·賣買參加人·産地流通人 및 競賣士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31條 내지 第34條,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民營都賣市場의 규모·去來物量 등에 비추어 당해 規定을 準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民營都賣市場의 경우에는 그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49條 (産地販賣制度의 확립) ①農林水協동 또는 公益法人은 生産地에서 出荷되는 主要品目の 農水産物에 대하여 産地競賣制를 실시하거나 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生産者保護를 위한 販賣對策 및 選別·포장·貯藏施設의 확충 등 産地流通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農林水協동 또는 公益法人은 第33條의 競賣 또는 入札方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圃田)경매 또는 선상(船上)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50條 (農水産物集荷場의 設置·운영) ①생산자단체 또는 公익법인은 農水産物을 大量消費地에 직접 出荷할 수 있는 流通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水産物集荷場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集荷場의 효과적인 운영과 生産者의 出荷便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立地選定과 道路網의 開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단체 또는 公익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農水産物集荷場중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販場의 施設基準을 갖춘 集荷場을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共販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第51條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의 設置·운영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の 選別·포장·規格出荷·加工·販賣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産地流通센터를 設置하여 运营하거나 이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第52條 (農水産物流通施設의 편의제공)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置한 農水産物流通施設에 대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農林水協中央會나 公益法人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施設利用·面積配定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53條 (圃田賣買의 契約) ①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の 圃田賣買의 契約은 特約이 없는 한 買受人이 당해 農産物을 契約書에 기재된 搬出約定日부터 10日이내에 搬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解除된 것으로 본다. 다만, 買受人이 搬出約定日이 경과되기 전에 搬出遲延事由와 搬出豫定日을 書面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는 圃田賣買에 있어서 標準契約書의 樣式을 정하여 이를 契約書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勸奨할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 및 消費者의 보호나 農産物の 價格과 需給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品目·地域과 申告期間 등을 정하여 契約當事者에게 圃田賣買契約의 내용을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

第5章 農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04.12.31>

第54條 (基金의 設置) 政府는 農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고 流通構造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4.12.31>

第55條 (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각 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7.1.3>

1. 政府의 出捐金
2. 基金運用收益金
3. 제9조의2제3항·제16조제2항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出捐金

②農林部長官은 基金의 运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第56條 (基金의 운용·관리) ①基金은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운용·관리한다.

②삭제 <2004.12.31>

③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農水産物流通公社長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④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 (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1. 농산물의 價格調節과 生産·出荷의 獎勵 또는 調節
2. 농산물의 輸出促進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加工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商品性 제고
6. 기타 農林部長官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중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基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支出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1. 第7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중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3. 基金이 관리하는 流通施設의 設置·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농산물의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과 種子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融資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로 하고, 貸出을 받을 수 있는 者는 農林部長官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施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者로 한다. <개정 2004.12.31>

④基金을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는 融資 또는 貸出을 할 때에 지정한 目的의의 目的에 그 融資金 또는 貸出金을 사용할 수 없다.

第58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

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任命한 때에는 監査院·財政經濟部長官 및 韓國銀行總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삭제 <2002.12.30>

第59條 (基金의 損費處理)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이 생긴 때에는 이를 基金에서 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第9條, 第13條 및 「중자산업법」 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缺損金

2. 借入金의 利子 및 基金運用상 필요한 經費

第60條 (基金의 運用計劃) ①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第1項의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사항

2. 融資 또는 貸出의 目的, 對象者, 金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基金運用상 필요한 사항

③第2項第2號의 融資期間은 1年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資金의 融資等 資金의 使用目的상 1年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國채·公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7.1.3]

第61條 (決算報告)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다음 年度 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章 農水産物流通機構의 整備 등

第62條 (整備基本方針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流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農水産物流通機構 整備基本方針(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告示할 수 있다.

1. 第6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거나 去來物量에 비하여 施設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施設整備에 관한 사항

2.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施設의 改替 및 移轉에 관한 사항

3. 仲都賣人 및 競賣士의 價格造作 방지에 관한 사항

4. 生産者와 消費者保護를 위한 流通機構의 奉仕競爭體制의 확립과 流通經路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運營實績이 不振하거나 休業중인 都賣市場의 整備 및 都賣市場法人이나 市場都賣人의 交替에 관한 사항

6. 小賣商의 施設改善에 관한 사항

第63條 (地域別 整備計劃) ①市·道知事は 基本方針이 告示된 때에는 그 基本方針에 따라 地域別 整備計劃을 수립하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整備計劃의 내용이 基本方針에 不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实效性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修正 또는 補完하여 승인할 수 있다.

第64條 (類似都賣市場의 整備) ①市·道知事は 農水産物의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水産物類似都賣市場의 整備를 위하여 類似都賣市場區域을 지정하고,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의 去來方法改善·施設改善·移轉對策 등에 관한 整備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 따라 類似都賣市場區域안에 都賣市場을 開設하고, 그 區域안의 農水産物都賣業者를 都賣市場法人 또는 市場都賣人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의 내용을 修正 또는 補完하게 할 수 있으며, 整備計劃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65條 (市場의 開設·整備命令)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方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統合·移轉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원활한 需給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地域에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나 農林水協동 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의 開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인하여 발생한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 또는 都賣市場法人의 損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66條 (都賣市場法人의 代行) ①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이 販賣業務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를 代行하거나 管理公社 또는 다른 都賣市場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代行하는 者에 대한 業務處理基準 기타 代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이를 정한다.

第67條 (流通施設の 개선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の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農水産物の 販賣·輸送· 보관·貯藏施設の 개선·整備를 명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이 보유하여야 하는 施設の 기준은 部類別로 그 地域의 人口 및 去來物量 등을 고려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68條 (農水産物小賣流通의 개선) ①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보호 및 商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農水産物小賣段階의 합리적 流通改善에 대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水産物の 仲都賣業·小賣業,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去來事業, 生産者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運營하는 農水産物直販場, 小賣施設の 現代化 등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③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小賣業者 등이 農水産物の 流通改善과 공동이익의 增進 등을 위하여 協同組合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の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第69條 (綜合流通센터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專門流通業體에 그 運營을 委託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綜合流通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綜合流通센터를 運營하는 者 또는 이를 이용하는 者에게 그 運營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流通센터를 運營하는 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綜合流通센터를 運營하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運營방법 및 出荷農漁家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綜合流通센터의 設置, 施設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70條 (流通子會社の 設立) ①農林水協등은 農水産物流通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綜合流通센터, 都賣市場共販場の 運營 기타 流通事業을 수행하는 별도의 法人(이하 "流通子會社"라 한다)을 設立·運營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は 「상법」 상의 會社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子會社の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2007.1.3>

第72條 (流通情報化의 촉진)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情報의 원활한 蒐集·처리 및 傳播를 통하여 農水産物의 流通效率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流通情報化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情報基盤의 整備, 情報化를 위한 教育 및 弘報事業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73條 (財政支援) 政府는 農水産物流通構造改善과 流通機構의 육성을 위하여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 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第74條 (去來秩序의 유지) ①누구든지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에서의 去來秩序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을 위반하는 者를 團束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束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 (教育訓練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流通改善을 촉진하기 위하여 競賣士·仲都賣人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流通從事者에 대하여 教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第76條 (實態調査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運營·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法人 등으로 하여금 都賣市場에 대한 實態調査를 하게 하거나 運營·관리의 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

第77條 (評價의 실시) 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運營·관리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經營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綜合하여 中央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와 施設規模, 去來額 등을 고려하여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仲都賣人에 대하여 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④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評價結果에 따라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不振事項의 시정을 명하거나 都賣市場의 開設者로 하여금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에 대한 施設使用面積의 調整·差等支援

등의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第78條 (審議會 등의 設置) ①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都賣市場制度改善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都賣市場의 開設者 소속하에 市場管理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都賣市場의 去來制度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都賣市場의 評價에 관한 사항
3. 都賣市場從事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農林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7.1.3>

1. 都賣市場의 去來制度 및 去來方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手數料·市場使用料·荷役費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都賣市場 出荷品의 安全性 提高 및 規格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都賣市場의 去來秩序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審議會 또는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7章 補則

第79條 (보고) 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에 대하여 記帳事項, 去來內譯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農水産物의 價格과 需給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仲都賣人 또는 産地流通人에 대하여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80條 (檢査) 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業務와 이에 관련된 帳簿 및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場管理者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法人 및 市場都賣人이 비치하고 있는 帳簿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74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1條 (命令) 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業務規程의 변경, 業務處理의 개선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및 市場都賣人에 대하여 業務處理의 개선 및 市場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받은 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第82條 (許可取消 등)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市·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市場都賣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開設者(이하 "都賣市場法人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한 때

3. 제23조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7조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6. 제27조제3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7. 제29조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8. 제31조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9. 제32조의 規定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
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 외의 사업을 경영한 때
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第25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産地流通人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産地流通人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 ⑥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第83條 (課徵金) 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등이 第82條第2項에 해당하거나 仲都賣人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業務停止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業務의 정지가 당해 業務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都賣市場法人등에게는 1億원 이하, 仲都賣人에게는 1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④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7.1.3>

第84條 (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등의 지정 또는 承認取消
2. 제82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產地流通人의 登錄取消

第85條 (權限의 위임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權限중 그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權限을 市場管理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第29條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產地流通人의 登錄과 都賣市場에의 出入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
2.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市場都賣人·仲都賣人 또는 產地流通人의 業務執行狀況 報告命令

第8章 罰則

第86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이나 共販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이 開設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의 管轄區域안에서 第17條 또는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水産物의 都賣를 目的으로 都賣市場 또는 民營都賣市場을 開設한 者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指定有效期間이 경과한 후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행한 者
3. 第25條第1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仲都賣人의 業務를 행한 者
4. 第29條第1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행한 者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의 場所에서 農水産物의 販賣業務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의 販賣業務의 事業을 兼營한 者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지 아니하거나 指定有效期間이 경과한 후 都賣市場안에서 市場都賣人의 業務를 행한 者
7.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共販場을 開設한 者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고도 그 業을 계속한 者

第87條 (罰則)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할 때에 정한 用途의 用途로 輸入農産物을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8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都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영위한 者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第25條第4項(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正當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競賣士를 任免한 者
5. 第29條第2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産地流通人의 業務를 행한 者
6. 第29條第4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荷業務의 販賣·買受 또는 仲介業務를 행한 者
7. 제31조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따라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第3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水産物을 委託받아 去來한 者
9.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都賣市場안의 都賣市場法人 또는 仲都賣人에게

農水産物を 販賣한 者

10. 第42條第1項(第31條第3項, 第45條 前段, 第46條第1項·第2項 또는 第48條第5項·第6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 등 費用을 徵收한 者

11. 第6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第8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6條 내지 第8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90條 (過怠料)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は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삭제 <2007.1.3>

2. 삭제 <2007.1.3>

3. 第74條第2項 또는 第8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束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第79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は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29條第5項(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 또는 都賣市場共販場의 出入制限 등의 措置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3. 第7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시설물의 사용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한 者

4.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共販場 및 民營都賣市場의 開設者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5.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第9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9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は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6223호,2000.1.2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3條, 第54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각각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第31條第3項중 第41條第2項 本文을 準用하는 부분과 第40條第2項의 規定은 각각 2002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3. 第22條 本文의 規定에 따라 中央都賣市場에 市場都賣人을 두는 사항은 中央都賣市場의 去來體系 및 施設의 整備狀況과 地方都賣市場의 運營實績 등을 고려하여 2004年 1月 1일부터 2年の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할 수 있다.

第2條 (地方公社 및 公共出資法人의 都賣市場 管理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하도록 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및 公共出資法人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場管理者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蒐集商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에 登錄한 蒐集商은 第29條第1項(第44條第3項 및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産地流通人으로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農水産物물류센타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물류센타는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로 본다.

第5條 (農水産物都賣市場法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水産物都賣市場法人協會(이하 이 條에서 "協會"라 한다)는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官廳에 申告를 한 때에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協會는 지체없이 그 解散登記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이 擬制되는 社團法人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경우 종전의 協會의 財産 및 權利·義務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이 擬制되는 社團法人이 이를 承繼한다.

第6條 (地域農業協同組合 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2條第5號·第5條第2項·第6條第1項 및 第9條第3項의 規定중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및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과 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法律 第6018號 農業協同組合法 施行日 前日까지는 農業協同組合, 畜産業協同組合 및 人蔘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로 본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및 第13條를 각각 削除한다.

②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다目중 "農水産物물류센타"를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로 한다.

③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

第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

定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법) <제6699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 基金出納公務員, 基金出納擔當任員, 基金出納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②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水産業協同組合"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810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農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韓國銀行"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178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畜産法 第28條第4項"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産物加工産業을 육성하여 農産物의 附加價値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農産物의 商品性 제고와 公정한 去來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消費者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1.29>
[전문개정 1997.3.7]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7.3.7, 1999.1.21, 2001.1.29>

1. "農産物"이라 함은 加工되지 아니한 상태의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産物의 生産地"(이하 "産地"라 한다)라 함은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4號에 規定하고 있는 農漁村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農産物加工品"(이하 "加工品"이라 한다)이라 함은 農産物을 原料 또는 材料(이하 "加工原料"라 한다)로 하여 製造·加工한 加工食品·傳統食品 및 민예품을 말한다.

5. "農産物加工産業"(이하 "加工産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第4號의 加工品을 생산하는 業을 말한다.

6. 삭제 <1999.1.21>

7. "特産物"이라 함은 特定한 地域에서 生産하거나 特徵적으로 생산한 農産物을 原料로 하여 特徵적으로 製造·加工한 것을 말한다.

8. 삭제 <1999.1.21>

9. 삭제 <1997.12.13>

第2章 農産物加工産業의 育成<개정 2001.1.29>

第3條 (基本計劃의 수립) 農林部長官은 加工産業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加工産業의 육성에 관한 기본 計劃을 수립한다. <개정 1997.3.7, 2001.1.29>

第4條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의 設置<개정 1999.1.21, 2001.1.29>) ①農林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農産物加工産業育成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둔다. <개정 1997.3.7, 1999.1.21,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신설 1997.3.7, 1999.1.21, 2001.1.29>

1. 傳統食品의 品目指定 및 傳統食品名人의 指定등 加工産業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1.21>

3. 삭제 <1999.1.21>

4. 傳統食品의 標準規格의 制定·改正에 관한 사항

5. 삭제 <1999.1.21>

6. 農産物加工品の 品質向上에 관한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産地加工産業의 육성등) ①農林部長官은 産地에서 加工品の 生産을 業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 (이하 "加工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加工品の 生産 및 開發, 加工品 專門販賣店의 設置·운영, 加工品の 輸出促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②삭제 <1999.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加工品生産을 위한 工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工場設置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1, 2001.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동의·승인·解除등을 얻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3.7, 1999.1.21, 1999.2.5, 2002.12.30, 2005.8.4, 2007.4.11>

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3. 삭제 <1997.3.7>

4.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5.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の 開設許可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7. 「수도법」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敷設認可

8. 삭제 <1997.12.13>

9.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또는 申告

10.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 승인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者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建築法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道路法 第40條의 규정에 의한 道路占用許可 및 동법 第50條의 규정에 의한 接道區域에서의 土地形質 변경등의 許可

2.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 설치의 申告

3.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가설 建築物의 建築許可 및 申告

⑥市長·郡守·區廳長은 第4項 및 第5項 各號의 사항중 그 權限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6條 (傳統食品産業의 육성등) ①農林部長官은 國産 農産物을 主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되고, 예로부터 傳承되어 오는 우리 固有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食品(이하 "傳統食品"이라 한다)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品目を 지정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傳統食品의 계승·발전과 加工技能人の 名譽를 위하여 傳統食品名人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傳統食品名人制度를 실시한다. <개정 1997.3.7, 2001.1.29>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目の 傳統食品을 製造·加工하는 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食品名人이 傳統食品의 加工 또는 技能傳授를 業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④삭제<1999.1.21>

⑤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統食品名人으로 지정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신설 1997.3.7, 2001.1.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傳統食品名人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書類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거나 貸與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傳統食品名人活動狀況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の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食品名人의 지정대상·지정기준 및 活動狀況報告등 傳統食品名人制度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第7條 (傳統外食産業의 육성) ①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農産物의 수급원활 및 消費促進과 傳統食品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國産 農産物을 主原料로 하는 傳統外食産業을 研究·開發하여 普及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2005.3.31>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外食産業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국민의 기호와 體質에 맞는 傳統外食業을 영위하는 者에게 傳統外食의 開發·普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第8條 삭제 <1999.1.21>

第9條 삭제 <1999.1.21>

第10條 (加工技術의 開發·普及등) ①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研究機關등에 의뢰하여 農産物의 加工技術·包裝·容器·貯藏 및 加工機械등(이하 "農産物 加工技術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研究·開發하도록 할 수 있으며, 研究·開發한 農産物 加工技術등의 産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 加工技術등을 研究·開發하는 者 및 研究·開發한 農産物加工技術등을 産業化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第11條 (加工業者의 經營改善支援) ①農林部長官은 產地加工業者가 農産物の 輸入開放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經營改善支援등의 施策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產地加工業者가 輸入開放등으로 競爭力이 弱化되거나 經營이 弱化되어 生産하는 加工品の 品目轉換등 經營개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資金의 融資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農産物加工品の 品質管理<개정 1999.1.21, 2001.1.29>

第12條 삭제 <1999.1.21>

第12條의2 삭제 <1997.12.13>

第13條 (特産物등의 品質認證制度) ①農林部長官은 特産物과 傳統食品(이하 "特産物등"이라 한다)의 品質向上·生産獎勵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이에 대한 品質認證制度를 실시한다. <개정 1997.3.7,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特産物등의 品質向上과 生産獎勵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生産하는 者에게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지 아니한 品目の 物品·容器·包裝 또는 送狀에 認證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産物 등의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2001.1.29>

⑤特産物の 品質認證의 有効期間은 그 認證을 받은 날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1年 이내 에 당해 品目の 出荷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品目の 특성상 有効期間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7, 1999.1.21, 2001.1.29>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9.1.21>

⑧삭제 <1999.1.21>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對象品目·표시방법 및 節次 기타 認證制度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삭제 <1999.1.21>

第15條 삭제 <1999.1.21>

第15條의2 삭제<1999.1.21>

第16條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의 優先購買<개정 1999.1.21>) 國家,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은 農産物加工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을 우선적으로 購買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1.21, 2001.1.29>

第17條 삭제 <1999.1.21>

第17條의2 삭제 <1999.1.21>

第17條의3 삭제 <1999.1.21>

第18條 삭제 <1999.1.21>

第19條 (教育訓練등)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加工技術등의 보급과 加工品の 品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業者, 生産者團體의 關係者, 加工業者, 流通業從事者,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教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1.21,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을 專門教育機關등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第4章 補則

第20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加工産業育成 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産地에서 加工業을 영위하는 者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또는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21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山林廳長·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生産者團體 또는 기타 農林 關聯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1.1.29>

第5章 罰則

第22條 삭제 <1999.1.21>

第23條 (罰則)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0.1.12]

第24條 삭제 <1999.1.21>

第25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9.1.21>

第26條 삭제 <1999.1.21>

附則 <제4553호,1993.6.1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농지법) <제4817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6號중 "農地의 保全및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를 "農地法 第36條第1項"으로 한다.

⑨省略

第16條 省略

附則(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18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3號"를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4號"로 한다.

第6條 省略

附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5091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1號중 "工場設立申告"를 "工場設立등 승인"으로 한다.

⑥및 ⑦省略

附則 <제5299호,1997.3.7>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환경농업육성법) <제5442호,19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를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削除한다.

第14條第1項 本文중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 및 有機農産物"을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으로 한다.

第18條第1項第3號를 削除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第172條의 改正規定, ...<省略>...은 1999年 1月 1일부터, ...<省略>... 施行한다.

附則(農水産物品質管理法) <제5667호,1999.1.21>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을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으로 한다.

第1條중 "農水産物の 適正한 品質管理를 통하여"를 "農水産物の"로 한다.

第2條第6號를 削除하고, 同條第7號중 "農水産物 또는 農水産物을 原料로 하여"를 "農水産物을 原料로 하여"로 하며, 同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4條의 題目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고, 同條第1項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며, 同條第2項 本文중 "각 審議會"를 "審議會"로 하고, 同項第1號중 "産地加工支援對象者の 지정, 傳統食品의 品目指定"을 "傳統食品의 品目指定"으로 하며, 同項第2號·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項第6號중 "農水産食品"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項 本文중 "産地加工 支援對象者로 지정된 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加工品生産을 위한 工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工場設置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6條第4項·第8條 및 第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章의 題目중 "農水産物"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3條第5項 但書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를 "農林部令 또는

해양수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同條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4條·第15條 및 第1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16條의 題目중 "規格品"을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으로 하고, 同條중 "農水産物 또는 加工品"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標準出荷規格이 표시된 農水産物 또는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을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등"으로 한다.

第17條·第17條의2·第17條의 3 및 第1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19條第1項중 "農水産物加工技術등의 보급과 農水産物 및 加工品の 品質管理 또는 標準規格化의 促進을 위하여"를 "農水産物加工技術등의 보급과 加工品の 品質管理를 위하여"로 한다.

第22條·第23條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24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5條중 "第22條 및 第23條 또는 第24條"를 "第23條"로 한다.

第26條를 削除한다.

② 및 ③생략

第8條 생략

附則(草地法) <제5763호,1999.2.5>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農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 本文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同項第9號중 "草地轉用の 許可"를 "草地轉用の 許可 또는 申告"로 한다.

第3條 생략

부칙 <제6141호,2000.1.12>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99호,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을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

제1조, 제2조제5호 및 제2장의 제목중 "農水産物加工産業"을 각각 "農産物加工産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제1항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人"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産物 및 畜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

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3장의 제목 및 제16조중 "農水産物加工品"을 각각 "農産物加工品"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고, 동 조제1항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을 "農産物加工産業育成"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21조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435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水道法 第36條"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⑳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産物의 적정한 品質管理를 통하여 農産物의 商品性を 높이고 公正한 去來를 誘導함으로써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消費者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1.29>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1. "農産物"이라 함은 加工되지 아니한 상태의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標準規格"이라 함은 農産物의 包裝規格과 等級規格을 말한다.

4. "物流標準化"라 함은 農産物의 運送·보관·荷役·포장 등 物流의 각 段階에서 사용되는 機器·容器·設備·情報 등을 規格化하여 互換성과 連繫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農産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産物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農産物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農産物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農産物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農産物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地理的表示"라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名聲·品質 기타 特徵이 本質的으로 特定地域의 地理的 特性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 그 特定地域에서 生産된 特産物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原產地"라 함은 農産物이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遺傳子變形農産物"이라 함은 人工적으로 遺傳子を 分離 또는 再組合하여 의도한 特性을 갖도록 한 農産物을 말한다.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 ①이 법에 따른 農産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農産物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6.12.28]

제3조의2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8]

第2章 農産物の 規格·品質認證 등 <개정 2001.1.29>

第4條 (標準規格化)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の 商品性の 提高, 流通能率의 향상 및 公正한 去來의 실현을 위하여 農産物の 標準規格을 定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에 맞는 農産物(이하 "標準規格品"이라 한다)을 出荷하는 者는 포장의 표면에 "標準規格品"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의 制定節次·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개정 2001.1.29>

第5條 (品質認證) ①農林部長官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6.9.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은 農産物(이하 "品質認證品"이라 한다)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品質認證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기준·對象品目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品質認證의 有效期間)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 品質認證을 받은 날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1年 이내에 그 品目の 出荷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品目の 特性상 有效期間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第7條 (品質認證機關의 지정등) ①農林部長官은 農業人이 스스로 農産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自體品質管理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를 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하여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品質認證機關으로 指定를 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品質認證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認證業務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④農林部長官은 品質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品質認證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③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

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第8條 (地理的 表示의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地理的 特性을 가진 優秀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品質向上과 地域特化産業으로의 육성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制度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은 者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理的表示를 할 수 있다. 다만, 地理的特産品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의 기준·對象品目·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第9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1.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品の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規定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 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品表示를 한 標準規格品에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 하는 행위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 品質認證品에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를 한 地理的 特産品에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第10條 (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①農林部長官은 標準規格品,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地理的 特産品の 品質水準의 유지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調査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表示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

3. 表示品의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거나 專門試驗研究機關 등에의 試驗依頼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때에는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第11條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2005.8.4>) 農林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依頼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

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表示品の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第12條 (農産物の 安全性調査) ①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號의 資材등과 農産物에 대하여 殘留된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 및 抗生物質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有害物質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貯藏段階 및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の 경우에는 食品衛生法 등의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2.1.14>

1. 農産物の 生産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

2. 生産·貯藏(生産者が 貯藏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段階나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의 對象地域·對象品目·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試料收去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農産物の 生産場所 또는 貯藏場所에 있는 農産物이나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게 하거나 당해 農産物을 生産·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때에는 農産物이나 資材 또는 土地 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第14條 (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 措置)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の 生産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과 生産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生産하는 者들에게 다음 각號의 사항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1.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3. 당해 農産物の 出荷延期·用途轉換·폐기 등 처리방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는 그 告知된 내용에 따라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

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貯藏段階 또는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食品衛生法 등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 등에게 그 초과 사실과 함께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 처리방법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가 그 告知된 內容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通報하고 關係法令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第3章 原產地 등의 표시

第15條 (原産地の 표시)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流通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그 原産地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の 原料에 대하여 原産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對象品目·표시방법·原産地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개정 2001.1.29>) ①農林部長官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品目·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第17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混同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混同하게 할 目的으로 그 표시를 損傷·변경하는 행위

3. 原産地를 偽裝하여 販賣하거나, 原産地의 표시를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에 다른 農

産物 또는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4. 遺傳子變形農産物の 표시를 한 農産物에 다른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第18條 (原産地の 표시 등의 調査)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原産地の 表示對象 農産物이나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の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農産物의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第4章 農産物의 檢査 등

第19條 (農産物의 檢査) ①農林部長官은 公正한 流通秩序確立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出 또는 輸入하는 農産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실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項目·檢査基準·방법 및 檢査申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檢査員의 資格) ①農林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農産物을 檢査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춘 者(이하 "檢査員"이라 한다)로 하여금 檢査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要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檢査證明書의 發給등) 檢査員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檢査날짜, 等級 등의 檢査結果를 표시하거나 檢査를 받은 者에게 檢査證明書を 교부하여야 한다.

第22條 (異議申請 등) ①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檢査現場에서 檢査를 실시한 檢査員에게 再檢査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員은 즉시 再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결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再檢査日부터 7日 이내에 檢査員이 소속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 받은 機關의 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다시 檢査하여 그 결과를 異議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 (檢査判定의 失效)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의 효력이 상실된다.

1. 農林部令이 정하는 檢査有効期間이 경과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가 멸실 또는 不明確하게 된 때

第24條 (檢査判定의 取消) 農林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 또는 檢査證明書を 偽造 또는 變造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第25條 (보고 및 點檢등) ①農林部長官은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入한 農産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나 販賣業者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倉庫·加工工場·店鋪등의 場所에 보관중인 農産物 또는 그 包裝材의 點檢과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 또는 販賣하는 者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第26條 (檢査機關의 지정등)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生産者團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農業關聯法人 등을 檢査機關으로 지정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檢査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檢査業務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檢査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第27條 (農産物의 檢定<개정 2001.1.29>) ①農産物의 生産者, 消費者 또는 流通業者 등은 農産物의 去來 및 輸出·輸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産物의 品位·成分·殘留農藥 등에 대한 檢定(이하 "檢定"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檢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檢定을 실시하고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檢定項目·節次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第28條 (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第19條第1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檢定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는 행위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檢査結果의 표시, 檢査證明書 또는 檢定證明書を 偽造하거나 變造하는 행위
4.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꾸는 행위
5. 檢定結果에 대하여 허위 또는 誇大廣告를 하는 행위

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第5章 補則

第29條 (農産物의 名譽監視員<개정 2001.1.29>)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公정한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 消費者團體 또는 生産者團體의 會員·職員 등을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위촉하여 農産物의 流通秩序에 대한 監視·指導·啓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農産物名譽監視員에게 監視活動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名譽監視員의 資格·위촉방법·任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9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미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第30條 (褒賞金) 農林部長官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主務官廳 또는 搜查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6.12.28>

第31條 (資金支援 및 優先購買)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品質向上·標準規格化 및 物流標準化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包裝資材·施設 및 自動化裝備의 買入 등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農業者
2. 生産者團體
3. 農林部令이 정하는 流通關聯事業者 및 團體

②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品質向上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農水産物共販場에서 우선적으로 上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購買하고자 하는 때에는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地理的特産品을 우선적으로 購買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제3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5.8.4]

第33條 (聽聞)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2005.8.4>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機關의 指定取消
- 1의2. 제7조의3제4항의 規定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指定 취소
- 1의3. 제7조의4제3항의 規定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指定 취소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의 금지, 認證·登錄의 取消 등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判定의 取消
4.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5. 제29조의6제1항의 規定에 의한 자격취소

第34條 (權限의 위임·위탁 등<개정 2002.1.14>)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山林廳長, 시·도지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②農林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者團體,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또는 農林關聯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의 業務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8.4>

第6章 罰則

제34조의2 (벌칙) 제17조의 規定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2.12.26]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9, 2005.8.4>

1. 第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規格品表示·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地理的表示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2. 第9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地理的特産品에 標準規格品 등이 아닌 農産物 등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
3. 삭제 <2002.12.26>
4. 第2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은 者
5. 第2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의 표시 등을 偽造하거나 變造한 者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5.8.4]

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

第38條 (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2호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항제3호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
 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부칙 <제5667호,1999.1.21>

-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農産物檢査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農水産物の 標準規格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
 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標準出荷規格은 第4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農水産物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
 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 第17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品目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品目으로 본다.
 第4條 (檢査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은 이 법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第20條의 規
 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받은 檢査結果 또는
 교부받은 檢査證明書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및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
 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그 밖의 行政機關의 행
 위 또는 각종 申請 그 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行政機關
 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6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및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
 律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題名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을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으로 한다.
 第1條중 "農水産物の 適正한 品質管理를 통하여"를 "農水産物の"로 한다.

第2條第6號를 削除하고, 同條第7號중 "農水産物 또는 農水産物を 原料로 하여"를 "農水産物を 原料로 하여"로 하며, 同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4條의 題目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고, 同條第1項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며, 同條第2項 本文중 "각 審議會"를 "審議會"로 하고, 同項第1號중 "産地加工支援對象者の 지정, 傳統食品의 品目指定"을 "傳統食品의 品目指定"으로 하며, 同項第2號·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項第6號중 "農水産食品"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項 本文중 "産地加工 支援對象者로 지정된 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加工品生産을 위한 工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工場設置 地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6條第4項·第8條 및 第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章의 題目중 "農水産物"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13條第5項 但書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를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同條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4條·第15條 및 第1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16條의 題目중 "規格品"을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 등"으로 하고, 同條중 "農水産物 또는 加工品"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標準出荷規格이 표시된 農水産物 또는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 등"을 "品質認證表示가 된 特産物 등"으로 한다.

第17條·第17條의2·第17條의3 및 第1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19條第1項중 "農水産物加工技術 등의 보급과 農水産物 및 加工品の 品質管理 또는 標準規格化의 促進을 위하여"를 "農水産物加工技術 등의 보급과 加工品の 品質管理를 위하여"로 한다.

第22條·第23條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24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5條중 "第22條 및 第23條 또는 第24條"를 "第23條"로 한다.

第26條를 削除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0號 및 第6條第25號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을 각각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農産物檢査法 또는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이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91호,2000.1.21>

이 법은 2001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

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 <제6378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農水産物"을 "農産物(親環境農業育成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인산산업법)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地理的の特産品중 人蔘産業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人"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을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生産·採取 또는 捕獲된 國家·地域 또는 海域"을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遺傳子變形農水産物"을 각각 "遺傳子變形農産物"로 한다.

제3조제1항중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패류毒素·食中毒菌"을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土壤·用水·漁場·資材"를 각각 "土壤·用水·資材"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表示對象農水産物"을 각각 "表示對象農産物"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農水産物名譽監視員"을 각각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595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16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7675호,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 <제7996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農産物(「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8103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5호], 시행일 2008.1.1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人蔘 및 人蔘類의 耕作·製造·檢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人蔘을 特産物로 보호·육성하고 人蔘産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2001.1.26, 2007.7.13>

1. "人蔘"이라 함은 오가피科 人蔘屬植物을 말한다.
2. "水蔘"이라 함은 말리지 아니한 人蔘을 말한다.
3. "紅蔘"이라 함은 水蔘을 蒸氣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4. "太極蔘"이라 함은 水蔘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말한다.
5. "白蔘"이라 함은 水蔘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人蔘類"라 함은 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된 것 모두를 말한다.
7. "年根"이라 함은 人蔘이 出芽하여 자란 年數를 말한다.
- 7의2. "원산지"란 人蔘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8. "人蔘類製造"라 함은 水蔘을 原料로 하여 紅蔘, 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하는 것을 말한다.
- 8의2. "人蔘製品類"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收錄된 食品중 人蔘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된 食品을 말한다.
9.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關聯 品目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를 말한다.

第3條 (人蔘産業振興施策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人蔘류 및 人蔘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 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人蔘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農林部長官은 生産者團體 및 農林部令이 정하는 研究機關으로 하여금 人蔘의 優良種苗, 耕作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栽培適地調査 및 人蔘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7.13>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 또는 사업의 施行에 필요한 事業費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第2章 人蔘耕作 및 收穫

第4條 (耕作申告) ①人蔘을 耕作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耕作地를 관할하는 組合에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耕作地를 관할하는 組合에 相續·讓受 또는 合併의 申告를 할 수 있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耕作地를 相續하거나 讓受한 者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耕作者가 法人인 경우 그 法人의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③삭제 <2003.12.11>
[전문개정 1999.1.21]

第5條 삭제 <1999.1.21>

第6條 삭제 <1999.1.21>

第7條 삭제 <1999.1.21>

第8條 (耕作方法 및 指導등) ①農村振興廳長은 人蔘耕作者의 所得增進과 人蔘類의 品質向上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과 協議하여 標準人蔘耕作方法을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農村振興廳長 및 中央會長은 人蔘耕作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耕作方法에 따라 耕作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③人蔘耕作者는 人蔘을 耕作함에 있어서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殘留性農藥 및 化學肥料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8.8>

第9條 (水蔘의 年根確認) ①人蔘耕作者가 5年根 이상의 水蔘을 收穫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에 年根確認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檢査擔當職員으로 하여금 收穫에 立會하여 水蔘의 年根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年根確認의 節次·방법·檢査擔當職員의 資格要件등 年根確認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전문개정 1999.1.21]

第3章 契約耕作 및 需給調節

第10條 (契約耕作등) ①農林部長官은 水蔘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人蔘耕作者 또는 生産者團體와 人蔘製造·加工業者간의 契約耕作을 勸獎·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耕作의 확대등을 위하여 해당 契約者에게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費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耕作의 勸獎·알선과 事業費의 우선 지원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개정 1996.8.8>

第11條 (收買備蓄 및 出荷調節등) 農林部長官은 人蔘類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中央會로 하여금 人蔘類를 收買하여 備蓄·放出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第4章 人蔘類 등 製造 <개정 2001.1.26>

第12條 (人蔘類製造業 및 人蔘留製品類製造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人蔘類製造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管轄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또는 太極蔘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 "人蔘類製造業者"라 한다)는 그 申告事項중 施設의 賃貸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營業을 廢業·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④人蔘類製造業者는 人蔘類를 製造하고 남은 副産物을 原料로 하여 人蔘製品類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을 製造·加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食品衛生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食品의 製造·加工에 관한 營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人蔘類製造業者는 食品衛生法 제21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食品衛生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食品의 製造·加工에 관한 營業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行政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通報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全文改正 99.1.21 法5664]

第13條 삭제 <1999.1.21>

第14條 (營業者의 地位承繼 등) ①人蔘類製造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人蔘類製造業者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併后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1.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規定하는 人蔘製品類의 製造를 承繼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品類 製造의 承繼를 함께 신고한 자는 食品衛生法 제25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承繼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關係行政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通報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全文改正 1999.1.21 法5664]

第15條 (人蔘類의 製造基準등<개정 2001.1.26>)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②人蔘類를 제조하는 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製造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3>

④第3項의 경우 관계직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전문개정 1999.1.21]

第16條 (營業閉鎖等) ①市長·郡守는 人蔘類製造와 관련하여 人蔘類製造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의 閉鎖를 命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2007.7.13>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한 때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方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을 위반한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閉鎖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포함한다)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人蔘類製造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개정 2001.1.2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1]

第5章 檢査 및 輸出入等

제17조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自家製造)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⑤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한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도 자가상표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중선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2007.7.13>]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2.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중전의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2007.7.13>]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당해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①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7.13>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3.12.11]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7.7.13>]

第17條의6 (檢査結果에 대한 異議申請 등) ①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檢査機關 또는 人蔘種子·種苗檢査機關의 檢査를 받은 者가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檢査를 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하고 再檢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및 再檢査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9.1.21]

[제17조의3에서 이동 <2007.7.13>]

第18條 (品質認證) 水蓼을 生産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産物品質管理法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品質認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1.1.29>

第19條 (未檢査品の 去來制限등) ①紅蓼·太極蓼 또는 白蓼을 販賣하는 者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根表示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檢査에 불합격된 紅蓼·太極蓼 또는 白蓼은 이를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檢査에 불합격된 鴻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수출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것을 적발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제품의 檢査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④鴻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檢査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檢査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3>

⑤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007.7.13>

[전문개정 1999.1.21]

第20條 (人蓼類 市場接近物量 輸入推薦<개정 1999.1.21>) ①삭제 <1999.1.21>

②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 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해당하는 人蓼類를 讓許稅率로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蓼類를 輸入하는 者는 輸入價格과 販賣價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金額을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산물가격안정기금에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1, 2004.12.31>

第6章 人蓼類의 表記등

第21條 삭제 <1999.1.21>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農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6]

第7章 삭제 <2000.1.21>

第23條 삭제 <2000.1.21>

第24條 삭제 <2000.1.21>

第25條 삭제 <2000.1.21>

第26條 삭제 <2000.1.21>

第27條 삭제 <2000.1.21>

第8章 補則

第28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農村振興廳長,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 市長·郡守,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1]

第29條 (調査 등<개정 1999.1.21>) ①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國立農產物檢査機關의 長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者團體·人蔘製造業者·蒐集者·輸出入業者·販賣業者 또는 品質認證을 받은 者등에 대하여 施設·帳簿·書類 기타의 物件을 調査 또는 閱覽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試料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1>

第30條 삭제 <2001.1.26>

第30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年根確認業務에 종사하는 組合의 任·職員과 제17조제1항·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人蔘類檢査機關 및 人蔘種子·種苗檢査機關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3.12.11, 2007.7.13>

[본조신설 1999.1.21]

第9章 罰則

第31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12.11, 2007.7.13>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年根을 허위로 표시하여 販賣한 製造者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年根表示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
3. 제19조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者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

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紅蔘이나 5年根 이상의 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을 위반하여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한 者
 3.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직원의 製造確認을 正當한 理由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제17조의4제2항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전문개정 1999.1.21]

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3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1.21, 2001.1.26, 2003.12.11, 2007.7.13>

1.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殘留性農藥 또는 化學肥料를 사용한 者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4年根 이하의 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者
 3.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變更·休廢業등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人蔘類 製造業者
 4. 人蔘類製造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로서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製造·販賣한 者
- 4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人蔘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5. 제17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檢査畢證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印刷하지 아니하고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販賣한 者
 6. 제17조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檢査成績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7.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 검사업체
 9.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查등에 대하여 正當한 理由없이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國立農産物 檢査機關의 長 또는 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6.8.8, 1999.1.2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내 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022호,19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人蔘事業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人蔘振興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人蔘産業振興基金으로 본다.

第4條 (耕作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韓國담배人蔘公社가 지정한 紅蔘耕作圃에 대하여는 韓國담배人蔘公社와 生産者團體간에 耕作契約한 것으로 보며, 韓國담배人蔘公社社長이 收買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韓國담배人蔘公社가 耕作指定하여 耕作중에 있는 白蔘圃 및 苗蔘圃는 이 法에 의하여 耕作指定 또는 耕作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檢査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하여 행한 檢査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檢査 기타 처분으로 본다.

第6條 (紅蔘製品의 製造·加工 및 品質管理등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한 紅蔘製品의 製造·加工許可, 기준 및 規格의 적용 기타 品質管理에 관한 사항은 食品衛生法에 의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人蔘事業法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중 "金融機關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3條중 "金融機關 또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第14條중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를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로 한다.

②人蔘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2項, 第27條第1項第4號·第2項, 第29條, 第33條第3項, 第38條第1項第11號, 第39條第1項·第2項 및 第42條중 "財務部長官"을 각각 "農林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人蔘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7>省略

<38>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項, 第4條, 第5條第1項·第2項 本文, 第7條第1項 本文, 第10條第1項·第2項, 第11條, 第12條第1項·第3項, 第14條第3項, 第16條第1項 本文·第2項, 第17條第1項·第3項, 第18條, 第20條第1項·第2項, 第25條第2項, 第26條, 第27條第1項·第2項 本文, 第28條, 第29條第1項, 第30條 및 第33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第2項 本文, 第6條第2號, 第7條第1項 本文,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0條第3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4條第3項·第4項 本文, 第15條第2項·第3項, 第16條第3項, 第17條第1項 내지 第4項·第6項·第8項 및 第20條第1項·第3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39>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664호,1999.1.21>

①(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製造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造業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人蔘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自體檢査業體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業體로 決定되어 통보를 받은 者는 第17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業體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第10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人蔘産業法

附則(農水産物品質管理法) <제5667호,1999.1.2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생략

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第8條 생략

부칙 <제6189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2000年 6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人蔘産業振興基金의 폐지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人蔘産業法에 의하여 설치된 人蔘産業振興基金의 債權·債務등 일체의 權利·義務 및 財産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 人蔘産業振興基金으로부터 承繼하는 融資金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60條의 規定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金利 및 기간으로 同法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融資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蔘産業振興基金의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에 반영된 事業은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2중 第102號를 削除한다.

第4條 (基金廢止에 따른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人蔘産業振興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

제3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칙 제3조 및 제6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地理的の特産品중 人蔘産業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6998호,2003.12.1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505호,2007.7.1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 백

IV. 축 산

여 백

축산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9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란 계란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 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축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가축의 검정)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

2.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

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수정사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마약 중독자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①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 "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④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하여 질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농림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 종축의 정기 검진 및 그 검진기록의 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그 종축에서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회수·폐기

제16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액등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때
4.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0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 (축산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3조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

3.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营业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營業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營業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營業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營業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營業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營業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營業정지 처분,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육 규모를 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축산업 등록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축산물등급판정소)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등급판정사) ①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정한다.

제38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①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등급판정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급판정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①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4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7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 (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②등급판정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16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취소

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액등처리업을 영위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한 대기업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54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로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畜産法 第28條第4項"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畜産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8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韓國馬事會의 組織·운영과 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競馬의 公정한 施行과 원활한 普及을 통하여 馬事의 振興 및 畜産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競馬"라 함은 騎手가 騎乘한 말의 競走에 勝馬投票券을 發賣하고, 勝馬的中者에게 還給金を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競走馬"라 함은 競走에 出走시킬 目的으로 韓國馬事會에 登錄한 말을 말한다.
3. "馬主"라 함은 競走馬를 所有하거나 所有할 目的으로 韓國馬事會에 登錄한 者를 말한다.
4. "調教師"라 함은 韓國馬事會의 免許를 받아 競走馬를 管理하고 調練시키는 者를 말한다.
5. "騎手"라 함은 韓國馬事會의 免許를 받아 競馬施行時 競走馬에 騎乘하는 者를 말한다.
6. "勝馬投票券"이라 함은 競馬施行時 勝馬를 的中시켜 還給金を 교부받고자 하는 者의 請求에 의하여 韓國馬事會가 發賣하는 勝馬投票方法·馬番 및 金額등이 기재된 票券을 말한다.
7. "還給金"이라 함은 出走馬의 到着順位가 確定되었을 때 韓國馬事會가 勝馬投票券發賣金額중에서 發賣收得金 및 諸稅를 控除한 후 勝馬的中者 또는 勝馬投票券 購買者에게 교부하는 金額을 말한다.
8. "單位投票金額"이라 함은 勝馬投票券 發賣의 基本單位로서 最低發賣金額을 말한다.
9.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할 때에 승마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한다.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5.31]

第2章 競馬의 施行

第3條 (競馬의 開催) ① 競馬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馬事會(이하 "馬事會"라 한다)가 開催한다.

②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마장별 경마개최의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第4條 (競馬場) ① 馬事會가 競馬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을 具備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競馬場의 設備가 부적합하여 競馬場안의 秩序를 유지할 수 없거나 競馬의 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 대하여 設備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5條 (入場料) ①馬事會는 競馬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競馬장의 入場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第1項의 入場料의 徵收對象·徵收方法 및 金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제6조 (마권의 발매 등<개정 2005.5.31>) ①마사회는 競馬를 개최하는 때에는 競馬장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마사회는 競馬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農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農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이하 "장의발매소"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6조의2 (구매권) ①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구매권을 마권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는 때에는 마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 환매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6조의3 (경고문구의 표기) ①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림부령으로 定한다.

[본조신설 2005.5.31]

第7條 (勝馬投票方法) ①勝馬投票方法은 單勝式·複勝式·雙勝式·連勝式·複連勝式·三複勝式·重單勝式 및 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勝馬投票方法에 있어서의 勝馬의 決定·실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8條 (還給金) ①馬事會는 勝馬投票의 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競走에 대한 馬券의 發賣金額중에서 還給金을 교부한다.

②勝馬投票의 中者가 없는 경우의 發賣金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馬券을 購

買한 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다만, 승마가 2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은 나머지 승마투표적증자에게 균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の 債權은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5.5.31>

제9조 (발매수득금 등) ①마사회의 수입은 발매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수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第10條 (投票의 無效) ①馬券을 發賣한 후 당해 競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競走에 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1. 出走한 말이 1頭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競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
3. 삭제 <2005.5.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신설 2005.5.31>

1. 마권발매개시 후 발주(發走) 이전에 발주제의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③發賣된 馬券에 표시된 番號의 말이 出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投票는 無效로 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가 無效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勝馬投票方法別로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馬券을 所持한 者는 馬事會에 대하여 購買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⑥제5항의 請求權은 당해 마권 發賣日부터 90일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개정 2005.5.31>

第11條 (馬主의 등록 등<개정 2001.12.31>) ①말을 競馬에 出走시키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③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5.5.31>

1. 사망하였을 때
2.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주활동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받은 때
5.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6.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된 때
7.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第12條 (競走馬의 登錄) 競馬에 出走시키고자 하는 말은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13條 (服色の 登錄) ①競馬施行時 騎手が 着用하는 衣服의 色相 및 무늬는 馬事會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衣服의 色相 및 무늬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14條 (調教師·騎手の 免許 등) ①競走馬의 調教 또는 騎乘을 하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로부터 調教師 또는 騎手の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競走馬의 裝蹄를 하고자 하는 者는 馬事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登錄의 要件·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馬事會가 정한다.

第15條 (登錄料 및 免許手數料) 馬事會는 第11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를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第16條 (特別登錄料) ①馬事會는 特定競馬에 말을 出走시키고자 하는 馬主에 대하여 特別登錄料를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登錄料는 全額을 해당 競馬의 賞金에 포함시켜야 한다.

第17條 (개최운영위원<개정 2005.5.31>) 馬事會가 競馬를 開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競馬에 관한 事務를 執行시키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5.31>

第3章 韓國馬事會

第1節 設立

第18條 (設立)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馬事會를 設立한다.

第19條 (法人格) 馬事會는 法人으로 한다.

第20條 (事務所 및 住所) ①馬事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馬事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支事務所를 들 수 있다.

③馬事會의 住所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第21條 (登記) ①馬事會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의 사항을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事務所의 所在地
4. 設立의 年月日
5. 資産의 總額
6. 會長·副會長·常任理事·理事 및 常任監事의 住所·姓名

②第1項 各號의 사항을 變更하거나 支事務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主된 事務所 所在地 및 支事務所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사항은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①이 法에 의한 馬事會가 아닌 者는 韓國馬事會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馬사회가 아닌 자는 馬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5.31>

第23條 (定款) ①馬事會의 定款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事務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事業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

②馬事會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24條 (규정<개정 2001.12.31>) ①馬事會는 法令과 定款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競馬施行에 관한 사항
2. 會計에 관한 사항
3. 任員의 報酬·職員의 定數·任免 및 給與에 관한 사항

②馬事會는 第1項第1號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第2節 任員 및 職員

第25條 (任員) 馬事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1人
3. 常任理事 5人 이내
4. 理事 10人 이내
5. 常任監事 1人

第26條 (任員의 職務) ①會長은 馬事會를 代表하며, 馬事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缺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5.5.31>

③常任理事는 會長과 副會長을 補佐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馬事會業務를 執行한다.

④會長과 副會長이 모두 缺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常任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5.5.31>

⑤理事는 理事會에 附議된 議案을 審議하고 議決에 참여한다.

⑥常任監事は 馬事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한다.

第27條 (任員의 任命) ①會長·副會長 및 常任監事は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農林部長官이 任命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②常任理事 및 理事는 그 職務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會長이 農林部長

官의 승인을 얻어 任命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의 常任理事는 馬事會 職員중에서 任命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第29條 (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馬事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馬事會에 登錄된 馬主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第30條 (兼職禁止) 馬事會의 常任任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의 任員이 되거나 營利事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31條 (代表權의 제한) ①馬事會와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또는 理事와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常任監事가 馬事會를 代表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馬事會와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또는 理事와의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2條 (理事會) ①理事會는 會長·副會長·常任理事 및 理事로 構成하되,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②理事會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會長은 그 議長이 된다. <개정 2005.5.31>

③다음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1.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2. 決算
3. 定款의 變更
4. 不動産의 處分
5. 규정의 制定 및 變更
6. 자금의 차입
7. 기타 農林部長官의 許可·認可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개정 2005.5.31>

⑤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31>

⑥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⑦이사는 회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⑧常任監事は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32條의2 (競馬發展委員會) ①競馬의 발전과 馬事會의 운영에 관한 諮問을 위하여 馬事會에 競馬發展委員會를 둔다.

②競馬發展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競馬發展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會長이 위촉한다.<개정 2001.1.29, 2001.12.31>

1. 競馬와 관련이 있는 政府部處의 關係公務員
2. 馬事會에 登錄된 馬主 및 調教師·騎手의 代表者
3. 競走馬 生産者의 代表者
4. 競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者

④競馬發展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馬事會가 정한다.<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9.12.31]

第33條 (職員의 任免) 馬事會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第34條 (代理人의 選任) 會長은 任員이나 職員중에서 馬事會의 業務에 관하여 일체의 裁判 上 또는 裁判외의 行위를 하는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5條 (民法의 準用) 民法 제35조 및 제65조의 規定은 馬事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5.31>

第3節 事業 및 會計

第36條 (事業의 범위) 馬事會는 제1조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2007.4.11>

1. 競馬의 施行에 관한 事業
 - 가. 競馬의 開催
 - 나. 말·馬主 및 服色의 登錄
 - 다. 調教師·騎手의 免許 및 裝蹄를 하고자 하는 者의 登錄
 - 라. 騎手의 養成 및 訓練
2. 馬事의 振興에 관한 事業
 - 가. 말의 改良增殖·육성 및 그 技術開發과 普及
 - 나. 말의 保健 및 衛生에 관한 研究
 - 다. 말의 이용에 관한 指導獎勵
3. 「축산법」 제43조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에 의 출연

4. 競馬場안의 簡易體育施設 및 市民慰樂施設의 設置·운영
5. 家畜의 競走를 이용하여 행하는 競馬와 유사한 事業
6.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事業과 관련이 있는 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에 대한 投資·出捐 및 補助
9. 경마시행 관련 시설·장비의 임대·판매 및 경마시행 관련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第37條 (事業計劃 등의 승인) 馬事會는 每 年度末까지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 및 收入支出豫算에 대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38條 (事業年度) 馬事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제39조 (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第40條 (資金의 運用) 馬事會는 다음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資金을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2. 國·公債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의 取得

第41條 (財産處分の 제한) 馬事會는 所有不動産을 讓與·交換 또는 擔保에의 제공을 하거나 權利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42條 (損益金の 처리) ①馬事會는 每 事業年度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5.31>

1. 移越損失金の 補填
2. 資本金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 積立
3. 資本金과 同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積立
4. 특별적립금에 積立

②馬事會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4號의 特別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第1項第3號의 競馬事業擴張積立金, 第1項第2號의 利益準備金の 순으로 補填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과 競馬事業擴張積立金은 자본금으로 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

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4.3.22, 2005.5.31>

⑤馬事會는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金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1.12.31>

第43條 (決算書의 제출) ①馬事會는 會計年度 종료 후 3月 이내에 前會計年度의 決算書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2. 기타 決算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書類

第4節 監督

第44條 (命令·處分 및 檢査) ①農林部長官은 이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馬事會에 대하여 業務에 관한 監督上 필요한 命令 또는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②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馬事會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馬事會의 事務所·競馬場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물건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5條 (理事會 출석)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公務員은 馬事會의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第46條 (任員의 解任) 農林部長官은 馬事會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解任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이나 규정을 위반한 때
3. 心身の 障擱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第4章 補則

第47條 (競馬場의 團束) ①馬事會는 競馬場의 秩序維持와 競馬의 公正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

②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5.5.31]

第49條 (馬券의 購買制限 등) ①마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馬券을 發賣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馬券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馬事會의 任·職員
3. 調教師·騎手·마필관리사
4. 미성년자
5. 競馬開催 業務에 종사하는 者(馬事會와 契約에 의하여 競馬開催 業務에 종사하는 者를 포함한다)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第5章 罰則

第50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1.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이 法에 의한 말의 경주에 관하여 賭博을 한 者 또는 이를 幫助한 者
3. 제49조제2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者

第51條 (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1. 出走할 말의 競走能力을 一時的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기타물질을 사용한 者
2. 競馬에 관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얻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하여 競走에서 말의 全能力을 發揮시키지 아니한 騎手

第52條 (罰金の併科) 第50條 및 第51條의 경우에 各條에 規定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53條 (罰則) ① 調教師·騎手 및 마필관리사가 그 業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授受·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② 調教師·騎手 및 마필관리사가 第1項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위를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第54條 (罰則) 調教師·騎手 및 마필관리사가 그 業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2005.5.31>

第55條 (罰則) 第53條 및 第54條에 規定한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第56條 (沒收·追徴) 제50조·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9조제2호의 財物은 沒收한다. 다만, 財物을 沒收하기 不可能하거나,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徴한다. <개정 2005.5.31>

第57條 (資格停止의 併科) 第53條 내지 第55條의 罪에는 10年 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2. 경주로, 예시장, 말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5.5.31]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전문개정 2005.5.31]

第60條 (未遂犯) 第50條 및 第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61條 (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

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은 馬事會의 任員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개최운영위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2005.5.31>

1. 제27조제2항·제37條·제40조·제41조 및 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競馬場을 設置한 者

3. 第4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42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1999.12.31, 2001.1.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251호,1990.8.1>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한 任員은 이 법에 의해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任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 1 號중 "當該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을 "당해 勝馬投票券의 單位投票金額"으로 한다.

②畜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3項중 "韓國馬事會法 第25條"를 "韓國馬事會法 第42條"로 한다.

③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韓國馬事會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韓國馬事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第2項, 第9條, 第15條, 第16條第1項, 第23條第2項, 第24條第2項, 第27條第1項·第2項, 第30條, 第32條第3項第7號, 第37條, 第39條 내지 第41條, 第42條第5項,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第2項, 第45條, 第46條 및 第61條第1項第1號·同條第2項 내지 第4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體育靑少年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第7條第2項, 第10條第3項, 第13條第2項 및 第40條第2號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體育靑少年部令"으로 한다.

⑥내지 ⑩省略

第9條 및 第10條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韓國馬事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第4條第1項·第2項, 第9條, 第15條, 第16條第1項, 第23條第2項, 第24條第2項, 第27條第1項·第2項, 第30條, 第32條第3項第7號, 第37條, 第39條, 第40條, 第41條, 第42條第5項,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第2項, 第45條, 第46條 및 第61條第1項第1號·第2項 내지 第4項중 "體育靑少年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2項, 第7條第2項, 第10條第3項, 第13條第2項 및 第40條第2號중 "體育靑少年部令"을 각각 "文化體育部令"으로 한다.

⑦내지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則 <제6091호,1999.12.31>

이 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文化觀光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7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72호,2001.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익준비금 및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③(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상임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경마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마사회의 회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7207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韓國馬事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47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마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畜産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 (축산자조금의 설치 <개정 2006.12.28>) ①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부장관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제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한우자조금, 육우자조금, 양돈자조금, 낙농자조금, 산란계자조금, 육계자조금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제5조 (자조금의 재원 <개정 2006.12.28>)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2.28>

1.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이하 "거출금"이라 한다)
2.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 <개정 2006.12.28>) ①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과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축산단체는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축산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축산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의원의 선출 등) ①축산단체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③대의원의 총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 선출구별 대의원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안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대의원 당선자는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2인 이상의 동수의 득표자로 인하여 그 선거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동수의 득표자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6.12.28>

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안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두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⑦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대의원의 보궐선거) ①축산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8조 (대의원 변경의 요구) ①축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선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1. 자조금 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그 밖에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축산업자의 새로운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지체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축산단체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투표로 의무거출금의 납부가 부결된 경우에는 즉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납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 실시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④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변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유와 찬반 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와 투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 (대의원회) ①축산단체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28>

②대의원회는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축산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금 사업의 운용결과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신설 2006.12.28>

1. 의무거출금의 납부 여부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⑤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10조 (거출금의 한도) ①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급과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그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거출금징수의 위탁 <개정 2006.12.28>) ①축산단체의 장은 의무거출금의 납

부에 대한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의 장은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축산업자는 직접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당해 가축을 판매(위탁을 포함한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06.12.28>

④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⑤수납기관은 수납한 의무거출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별로 축산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⑥수납기관의 납부자에 대한 납부안내, 의무거출금의 구분회계 및 축산단체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지급절차 등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12조 (과오납금의 환급) 축산단체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축산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조금의 용도 <개정 2006.12.28>)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28>

1. 축산물 소비홍보
2.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5.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자조금의 운용 <개정 2006.12.28>) ①자조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용한다. <개정 2006.12.28>

②축산단체는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자조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28>

제15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6.12.28>) ①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12.28>

1.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자조금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3. 자조금 운용에 관한 감사
4.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5.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6. 그 밖에 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조금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②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조금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12.28>

1.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국단위 축산단체의 장
2. 대의원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4.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자
5.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
6. 수납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
7.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업계 또는 기관이 지명하는 자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6.12.28>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는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농림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거출금의 수납중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698호,2002.5.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의 설치) ①축산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 전에 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축산단체의 장이 되며, 그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축산업자이어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운영비용은 해당 축산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제810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자조활동자금 및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축산자조금 및 자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畜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의2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라 함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주인"이라 함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시행자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6.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8. "환급금"이라 함은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소싸움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소싸움경기투표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는 그 소속 하에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②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①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 ①경기시행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축산업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소싸움경기투표방법) ①소싸움경기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경기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소싸움경기장안의 질서 및 안전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를 개최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싸움소,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의 등록 및 면허 등) ①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싸움소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사망한 때
3.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은 때
6. 경기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 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④경기시행자는 싸움소주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긴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3항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경기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환급금) ①경기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권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2조 (투표의 무효) ①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당해 소싸움경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우권 발매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3조 (발매수득금) 경기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①경기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1. 「축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 ①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권판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범위안에서 소싸움경기사업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위탁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한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경기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8조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 그 밖에 소싸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경기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기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명령·처분·검사 등)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시행자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시행자의 사무소,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우권의 구매제한 등) ①경기시행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1. 경기시행자의 임·직원(경기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 소싸움경기시행에 관한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3. 심판, 조교사
4. 조교사 등이 고용해서 싸움소를 관리하는 자(이하 "싸움소관리원"이라 한다)
5. 수탁사업자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24조 (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벌칙) ①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2.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②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 (벌칙) 제25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 (몰수·추징) 제25조 및 제27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4. 제1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자
5.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722호,2002.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動物保護法) <제8282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酪農振興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第1條 (目的) 이 법은酪農産業의構造改善, 原乳와 乳製品의 需給調節, 價格安定과 流通構造의 개선을 통하여酪農業과酪農關聯産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9.7>

1. "酪農"이라 함은 原乳를 生産하기 위하여 젓소를 飼育·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2. "原乳"라 함은 젓소에서 生産된 젓으로서 加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乳製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原乳를 處理·加工한 것을 말한다.
4. "集乳"라 함은 酪農家가 生産한 原乳를 收集하는 것을 말한다.
5. "集乳組合"이라 함은 原乳의 集乳를 위하여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酪農關聯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 또는 地域別畜産業協同組合중 酪農振興會長(이하 "振興會長"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組合을 말한다.

6. "酪農關聯團體"라 함은 酪農業을 하는 者를 會員으로 하는 生産者團體와 乳加工業을 하는 者를 會員으로 하는 乳加工關聯團體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團體를 말한다.

第3條 (酪農振興計劃의 수립) ①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 酪農振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1. 酪農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사항
2. 酪農技術 向上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原乳 및 乳製品의 需給安定에 관한 사항
4. 原乳의 品質向上과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사항
5. 原乳의 集乳, 輸送 및 貯藏施設과 裝備에 관한 사항
6. 學校牛乳給食, 消費弘報등 乳製品의 需要擴大에 관한 사항
7. 기타 酪農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酪農振興計劃의 수립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酪農振興計劃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4條 (酪農地區)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를 中心으로 地域與件이 酪農經營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酪農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酪農地區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다른 地域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酪農地區의 開發과 資金支援 및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 (酪農振興會의 設立) ①原乳와 乳製品의 需給 및 價格安定事業의 추진을 위하여 酪

農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振興會는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와 酪農關聯團體등으로서 振興會 구성에 參與하고자 하는 者로 構成한다.<개정 1999.9.7>

③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振興會는 定款을 定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6條 (業務) 振興會는 다음의 業務를 行한다.

1. 原乳와 乳製品의 需給計劃의 수립
2. 原乳의 購入 또는 販賣에 관한 業務
3. 原乳의 品質向上에 관한 業務
4. 乳製品의 收買, 備蓄, 放出 및 輸出入에 관한 業務
5. 牛乳·乳製品의 消費촉진, 弘報 및 市場開拓에 관한 業務
6. 기타 酪農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業務

第7條 (民法의 準用)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8條 (原乳등의 需給計劃 수립) ①振興會는 每 事業年度 開始 1月전까지 다음 연도의 原乳 및 乳製品의 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需給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사육전망
 2. 原乳 生産量 및 乳製品 消費量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集乳組合別 原乳生産計劃量
 4.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乳加工業體와 기타 原乳를 購入하고자 하는 者(이하 "原乳需要者"라 한다)에 대한 原乳供給計劃
 5. 原乳 및 乳製品 需給安定을 위한 사항
 6. 기타 原乳 및 乳製品의 需給計劃등과 관련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會는 原乳등의 需給計劃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集乳組合 및 原乳需要者에게 原乳需給計劃, 販賣實績등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集乳組合 및 原乳需要者는 振興會로부터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 (原乳의 契約生産) ①振興會는 原乳의 生産 및 需給의 安定性を 확보하기 위하여 酪農家와의 契約에 따라 原乳를 生産하게 하여 이를 購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이하 "原乳生産契約"이라 한다)에는 契約期間, 原乳의 契約生産量, 振興會의 原乳購入價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振興會는 酪農家の 原乳生産費, 原乳需要者의 乳製品生産原價등을 참작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乳購入價格을 정하여야 한다.

第10條 (原乳生産契約의 내용변경등) ①原乳生産契約을 체결한 酪農家(이하 "契約酪農家"라 한다)는 原乳의 契約生産量등 契約內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振興會에 통지하여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契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振興會에의 통지만으로 契約內容을 변경할 수 있다.

②契約酪農家가 酪農을 廢止하거나 縮小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振興會의 同意를 얻어 당초의 契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酪農家에게 承繼시킬 수 있다.

第11條 (原乳購入) 振興會는 酪農家가 原乳生産契約에 따라 生産한 原乳의 全量을 購入하여야 한다. 다만,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乳製品의 原料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 (原乳의 契約供給) ①振興會는 契約酪農家로부터 購入한 原乳를 계속적·안정적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原乳需要者와 供給契約(이하 "原乳供給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原乳를 販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內容에는 契約期間, 原乳의 販賣量·販賣價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振興會는 原乳의 購入價格, 集乳 및 販賣등에 소요되는 費用을 참작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乳의 販賣價格을 정하여야 한다.

④振興會는 原乳供給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原乳需要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 (集乳組合 지정등) 振興會는 契約酪農家로부터 購入하는 原乳를 集乳組合에 委託하여 集乳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振興會長은 集乳組合의 지정과 集乳組合別 集乳圈域의 決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第14條 (原乳檢査) ①酪農家가 生産한 原乳의 檢査는 農林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原乳檢査機關"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原乳檢査에 관한 사항은 畜産物衛生處理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原乳檢査機關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原乳檢査의 結果를 集乳組合 및 原乳需要者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集乳組合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乳檢査機關으로부터 原乳檢査結果를 받은 때에는 이를 契約酪農家에게 個別的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第15條 (酪農狀況의 파악등) 振興會는 原乳生産契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集乳組合으로 하여금 그 集乳圈域안에 있는 酪農家의 糞소飼育頭數 및 原乳生産量등 酪農狀況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 (集乳 및 原乳引渡등에 관한 異議申請) 酪農家·原乳需要者 또는 集乳組合은 第13條에 規定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振興會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振興會는 지체없이 이를 檢討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보고 및 監督) ①農林部長官은 振興會·原乳需要者·集乳組合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原乳와 乳製品의 需給安定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振興會·原乳需要者 및 集乳組合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原乳의 流通秩序維持에 관한 사항
2. 原乳生産契約 및 原乳供給契約의 公正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集乳組合의 原乳需要者에 대한 原乳引渡의 公正성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原乳와 乳製品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農林部長官은 振興會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等 關係書類와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의 履行狀況을 檢査하게 하고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8條 (權限의 위임·위탁)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振興會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振興會는 이 法에 의한 原乳의 生産 및 供給契約등에 관한 業務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중 一部를 中央會 또는 集乳組合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9.7>

1.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酪農家와의 原乳生産契約(原乳購入價格은 振興會가 정한 價格으로 함)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酪農家와의 原乳生産契約內容의 변경등에 관한 同意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酪農家로부터의 原乳 購入
4.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會가 정한 原乳販賣價格과 原乳需要者別物量을 基準으로 한 原乳需要者와의 原乳供給契約 및 販賣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集乳組合別 集乳圈域 決定
6.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業務

第19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農林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349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振興會의 設立準備) ①農林部長官은 이 法 施行전이라도 畜協中央會 및 酪農關聯團體의 代表를 포함한 7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振興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設立委員은 振興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振興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후 지체없이 振興會에 그 事務와 財産을 引繼하여야 하며 引繼가 완료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觸된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1項第13號를 削除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酪農振興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草地法) <제5763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項중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草地造成地區"를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로 한다.

②생략

第3條 생략

附則(農業協同組合法) <제6018호,1999.9.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17條 생략

第1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法"을 "農業協同組合法"으로 한다.

第5條第2項중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協中央會"라 한다)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한다)로 한다.

第18條第2項중 "畜協中央會"를 "中央會"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第19條 내지 第21條 생략

초지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草地의 造成·管理·利用 및 保全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振興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1. "草地"라 함은 多年生改良牧草의 栽培에 이용되는 土地 및 飼料作物栽培地와 牧道·進入道路·畜舍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土地를 말한다.

2. "飼料作物栽培地"라 함은 粗飼料를 生産하기 위하여 一年生作物을 栽培하는 土地를 말한다.

3. "未開墾地"라 함은 林野·荒蕪地·自然生草地·沼澤地·廢鹽田·廢川敷地·防潮堤가 構築된 干拓地 등 法的 地目여하에 불구하고, 草地造成에 적합한 土地(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草地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土地를 말한다.

4. "草地의 轉用"이라 함은 草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草地의 이용에 障害가 되는 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등으로 草地를 草地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1999.2.5>

6. "草地造成單費"라 함은 草地 1헥타르 造成에 필요한 費用으로서 農林部長官이 每年 算出·告示하는 費用을 말한다.

第3條 (草地造成의 제한<개정 1999.2.5>)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草地造成을 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1997.4.10, 1997.12.13, 1999.2.5, 2004.2.9, 2004.12.31, 2006.9.27>

1.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公用·公共用·企業用 또는 保存의 目的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計劃이 確定된 土地

2. 採種林·試驗林·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國立墓地·公設墓地·私設墓地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指定한 國立墓地 또는 公設墓地의 豫定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②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砂防地, 「자연공원법」에 의한 自然公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開發制限區域,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誘致地域등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地域(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未開墾地가 있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草地造成을 할 수 있는 土地로 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86.12.31, 1990.1.13, 1991.5.31, 1995.12.29, 1996.8.8, 1997.4.10, 1999.2.5, 2002.12.30, 2006.9.27, 2007.4.6>

第4條 삭제 <1997.4.10>

第2章 草地의 造成 <개정 1981.12.31>

第5條 (草地造成의 許可) 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할 때에는 草地造成期間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81.12.31]

第5條의2 (草地造成의 適地調査)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申請을 받은 市長·郡守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造成對象地의 立地條件이 草地造成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調査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6.8.8, 19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 또는 隣接한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者가 障礙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고자 할 때에는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⑤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障礙物의 變更·除去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⑥삭제 <1997.4.10>

[본조신설 1981.12.31]

第6條 삭제 <1999.2.5>

第7條 삭제 <1997.4.10>

第8條 삭제 <1999.2.5>

第3章 삭제 <1981.12.31>

第9條 삭제 <1981.12.31>

第10條 삭제 <1981.12.31>

第11條 (地位承繼)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者가 草地造成完了전에 死亡하거나 對象土地를 讓渡·賃貸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이나 讓受人 또는 賃借人이 反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草地造成許可에 따르는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전문개정 1999.2.5]

第12條 (許可의 取消) ①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7.4.10, 1999.2.5>

1. 許可日로부터 1年이 경과하여도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着手후 1年 이상 事業을 中止한 때

2.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許可條件을 違反한 때

4. 삭제 <1999.2.5>

5. 草地造成完了전에 그 對象土地를 相續·讓受 또는 賃借한 者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地位承繼에 대하여 反對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②삭제 <1997.12.13>

③삭제 <1997.12.13>

④삭제 <1997.12.13>

⑤삭제 <1997.12.13>

⑥삭제 <1997.4.10>

第12條의2 삭제 <2006.9.27>

第13條 (資金支援) ①政府는 이 法에 의한 草地의 造成에 필요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하는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事業完了전이라도 事業施行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6.8.8>

第14條 삭제 <1997.4.10>

第15條 삭제 <1997.4.10>

第15條의2 (私有 未開墾地의 賃借造成등) ①私有 未開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하는 경우의 賃貸借關係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에 의한다.<개정 1999.2.5>

1. 賃貸借期間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契約日부터 5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年으로 한다.

2. 賃貸借期間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1999.2.5>

4.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年間賃借料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造成당시 未開墾地 狀態의 土地價格(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分の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分の 1로 한다.

5. 第4號의 賃借料는 草地造成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삭제 <1999.2.5>

③삭제 <1999.2.5>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期間중에 당해 草地의 所有權이 移轉된 경우에는 그 所有權을 承繼한 者와 賃借人間에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關係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關係에 의하여 私有 未開墾地를 賃借造成하고자 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許可 申請전에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第16條 삭제 <1997.4.10>

第17條 (國·公有地의 貸付) ①國·公有地에 대하여 草地造成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日로부터 15日내에 당해 財産管理廳에 貸付를 申請하여야 하며, 財産管理廳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遲滯없이 貸付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第1項의 貸付期間은 5年으로 한다.

③財産管理廳은 貸付期間이 만료된 경우에는 5年 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財産管理廳은 貸付된 土地를 公益目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貸付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④財産管理廳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草地管理者에게 牧場의 移轉등에 필요한 상당한 期間을 부여하고 당해 草地造成 및 畜舍등 附帶施設을 위하여 投資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한다.<신설 1991.5.31>

⑤草地造成者 또는 草地管理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한 草地에 당해 草地의 이용을 위하여 畜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永久施設物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永久施設物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의 寄附·撤去 또는 原狀回復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設置할 수 있다.<신설 1991.5.31, 2005.8.4>

第18條 (國·公有地의 貸付料)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한 國·公有地의 貸付料는 國有財産法, 地方財政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付 당시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分の 1이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7.4.10, 2005.8.4>

第19條 (土地價格의 評價) 第15條의2第1項第4號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價格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5.1.14>

[전문개정 1997.4.10]

第20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다

음 各號의 許可·認可·承認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4.3.24, 1994.12.22, 1995.12.29, 1997.4.10, 1999.2.8, 2002.12.30, 2005.8.4, 2007.4.6, 2007.4.11>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입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의 指定解除
 5. 삭제 <1997.4.10>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7. 삭제 <1982.12.31>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地域안에서의 土地形質의 變更 등의 許可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4章 草地의 事後管理

第21條 삭제 <2006.9.27>

第21條의2 (草地안에서의 행위제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造成된 草地안에서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土地의 形質變更 및 工作物의 設置
2. 墳墓의 設置
3. 土石의 採取 및 搬出
4. 기타 草地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2.5]

第22條 삭제 <1999.2.5>

第23條 (草地의 轉用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1. 重要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 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草地를 公用 또는 公共用施設의 用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에 갈음하여 市長·郡守와 協議하여야 한다. 協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 ⑥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草地의 轉用을 하고자 하는 者는 代替草地造成費를 「축산법」 제43조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2006.2.21, 2006.9.27, 2007.4.11>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産業施設을 위하여 轉用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에 轉用하는 경우
 3. 農業·畜産業·林業 및 水産業에 필요한 用地로 轉用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 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轉用의 경우

⑦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의 納入基準 및 減免基準과 그 節次 등은 大統領 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2006.9.27>

[전문개정 1991.5.31]

제23조의2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第24條 (草地管理 實態調査) ①市長·郡守는 年 1回 이상 草地의 管理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調査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고 있는 草地에 대하여는 당해 草地를 管理하는 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調査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2006.9.27>

③삭제 <1991.5.31>

第24條의2 (草地로서의 管理가 불가능한 草地에 대한 措置) ①市長·郡守는 草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草地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999.2.5, 2006.9.27>

1.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하지 아니하고 轉用한 草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轉用許可를 받고 轉用한 草地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法令에 의한 事業施行으로 草地利用의 與件이 變化하여 당해 草地를 管理하는 者가 그 管理를 포기한 경우

3. 管理者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草地

4. 草地造成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草地로서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草地

5. 기타 草地의 機能이 상실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한 草地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은 貸付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999.2.5>

③삭제 <1999.2.5>

[본조신설 1991.5.31]

第24條의3 (永久施設物の 撤去 등) ①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한 草地에 永久施設物을 設置한 者는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貸付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이 정하는 期間내에 당해 國·公有地에 設置한 永久施設物을 撤去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財産管理廳은 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없거나 撤去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草地造成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草地의 경우에는 撤去義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9.27>

②撤去義務者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撤去義務를 免除받은 경우 그 永久施設物의 所有權은 그 永久施設物이 國有地에 設置된 때에는 國家에, 公有地에 設置된 때에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義務者가 그 撤去義務期間이 경과하여도 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은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第5章 補則

第25條 삭제 <1999.2.5>

第26條 삭제 <1991.5.31>

第27條 (原狀回復) ①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취소하거나 제 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許可取消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6.9.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의 命을 받은 者가 그 期間내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放置함이 公益上 甚히 有害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廳은 許可取消을 받은 者에 갈음하여 原狀回復을 行하고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당해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에 期間내에 費用을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第27條의2 (草地造成土地의 賣却) ①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地를 貸付한 財産管理廳이 당해 土地를 賣却할 때에는 貸付받은 者에게 優先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賣却價格은 地方財政法 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賣却 당시에 鑑定評價業者가 評價한 隣近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으로 한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81.12.31]

第28條 (權限의 委任) 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市·道知事는 그 委任받은 權限을 農林

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市長·郡守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1.5.31, 1996.8.8>

제29조 (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2006.9.27]

第6章 罰則

第30條 (罰則)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草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그 事實이 확인된 年度의 草地造成單費에 轉用한 部分의 面積(헥타르)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3倍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86.12.31, 1999.2.5, 2002.5.13, 2006.9.27>

第31條 (罰則) 第21條의2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4.10]

第31條의2 삭제 <2006.9.27>

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및 第31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3238호,1980.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의 保全및 利用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農耕地, 多年性植物栽培地 또는 牧草栽培地"를 "農耕地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하고, 同條중 第4號를 削除하며, 同條第7號중 "農作物耕作, 多年性植物栽培 또는 牧草栽培"를 "農作物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로 하고, 第8條중 "多年性植物 또는 牧草"를 "多年性植物"로 하며, 第12條중 "多年性植物, 牧草 또는 觀賞樹"를 "多年性植物 또는 觀賞樹"로 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중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同前) 이 法 施行전에 중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草地를 造成한 者에 대한 貸付는 이 法 施行일에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同前)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중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山林法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第20條第3號의 "山林法 第8條·第62條(第52條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90條"는 1980年 6月 30日까지는 "山林法 第8條·第10條·第24條·第48條 및 林産物團束에 관한法律 第2條와 山林開發法 第10條"로 한다.

②第6條第2項중 "自然公園法"은 1980年 5月 31日까지는 "公園法"으로 한다.

附則 <제3539호,19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農地擴大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11號중 "草地法 第10條"를 "草地法 第5條"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對象地選定申請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草地造成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附則(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7號를 削除한다.

⑧내지 ⑩省略

第7條 省略

附則 <제3886호,19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賃貸借期間 및 賃借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團地造成地區에 속하지 아니한 私有未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한 경우의 당해 賃貸借의 期間(연장된 賃貸借의 期間을 포함한다) 및 賃借料에 관하여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4條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賃貸借期間의 만료시까지의 종전의 契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附則(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工業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한다.

⑥ 및 ⑦省略

第8條 省略

附則(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獎勵地區"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農工團地"로 한다.

⑥및 ⑦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4378호,1991.5.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중 第10號를 第11號로, 第9號를 第10號로 하고, 同條에 第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9.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의 納入金
第46條第3項중 "第10號의"를 "第11號의"로 한다.

附則(축산법) <제4557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本文중 "畜産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振興基金"을 "畜産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으로 한다.

③및 ④省略

附則(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4號중 "砂防事業法 第20條의2"를 "砂防事業法 第20條"로 한다.

⑨및 ⑩省略

附則(농지법) <제4817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⑦내지 ⑨省略

第16條 省略

附則(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①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地方産業團地"로 한다.

第20條第8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⑫내지 ⑭省略

第7條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50>省略

<51>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 第3條第2項, 第5條第1項第1號, 第13條第2項, 第23條第1項第1號, 同條第2項 및 第28條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의2第1項·第6項, 第8條第4號, 第12條第5項, 第21條第3項 및 第23條第3項第4號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第4條중 "農林水産部"를 각각 "農林部"로 한다.

<52>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제5324호,1997.4.10>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廳이 행한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는 이 법에 의한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로 본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 및 草地의 轉用許可가 申請되어 그 許可節次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原狀回復에 대한 經過措置) 종전의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廳의 原狀回復에 관한 命令은 이 법에 의한 市長·郡守가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賃借料 등의 算定을 위한 土地價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賃借하거나 貸付받은 土地의 賃借料 또는 貸付料의 算定の 기준이 되는 土地價格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草地法 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日부터 1998年 4月 10일까지는 草地法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중 "市長·郡守"는 "許可廳"으로 본다.

②내지 ⑧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第174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4月 11일부터...<省略>...施行한다.

附則(畜産法) <제5720호,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本文중 "畜産法 第53條"를 "畜産法 第35條"로 한다.

②생략

第7條 생략

附則 <제5763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法律의 改正) ①酪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項중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草地造成地區"를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로 한다.

②農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 本文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同項第9號중 "草地轉用の 許可"를 "草地轉用の 許可 또는 申告"로 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전에 私有未開墾地를 賃借하여 造成한 草地를 이 법 施行후 최초로 도래하는 賃貸借契約 終了日 이전에 土地所有者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草地 造成 및 畜舍 등 附帶施設을 위하여 投資된 費用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법 施行전에 代理管理者로 지정된 者의 土地使用料 및 施設物使用料 등에 대하여는 이 법 施行후 도래되는 契約終了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8>생략

<19>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號중 "河川法 第25條"를 "河川法 第33條"로, "同法 第45條"를 "同法 第40條"로 한다.

<20>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28>생략

<29>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30>내지 <41>생략

第5條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地價公示및土地 등의評價에 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草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山林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草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草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第23條第3項 내지 齊4項"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畜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第23條第3項"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國家産業團地·地方産業團地·農工團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라 함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라 함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매년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배제) 제조업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수입 및 공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사료 등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보조사료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사료의 용도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배합사료의 원료용 또는 실수요자인 양축가용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3.31>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 ①제조업자중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은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하며, 원료·제품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다.

③사료안전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관리과정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그 사실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고, 당해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의 조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2항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료안전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직무·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료의 공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어류용 배합사료에 대한 사료공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때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제12조 (사료의 표시기준 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 ②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사료의 첨가·혼합제한 등)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품질을 저하하게 하거나 당해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 및 그 제한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당해 사료에 혼입되거나 당해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사료공정서의 작성·보급) 농림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표시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첨가·혼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7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수입업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수급안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 인정기관이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같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가품질검사)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절차 및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사료검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 그 지정 및 지정취소의 고시,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료의 재검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결과 당해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

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폐기 등의 조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결과 당해 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료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그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당해 사료의 폐기·회수 또는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성분등록된 사항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부족한 때
2.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제23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입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성분등록된 사항과 다른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한 때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4조 (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 (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사료검정기관·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기계 및 장비의 개선·보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성분등록을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제27조 (증표의 제시) 제17조·제19조·제22조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를 용도의료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사용 또는 보존한 자
5.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제한한 함량을 위반한 자
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제한한 혼합의 제한에 위반한 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과실로 제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시·도지사에게 하지 아니한 자
3.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445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제조업 또는 성분등록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성분등록의 신청을 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5721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진도개 固有의 血統을 보존하고 그 增殖 및 보급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高揚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진도개"라 함은 珍島郡이 原產地인 개로서 珍島郡守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진도개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정하여 告示하는 血統 및 標準體型을 갖춘 개를 말한다.

第3條 (진도개보호計劃의 수립·施行등) ① 珍島郡守(이하 "郡守"라 한다)는 진도개의 血統을 보존하기 위한 試驗·研究와 보호·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計劃을 綜合的으로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4條 (진도개보호지구의 設定) 진도개의 血統保存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珍島郡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第5條 (진도개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 진도개의 血統 및 標準體型의 設定등 진도개의 血統을 보존하기 위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郡守 소속하에 진도개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의 機能·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珍島郡 條例(이하 "條例"라 한다)로 정한다.

第6條 (飼育實態調査) 郡守는 보호지구안에서 飼育되는 개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그 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9]

第7條 (審査) ① 보호지구안에서 개를 所有하거나 관리하는 者(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는 郡守가 委囑하는 者로부터 條例가 정하는 期限내에 血統 및 標準體型에 관한 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不妊施術 또는 去勢를 하여 繁殖能力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9.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방법·기준·절차 및 委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郡守가 정하여 告示한다.

第8條 (審査結果의 처리) ① 郡守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血統 및 標準體型을 갖추고 있다고 判定된 개에 대하여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에 通報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判定된 개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期限내에 그 所有者등으로 하여금 去勢·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외의 地域으로 搬出하게 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勢·淘汰 또는 搬出命令을 받은 者는 關係公務員 또는 警察公務員의 참여하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參與者는 그 結果를 郡守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削除 <1999.1.29>

④削除 <1999.1.29>

⑤削除 <1999.1.29>

第9條 (登錄) ①郡守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血統 및 標準體型을 갖추고 있다고 判定된 개의 所有者등에게 이를 畜産業協同組合法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組合(이하 "組合" 이라 한다)에 登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②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登錄臺帳을 비치하고 所有者등에게 登錄證을 교부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登錄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標識를 附着하여야 한다.

③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登錄한 내용의 證명을 받고자 하는 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臺帳·登錄證 및 標識등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10條 (血統의 보존) ①진도개의 所有者등은 진도개의 血統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되지 아니한 개의 精液을 人工授精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9.1.29>

②郡守는 登錄한 진도개중 種子用 개를 선정하여 그 所有者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郡守는 組合·진도개關聯團體 또는 보호지구안의 飼育者중 專門飼育技術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가 運營하는 飼育場을 進도개示範飼育場(이하 "示範飼育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用 개의 선정기준과 示範飼育場의 지정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郡守가 정하여 告示한다.

⑤郡守는 보호지구밖으로 搬出된 進도개의 飼育者 또는 進도개關聯團體에 대하여 進도개의 血統을 보존하기 위한 指導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11條 (搬出入의 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구안에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進도개의 개를 搬入할 수 없다. 다만, 進도개에 관한 試驗·研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進도개로서의 血統과 標準體型을 갖춘 개에 한한다)와 不妊施術 또는 去勢를 하여 繁殖能力이 없는 개에 대하여는 郡守의 許可를 받아 이를 搬入할 수 있다.<改正 1999.1.29>

②누구든지 郡守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進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搬出할 수 없다.

③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進도개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用 개

2.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用 개로부터 生産된 개중 血統을 보존하기 위하여 搬

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郡守가 정하여 告示한다.

第12條 (搬出入의 檢査) 郡守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搬出入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지구를 出入하는 船舶·車輛에 대하여 檢査를 하거나 乘客 또는 往來者의 所持物에 대하여 그 內容物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9.1.29]

第13條 (證票의 제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를 하는 者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는 者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者

第14條 削除 <1999.1.29>

第15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1999.1.29>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去勢·淘汰 또는 搬出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안으로 진도개의 개를 搬入한 者
3.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搬出한 者
4.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內容物의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9.1.29>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
2. 削除 <1999.1.29>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진도개의 血統登錄이 되지 아니한 개의 精液을 人工授精한 者

4. 削除 <1999.1.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郡守가 賦課·徵收한다.<改正 1999.1.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9.1.29>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9.1.29>

附則 <제5347호,1997.8.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받은 개는 이 法에 의하여 審査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珍島犬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한 진도개로 본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721호,19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動物保護法

[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2호], 시행일 2008.1.27,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라·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⑤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동물의 수술) 거세·제각(除角)·단미(斷尾)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다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月齡)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 (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적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제19조 (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21조 (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⑦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282호, 2007.1.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를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7호], 시행일 2008.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가성우역(假性牛疫)·블루팅병·리프트계곡열·립프스킨병·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아프리카마역(馬疫)·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돼지수포병(水疱病)·뉴캐슬병·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나.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브루셀라병·결핵병(結核病)·요네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텃센병·스크래피·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구역(구疫)·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동부말뇌염(腦炎)·서부말뇌염·베네주엘라말뇌염·추백리(雛白痢)·가금(家禽)티프스·가금콜레라·광견병(狂犬病)·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다. 제3종가축전염병 :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腐저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3. "검역시행장"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당해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하여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이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①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7.8.3>

②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가축방역교육)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가축방역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가축방역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가축방역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권한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제7조제4항의 규정은 가축방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가축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록·임상검사 및 검사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⑤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농림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

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③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12조 (병성감정 등) ①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8.3>

⑤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12조의2 (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요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7.8.3]

제13조 (역학조사) ①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개정 2007.8.3>)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검사·주사·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면역요법·투약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6조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지역, 대상가축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추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 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대하여 소득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하는 조치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당해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살처분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

리카페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1조 (도태의 권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 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①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물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물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매물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매물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들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들은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소유자들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스스로 소각·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 (발굴의 금지) ①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①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유자들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6조 (항해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들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8조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의 규정은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28조의2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은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검역관은 수의사이어야 한다.

③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검역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및 포장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31조 (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32조 (수입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⑤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신설 2007.8.3>

제33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지 못한다. <개정 2007.8.3>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사양(飼養)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8.3>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 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①지정검역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수입검역)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적하목록의 제출 <개정 2007.8.3>) ①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전 또는 도착 즉시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검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39조 (우편물로서의 수입) ①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가 그 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된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당해 우편물을 지체없이 검역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은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체국 직원의 참여하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표지를 한다.

제41조 (수출검역 등) ①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 등에 의할 수 있다.

④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행한 검사·투약·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검역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검역시행장) ①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검역물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을 때 또는 국내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③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가공장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⑥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8.3>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①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양(飼養)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때

④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득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⑤검역시행장의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3>

⑥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명하거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검역관은 제36조·제39조와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34조제2항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8.3>

제45조 (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 확인 등) ①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6조 (수수료)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신청자 및 제36조제1항·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당해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 (보상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품목록·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②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49조 (생계안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7조·제20조·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 (보고)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등, 가축전염성 질병병원체의 소유자등,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농림부장관의 지시)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외의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개정 2005.3.31>)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5장 벌칙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2.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6항에 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영업자

4.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을 제외한다)·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의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음식물처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장 삭제 <2007.8.3>

제61조 삭제 <2007.8.3>

제62조 삭제 <2007.8.3>

제63조 삭제 <2007.8.3>

제64조 삭제 <2007.8.3>

부칙 <제681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보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사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방역본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방역본부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 의는 방역본부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 으로 한다.

제4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 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22조제2항·제23조·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방법 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34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 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8587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의사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81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獸醫師의 機能과 獸醫業務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발전과 公衆衛生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81.4.13, 1994.3.24, 1996.8.8, 1999.3.31>

1. "獸醫師"라 함은 獸醫業務를 擔當하는 者로서 農林部長官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2. "動物"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家禽·꿀벌·魚貝類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3. "動物診療業"이라 함은 動物을 診療(動物의 死體에 대한 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動物의 疾病을 豫防하는 業을 말한다.
4. "動物病院"이라 함은 動物診療業을 行하는 場所로서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診療機關을 말한다.

第3條 (職務)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 및 保健과 畜産物의 衛生檢査에 종사함을 그 職務로 한다.<改正 1994.3.24>

第2章 獸醫師

第4條 (免許) 獸醫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合格한 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6.8.8>
[全文改正 1994.3.24]

第5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獸醫師가 될 수 없다. <개정 1994.3.24, 1999.3.31, 2005.5.31, 2007.1.3>

1. 정신질환자
2. 削除 <1994.3.24>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麻藥·大麻 기타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로서 獸醫師의 職務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5. 이 법, 家畜傳染病豫防法, 畜産物加工處理法, 動物保護法, 醫療法, 藥事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 아니한 者

第6條 (免許의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한 때에는 免許에 關한 事項을 免許臺帳에 登錄하고 그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1994.3.24, 19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證은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의 交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4.3.24, 1996.8.8>

第7條 削除 <1994.3.24>

第8條 (獸醫師國家試驗) ①獸醫師國家試驗은 每年 農林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改正 1994.3.24, 1996.8.8>

②獸醫師國家試驗은 動物의 診療에 필요한 獸醫學과 獸醫師로서 갖추어야 할 公衆衛生에 관한 知識 및 機能에 대하여 행한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의 관리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新設 1994.3.24, 1996.8.8>

④獸醫師國家試驗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應試資格)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 者는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개정 1994.3.24, 1996.8.8, 1999.3.31, 2005.5.31>

1. 獸醫學을 專攻하는 大學(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의 獸醫學科를 포함한다)을 卒業하고 獸醫學士學位를 받은 者

2. 外國에서 第1號에 해당하는 학교(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卒業하고 外國의 獸醫師免許를 받은 者

3. 削除 <1999.3.31>

第9條의2 (受驗者의 부정행위) ①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獸醫師國家試驗에서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그 合格을 無效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4.3.24]

第10條 (無免許診療行爲의 금지) 獸醫師가 아니면 動物의 診療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規定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規定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全文改正 1994.3.24]

第11條 (診療의 拒否금지) 動物診療業을 營爲하는 獸醫師는 動物의 診療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 (診斷書 등) ①獸醫師는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하지 아니하고는 診斷書나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交付하지 못하며 劇·毒藥 및 生物學的 製劑의 處方·投藥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중 斃死한 경우에 交付하는 斃死診斷書는 다른 獸醫師로부터 交付받을 수 있다.

③獸醫師는 그가 診療 또는 檢案한 動物에 대한 診斷書·檢案書 또는 證明書의 交付要求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3.31>

第13條 (診療簿 및 檢案簿) ①獸醫師는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備置하고 診療 또는 檢案한 事項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진료부 또는 檢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진료부 또는 檢안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第14條 削除 <1999.3.31>

第15條 (診療技術의 保護) 獸醫師의 診療行爲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干涉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器具 등의 優先供給) 獸醫師는 診療行爲에 필요한 器具·藥品 其他 施設 및 材料를 優先的으로 供給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3章 動物病院

第17條 (開設) ①獸醫師는 이 法에 의한 動物病院을 開設하지 아니하고는 動物診療業을 行할 수 없다.

②動物病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가 아니면 이를 開設할 수 없다.<改正 1994.3.24>

1. 獸醫師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動物診療業을 目的으로 設立한 法人
4. 獸醫學을 專攻하는 大學(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을 포함한다)
5.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

③第2項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動物病院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81.4.13, 1994.3.24, 1996.8.8, 1997.12.13, 1999.3.31, 2001.12.31>

④削除 <1999.3.31>

⑤動物病院의 施設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의2 (動物病院의 管理義務) ①削除 <1999.3.31>

②動物病院開設者は 자신이 그 動物病院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動物病院開設者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動物病院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動物病院에 종사하는 獸醫師 중에서 動物病院을 관리할 者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6.8.8, 1999.3.31>

③削除 <1999.3.31>

[本條新設 1994.3.24]

第18條 (休業·廢業의 申告) 動物病院의 開設者は 動物診療業을 休業하거나 廢業한 때에는 遲滯없이 管轄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30日 이내의 休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2001.12.31>

第19條 削除 <1999.3.31>

第20條 削除 <1999.2.5>

第21條 (公獸醫) ①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獸醫師,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獸醫師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獸醫師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獸醫師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1999.3.31, 2001.12.31, 2005.5.31>

1. 動物의 診療
2. 動物疾病의 調査研究
3. 動物傳染病의 豫察·예방
4. 動物의 健康診斷
5. 動物의 保健增進과 環境衛生管理
6. 기타 動物診療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指示하는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物診療業務를 위촉받은 獸醫師(이하 "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指揮監督을 받아 委囑받은 業務를 行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1.12.31, 2005.5.31>

③삭제 <2001.12.31>

제22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①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第4章 獸醫師會

第23條 (設立) ①獸醫師는 獸醫業務의 適正과 獸醫學術의 研究·普及 및 獸醫師의 倫理確立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會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1994.3.24, 1999.3.31>

②獸醫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削除 <1999.3.31>

第24條 (設立認可) 獸醫師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 기타 필요한 書類를 農林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4.3.24, 1996.8.8>

第25條 (支部) ①獸醫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1994.3.24, 1997.12.13, 1999.3.31>

②削除 <1999.3.31>

第26條 (民法의 準用) 獸醫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7條 (委託<改正 1999.3.31>) ①削除 <1999.3.31>

②農林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獸醫 및 公衆衛生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會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新設 1994.3.24, 1996.8.8, 2001.12.31>

第28條 削除 <1999.3.31>

第29條 (經費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動物 保健向上과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獸醫師會의 운영 또는 業務遂行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94.3.24>

第5章 監督

第30條 (指導와 命令)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動物의 診療施策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公衆衛生上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憂慮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獸醫師 또는 動物病院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5.5.31>

②保健福祉部長官은 人獸共通傳染病의 防疫과 診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長官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1997.12.13>

제31조 (보고 및 업무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第32條 (免許의 取消 및 免許效力의 停止) ①農林部長官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削除 <1999.3.31>

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效力의 停止기간중에 獸醫業務를 행하거나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3회 이상 免許效力의 停止처분을 받은 때

4. 免許證을 貸與한 때

②農林部長官은 獸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許의 效力을 停止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5.5.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투약한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을 거부한 때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5.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6.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免許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 取消의 원인이 된 사유가 消滅된 때

2. 削除 <1999.3.31>

3.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免許가 取消된 후 2년이 경과한 때

④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효력정지기간중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전문개정 1994.3.24]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1994.3.24>]

第33條 (動物診療業의 停止<개정 1999.3.31>) 시장·군수는 動物病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動物診療業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改正 1981.4.13, 1994.3.24, 1996.8.8, 1999.3.31, 2001.12.31>

1. 開設申告를 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정당한 理由없이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한 때

2. 無資格者로 하여금 診療行爲를 한 事實이 있을 때

3. 第17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 또는 第18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休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4. 施設基準에 未達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1994.3.24>]

第6章 補則

第34條 (研修教育) ①農林部長官은 獸醫師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研修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改正 1996.8.8>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修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부담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修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6.8.8>

[本條新設 1994.3.24]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1994.3.24>]

第35條 削除 <1999.3.31>

第36條 (聽聞) 농림부장관은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9.3.31]

第37條 (權限委任) 農林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4.3.24, 1996.8.8, 2001.12.31>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1994.3.24>]

第38條 削除 <1999.3.31>

第7章 罰則

第3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獸醫師免許證을 他人에게 貸與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을 診療한 者

[全文改正 1994.3.24]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1994.3.24>]

第40條 削除 <1999.3.31>

第4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신설 1999.3.31>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正當한 理由없이 動物의 診療要求를 거부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을 開設하지 아니하고 動物診療業을 한 者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圓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3.31>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자기가 診療 또는 檢案을 하지 아니하고 診斷書나 檢案書 또는 證明書를 교부하거나 劇·毒藥 또는 生物學的 製劑를 處方·投藥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診療簿 또는 檢案簿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診療 또는 檢案한 사항을 記錄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1999.3.31>
 4. 第1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開設者 자신이 그 動物病院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動物病院을 관리하게 할 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動物病院의 休業·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正當한 이유없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研修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
 -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改正 1996.8.8, 1999.3.31, 2001.12.31>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 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9.3.31>
 -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3.31>
- [本條新設 1994.3.24]

附則 <제2739호,1974.12.26>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後 6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獸醫師免許를 取得한 者는 이 법에 의하여 獸醫師免許를 取得한 者로 보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獸醫師資格을 가진 者는 이 법 施行日로부터 6月 이내에 獸醫師免許申請을 하여야 하며 그 期間內에 獸醫師免許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獸醫師의 資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同前) 이 법 施行당시 獸醫師豫備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법에 의한 獸醫師國家試驗의 應試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同前) 이 법 施行당시 家畜의 診療業務를 開業하고 있는 者는 이 법에 의한 動物病院의 開設登錄 또는 開設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다만, 이 법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未達되는 때에는 이 법 施行日로부터 6月 이내에 이 법에 의한 施設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違反되는 때에는 道知事는 開設登錄 또는 開設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 ⑤(同前) 이 법 施行당시 公獸醫로 任命된 者는 이 법에 의한 公獸醫로 본다.
- ⑥(同前) 이 법 施行당시 中央獸醫師會는 이 법에 의한 獸醫師會로 본다.
- ⑦(同前) 이 법 施行당시 中央獸醫師會의 代表者는 이 법 施行日로부터 3月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定款을 變更하고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認許可등의整備를위한行政書士法등の一部改正法律)

<제3441호,1981.4.13>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 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獸醫師法の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改正전의 獸醫師法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物病院의 登錄을 한 者는 이 법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登錄申請중에 있는 者도 또한 같다.

②이 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제4747호,1994.3.24>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獸醫師試驗應試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第9條第1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법 施行전에 大學에 入學한 者가 그 大學에서 獸醫學을 專攻하고 獸醫學士學位를 받은 때에는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第3條(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道知事의 許可를 받고 動物病院을 開設한 大學附設動物病院은 이 법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다른 法律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獸醫師法の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153호,1996.8.8>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7>省略

<48>獸醫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第4條, 第6條第1項, 第8條第1項·第3項, 第9條第2號·第3號, 第14條, 第21條第1項 本文·第6號, 同條第2項,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30條, 第31條第1項, 第32條, 第34條第1項, 第36條, 第37條 및 第41條第2項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 第6條第3項, 第14條, 第17條第3項·第4項, 第17條의2第2項 但書, 第20條, 第21條第3項, 第32條第1項第3號, 同條第2項 本文, 第33條 本文 및 第34條第3項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49>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行政節次法の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 月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附則(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제5815호,1999.2.5>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 ②省略

附則 <제5953호,1999.3.31>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②(開設許可를 받은 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の 許可를 받아 動物病院을 開設한 非營利法人은 第17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 ③(獸醫師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獸醫師會는 이 법에 의한 獸醫師會로 본다.
-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 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外國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제6570호,2001.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기르는어업육성법) <제6611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規定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規定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規定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7546호,2005.5.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
-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부칙 <제8181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4호]

第1章 總則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1. "家畜"이라 함은 소·말·羊(염소 등 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飼育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動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2. "畜産物"이라 함은 식육·포장육·原乳·食用卵·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品을 말한다.

3. "食肉"이라 함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家畜의 枝肉·精肉·內臟 기타 部分을 말한다.

3의2.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原乳"라 함은 판매 또는 販賣를 위한 처리·加工을 目的으로 하는 搾乳狀態의 牛乳와 羊乳를 말한다.

5. "食用卵"이라 함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集乳"라 함은 原乳를 收集·濾過·冷却 또는 貯藏하는 것을 말한다.

7. "食肉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햄類·소시지類·베이컨類·乾燥貯藏肉類·양념肉類, 기타 食肉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乳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牛乳類·低脂肪牛乳類·粉乳類·醱酵乳類·버터類·치즈類, 기타 原乳등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알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卵黃液·卵白液·全卵粉, 기타 알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作業場"이라 함은 屠畜場·集乳場·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畜産物保管場을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畜産物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개정 2006.3.24>

第2章 畜産物등의 기준·規格 및 표시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 ③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第4條 (畜産物의 기준 및 規格) ①家畜의 屠殺·처리 및 集乳의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加工基準"이라 한다), 畜産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이하 "成分規格"이라 한다), 畜産物의 衛生等級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다만, 畜産物에 들어있는 抗生物質, 農藥등 有害性 物質의 殘留許容基準과 畜産物에 사용하는 化學的 合成品등 添加物의 사용기준은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農林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畜産物에 대하여는 그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로 하여금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그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전까지 限時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⑤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및 畜産物의 加工등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5條 (容器등의 規格등<개정 1999.2.5>) ①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衛生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포장 또는 檢印用色素(이하"容器등"이라 한다)에 관한 規格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등이 정하여진 경우 作業場에서는 그 規格등에 적합한 容器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第6條 (畜産物의 표시기준<개정 1999.2.5>) ①農林部長官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畜産物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第3章 畜産物의 衛生管理

第7條 (家畜의 屠殺등) ①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畜産物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作業場에서 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1. 負傷·難産·産褥麻痺·急性鼓脹症등으로 인하여 家畜을 즉시 屠殺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學術研究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4.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屠殺·처리한 食肉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用으로 사용하거나 販賣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6.3.24>

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⑥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6.3.24>

⑦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⑧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9>

⑨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6.3.24>

⑩농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의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第10條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家畜에 대하여 強制로 물을 먹이거나 食肉에 물을 注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重量 또는 容量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第4章 檢査

第11條 (家畜의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 屠殺·처리하는 家畜에 대하여 檢査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경우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自體檢査員(이하 "自體檢査員"이라 한다)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9>

②市·道知事는 檢査官으로 하여금 搾乳하는 소 또는 羊에 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搾乳하는 소 또는 羊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畜産物의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 처리하는 食肉에 대하여 檢査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食肉의 경우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集乳業의 營業者는 集乳하는 原乳에 대하여 檢査官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營業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④市·道知事는 裝備·施設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作業場에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에 檢査를 委託하게 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⑥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제12조의2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의 規定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결과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등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12조의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의 規定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영업자에게 그 재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통보내용 및 통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第13條 (검사관과 自體檢査員<개정 2001.12.31>)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이 法에 의한 檢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의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1.12.31>

②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 해당 營業者는 이 法에 의한 檢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소속 獸醫師중에서 自體檢査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검사관 및 自體檢査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員을 지정한 營業者는 自體檢査員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檢査補助員) ①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②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場의 許可를

받은 者는 자체검사원의 檢査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補助員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補助員의 資格·임무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第15條 (輸入畜産物の 申告等) ①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畜産物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を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合格表示) 검사관·自體檢査員 또는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결과 檢査에 合格한 畜産物(原乳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格表示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17條 (未檢査品の 搬出禁止)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畜産物(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作業場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檢査不合格品の 처리) 營業者 또는 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한 者는 第11條·第12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家畜 또는 畜産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第19條 (出入·檢査·收去)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로 하여금 畜産物의 檢査結果 및 輸出入實績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營業場에 出入하여 畜産物·施設·書類 또는 作業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作業場·畜産物運搬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物販賣業을 제외한 그 이후의 販賣·流通段階에 있는 畜産物에 대한 衛生檢査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행한다. <개정 1998.2.28, 1999.2.5, 2001.12.31, 2004.1.29>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未檢査品을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所, 食品接客業所 또는 集團給食所에 出入하여 未檢査品の 처리·加工·사용·보관·運搬·陳列 또는 販賣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收去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第20條 (畜産物衛生檢査機關) ①農林部長官은 第4條第3項, 第12條, 第15條第2項 또는 第19

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人力 및 施設을 갖춘 機關등을 畜産物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4. 검사업무정지기간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①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그 밖의 축산물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해촉·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第5章 營業의 許可 및 申告등

第21條 (營業의 종류 및 施設基準)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は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屠畜業
2. 集乳業
3. 畜産物加工業
- 3의2. 食육포장처리업
4. 畜産物保管業
5. 畜産物運搬業
6. 畜産物販賣業
7. 삭제 <1999.2.5>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細部種類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3.24>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6.3.24>

1. 당해 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場所에서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5.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許可를 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 許可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第23條 (條件附 許可 및 조건이행의 申告)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

다. <개정 2001.12.31>

第24條 (營業의 申告) ①第21條第1項第5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第25條 (品目製造報告)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畜産物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때에는 그 品目の 製造方法說明書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2006.3.24>

第26條 (營業의 承繼) ①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하 "讓受人등"이라 한다)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6.3.24>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30日 이내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第2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7條 (許可의 取消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1.12.31, 2006.3.24, 2007.4.11>

1.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第3項, 第13條第2項·第4項, 第14條第1項, 第17條, 第18條 第22條第4項, 第25條, 第29條第2項·第3項, 第30條第2項·第3項, 第31條, 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22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第22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第35條,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7.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月이상 休業하는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效果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年間 讓受人등에게 承繼되며, 처분의 節次가 進行중인 때에는 讓受人등에 대하여 처분의 節次를 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등이 讓受·相續 또는 合併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參照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 (課徵金處分)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7條第1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그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에 相當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9조제2항·第17條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第29條 (健康診斷) ①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으로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과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疾病의 種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0條 (衛生教育) ①제27조 및 제28조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營業者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營業者·종업원과 自體檢査員은 衛生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教育을 받지 아니한 營業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 또는 自體檢査員으로서 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檢査業務 또는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을 한 후 또는 檢査業務나 營業에 종사한 후 그 教育을 받을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의 實施機關·實施費用·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1條 (營業者등의 준수사항) ①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營業者는 正當한 사유없이 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의 要求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1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第32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畜産物의 명칭·製造方法·成分·營養價 및 品質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 (販賣등의 금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輸入·보관·運搬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4.1.29>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人體의 健康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病原性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 사유로 人體의 健康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合格表示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처리·加工 또는 製造한 것

9.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 食品接客業 또는 集團給食所의 營業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運搬 또는 陳列한 때에는 당해 營業의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에 대하여 그 營業許可의 取消, 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是正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2006.3.24>

제33조의2 (위해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국내의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第6章 監督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第35條 (施設改修)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營業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

第36條 (押留·폐기 또는 回收)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檢査관 또는 제20조의2의 規定에 따라 임명된 畜産물위생감시원 (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畜産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用途·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2004.1.29>

1. 第4條第5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畜産物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畜産物

5. 삭제 <1999.2.5>

6.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 당해 畜産物을 回收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畜産物의 原料·製造方法·成分 또는 그 配合比率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回收·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檢査관 또는 畜産물위생감시원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第37條 (公表)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者에게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閉鎖措置)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자, 第24조제2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하거나 營業장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營業을 하는 자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章 補則

第39條 (褒賞金) 農林部長官은 제4조제5항·제7조제1항·제10조·제22조제1항·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食肉을 가공·포장·사용·보관·運搬·陳列 또는 販賣한 者를 關係行政機關 또는 搜查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하거나 檢擧한 者 및 檢擧에 협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第40條 (補助金)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畜産物의 衛生的인 처리·가공·포장 및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營業者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축산물의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

제40조의2 (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가축외의 동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당해 동물과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의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신청절차·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第41條 (手數料) ①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와 검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徵收하는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②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42條 (公衆衛生上 危害時의 措置) 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청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4.1.29]

第44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등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등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第8章 罰則

第45條 (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행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장에서 그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행위를 한 자
4.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수입신

고를 한 자

6.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밖으로 반출한 자
7.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 7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 9의2.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체검사원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합격표시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를 한 자
4.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4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인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인 業務에 관하여 第4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7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1.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3.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

한 자

5. 삭제 <2006.3.24>

5의2.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5의3.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8.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9.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10.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또는 자체 검사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1.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3.2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44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特例) 종전의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의2의 規定은 이 법 施行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畜産物衛生處理法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許可등 行政機關의 행위와 각종 申告등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屠畜業 또는 集乳業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場의 設置許可(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한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條件附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作業場의 設置許可 및 竣工檢査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한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施行후 6월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포장과 그 原材料 및 檢印用色素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한 容器등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5條 (畜産物加工業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製造·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법에 의한 食肉加工品·乳加工品 또는 乳加工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保存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법에 의한 畜産物을 보관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保管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6條 (畜産物運搬業등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運搬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법에 의한 畜産物을 運搬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運搬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肉販賣業·食肉副産物專門販賣業·牛乳類販賣業 또는 食品等輸入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법에 의한 畜産物을 販賣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販賣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포장類 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법에 의한 容器등을 製造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容器等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7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食品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動物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號중 "畜産物衛生處理法"을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한다.

②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4條"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로 한다.

③保健環境研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2號중 "畜産物衛生處理法"을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한다.

④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라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場

⑤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4項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을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으로 한다.

第55條第2項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7號"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畜産物衛生處理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第18項은 1998年 6月 14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17>省略

<18>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 但書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19> 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附則(畜産法) <제5720호,1999.1.29>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第7號 및 第8號로 하고, 同項에 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した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第7條 省略

附則 <제5765호,1999.2.5>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34> 省略

<35>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但書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6> 내지 <78> 省略

第4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제6192호,2000.1.21>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571호,2001.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 제7조 생략

부칙 <제7134호,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부칙 <제7915호,2006.3.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 ③(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9조 생략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2006.3.24 법률 제791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익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수의사"라 함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공익수의사의 신분) ①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익수의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5조 (명단통보 등) ①농림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종사명령 등)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검역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수의사를 소집하여 가축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의무복무기간) ①공익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①공익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 안의 긴급방역 등 공익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익수의사의 복무) ①공익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0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

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공익수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다.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 또는 동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분조치 통보) 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공익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공익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수 등) ①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복무감독)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제18조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등) ①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수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공익수의사의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공익수의사 배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7914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①가축분뇨 관리정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공무원·전문가·생산자단체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 및 환경부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①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이하 "환경친화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4.11>

1. 「축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정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농림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농림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10조 (가축분뇨처리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당해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축분뇨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 중에는 제17조제4항·제5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퇴비·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가 가축분뇨처리의 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류수수질을 측정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거나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④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당해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 ①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외의 준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9.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6.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당해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

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营业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37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시설관리업자에게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장부의 기록·보존)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

제40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국고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6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3.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2.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9.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1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5.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

16.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7.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8.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5.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5.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8.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9.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15.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010호, 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처리시설로 본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동법 제2조제8호의2의 퇴비화시설 및 동조제8호의3의 액비화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화시설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5조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배출부과금 및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畜産廢水"를 "가축분뇨"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⑧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처리에관한法律 第24條의2"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⑨土壤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畜産廢水を 전량 公共處理施設에 유입하거나"를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⑪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 바목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및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처리에관한法律 第29條

"를 "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 「축산법」 제20조의5"를 "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 「수질환경보전법」 "을 각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V. 농 촌 개 발



여 백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시행일 2009.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한국농촌공사를 設立하고 農地管理基金을 設置하여 農漁村整備事業을 施行하고 農業基盤施設을 종합관리하며 農業人의 營農規模適正化를 촉진함으로써 農業生産性を 增進시키고, 農漁村의 經濟·社會的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2006.12.30, 2007.4.11>

1. "農業基盤施設"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規定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施設을 말한다.
2. "公社管理地域"이라 함은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農業基盤施設의 敷地 및 農業基盤施設로부터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는 地域을 말한다.
3. "農地"라 함은 「농지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말한다.
4. "農業人"이라 함은 「농지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을 말한다.
5. "農業法人"이라 함은 「농지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業法人을 말한다.
6. "專業農業人"이라 함은 農業發展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農地와 農業勞動力을 보유한 農業人을 말한다.
7.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이라 함은 農業基盤施設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施設을 이용하거나 당해 施設에 의하여 用水를 供給받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8. "長期債"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가 農業基盤整備事業을 위하여 政府 一般會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融資받아 생긴 債務과 國際金融機構(外國政府 基金을 포함한다)로부터 借款을 받아 생긴 債務를 말한다.

第2章 한국농촌공사 <개정 2005.12.29>

第1節 設立

第3條 (設立)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개정 2005.12.29>

第4條 (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5條 (事務所등) ①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公社는 그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公社는 分事務所에 地域農業人의 代表로 구성되는 運營代議員會를 두며, 主事務所에 運營代議員會의 代表로 구성되는 諮問機構를 둔다. 運營代議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公社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6條 (資本金 및 出資) ①公社의 資本金은 5兆원으로 하되, 國家가 그 全額을 出資한다.

②國家는 公社의 사업에 필요한 動産 또는 不動産을 公社에 現物로 出資할 수 있다.

③國家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造成한 土地 또는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을 公社에 出資할 수 있다.

第7條 (登記) ①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分事務所의 設置·移轉· 변경등 公社의 登記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 (代表權의 제한)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 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第9條 (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關한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行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2節 사업

第10條 (사업) ①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14, 2005.12.29>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農漁村整備事業(農業基盤整備事業地區안에서의 河川整備事業을 포함한다)

2.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關한 사업

3. 農漁村用水 및 地下水資源의 開發·이용 및 보전·관리에 關한 사업

4. 農地의 造成 및 利用增進事業, 營農規模適正化를 위한 農地의 賣買·賃貸借·交換·分合에 關한 사업 및 農地등의 再開發事業

4의2.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關한 정보의 제공,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5. 農漁村의 道路의 開發 및 整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關한 법률」에 의한 複合團地의 造成, 「산업입지 및 개발에 關한 법률」에 의한 農工團地의 開發등 農漁村地域開發事業

6. 農漁村의 水質汚染防止施設·下水道施設 및 汚水·廢水處理施設의 設置 및 지원사업

6의2. 土壤汚染에 關한 조사·평가 및 汚染土壤改善事業

7. 제1호 내지 제6호의2의 사업을 위한 試驗·研究·기술개발·조사·測量·換地·設計·工事監理 및 施設物安全診斷事業

8. 海外農業開發 및 技術用役事業

9.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기타의 者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10.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施行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公社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第11條 (公社管理地域의 設定·관리) ①公社는 公社管理地域을 設定·관리하여야 한다.

②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을 設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管理豫定地域을 20日 이상 公告하고 이를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을 設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公社管理地域을 管轄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을 設定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利害關係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12條 (公社管理地域의 변경) ①公社는 새로운 農業基盤施設을 관리·운영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公社管理地域외의 地域을 公社管理地域으로 編入할 수 있다.

②第11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管理地域에의 編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公社는 公社管理地域안에 있는 土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農業基盤施設로부터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土地의 利害關係人의 요청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公社는 당해 土地의 利害關係人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利害關係人이 그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土地를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하는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하는 土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條 (農業用水利用者) ①公社管理地域안에서 農業用水의 供給을 받는 者(이하 "農業用水利用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公社管理地域안의 土地를 사용·수익하는 土地所有者

2. 公社管理地域안의 土地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土地에 대하여 所有權의 物權(登記된 賃借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公社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用水利用者の 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第14條 (農業用水의 供給義務 및 利用料의 徵收) ①公社는 農業用水利用者에게 農業用水를 성실하게 供給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農業基盤施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業用水利用者로부터 農業用水利用料(이하 "利用料"라 한다)를 徵收할 수 있다.

③公社는 利用料의 徵收節次·農業用水供給條件 및 운영등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 (利用料의 滯納處分) ①公社는 利用料를 滯納한 者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轄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그 徵

收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市長·郡守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利用料의 徵收를 의뢰받은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6條 (異議申請) ①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社管理地域의 設定·編入 또는 제외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公告한 날부터 20日 이내에 公社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利用料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農業用水利用者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③公社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그 適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14日 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⑤農林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裁決을 하고 그 사실을 公社와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 (農業用水利用者의 自律管理) ①公社는 公社管理地域중에서 農業用水利用者가 農業基盤施設 및 農業用水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地域의 農業用水利用者와 협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②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用水利用者에게 農業基盤施設 및 農業用水의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利用料의 減免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8條 (農地賣買事業등) ①公社는 專業農業人의 육성과 農業人이 아닌 者의 農地所有를 억제하기 위하여 農業人이 아니거나 轉業 또는 隱退하고자 하는 農業人등의 農地를 買入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對象者(이하 "專業農育成對象者"라 한다) 및 農業法人에게 우선적으로 賣渡할 수 있다.

②公社는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에게 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專業農育成對象者 및 農業法人의 선정기준 및 農地賣買事業資金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農地의 長期貸借事業) ①公社는 轉業 또는 隱退하고자 하는 農業人의 農地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地를 賃借할 수 있다.

②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借하는 경우에는 賃借期間중의 賃借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公社는 長期貸借事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獎勵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對象者의 선정과 賃貸借料率 기타 賃貸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 (長期賃貸借 干拓農地등의 買入·賣渡事業) ①公社は 長期間 賃貸借되고 있는 干拓農地 및 開墾農地를 買入하여 耕作農業人에게 賣渡하거나 耕作農業人의 당해 農地購入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農地買入은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賣買協議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農地의 所有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市長·郡守의 賣買協議에 응하여야 한다.

第21條 (轉業農業人의 營農復歸 지원) ①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고 轉業한 農業人이 轉業후 2年 이내에 公社로부터 지급받은 賃貸料를 반환하고 營農에 復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賃貸借契約期間에 불구하고 그 契約의 解止를 요청할 수 있다. 公社는 當해 農地가 第3者에게 賃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公社は 農地를 賣渡하고 轉業한 農業人이 轉業후 2年 이내에 營農에 復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地賣買事業資金의 지원등 營農復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農復歸希望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2條 (農地의 交換·分合등) ①公社は 營農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農地의 交換·分合을 施行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技術과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第23條 (農地賣買事業資金의 融資등) ①農林部長官은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事業, 農地의 長期賃貸借事業,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소요되는 資金을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서 融資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4.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5.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融資를 받아 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施行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損益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 귀속되며, 利益金の 納入과 損失金の 補填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第24條 (農地등의 再開發) ①公社は 農地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地를 再開發하거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農地所有者의 農地再開發事業에 필요한 技術과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公社は 취득·所有하는 財産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限界農地, 干拓地, 林野등 不動産 및 「농어촌정비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된 農業基盤施設을 다음 各號의 用途로 開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賃貸 또는 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金은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 및 農漁村地域開發事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1. 農地·草地 및 住宅등 農漁村聚落用地
2. 農漁村의 所得增大를 위한 商·工業用地
3. 都·農間의 交流促進을 위한 農園
4. 農漁村休養地
5.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용도

③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의2 (농지의 매입·매도 등) ①公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公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4조의3 (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公사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公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4조의4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①公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第3節 財務

第25條 (資金調達) 公社は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하 이 節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調達한다.

1. 資本金과 積立金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社債의 發行으로 造成되는 資金
4. 資産運用收入金
5. 기타 收入金

第26條 (借入金) 公社は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資金을 借入(外國으로부터의 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第27條 (社債의 發行) ①公社は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②社債의 發行액은 公社の 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2倍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政府는 公社가 發行하는 社債의 元利金の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債發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 (損益金の 처리) ①公社は 每 會計年度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 처리한다.

1. 移越損失金の 補填
2. 資本金의 2分の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 이상을 利益準備金으로 積立
3. 資本金과 동일한 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分の 20 이상을 事業擴張積立金으로 積立
4. 國庫에의 納入

②公社は 每 會計年度 決算의 결과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한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填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會計年度로 移越한다.

③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과 事業擴張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第29條 (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등 公社の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社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 (공사의 회계특례) ①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운용을 위하여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2.29>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받은 재산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신주인수권·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을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

⑥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14]

第3장 農地管理基金

第31條 (農地管理基金의 設置) 政府는 營農規模適正化, 農地의 集團化, 農地의 造成 및 農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資金을 調達·供給하기 위하여 農地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32條 (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1999.12.31, 2005.7.21, 2005.12.29, 2007.4.11>

1. 政府出捐金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

5.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出捐金

6. 「농어촌정비법」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埋立地등의 賣却代金

7. 基金運用收益金

第33條 (資金의 借入) 農林部長官은 基金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예산회계법」 제9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特別회계·金融機關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第34條 (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用途로 運用한다. <개정 2005.7.21, 2005.12.29, 2007.4.11>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事業등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長期貸借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獎勵金의 지급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事業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農業基盤整備事業施行者가 施行·알선하는 農地의 交換·分合 및 集團換地事業의 清算金의 融資 및 필요한 經費의 支出
4.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再開發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投資
- 4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 4의3.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의 補助·融資 및 投資
6. 農地造成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投資
7. 「농지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還給 및 同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褒賞金의 지급

8. 基金運用管理에 필요한 經費의 支出

9. 기타 基金設置目的의 달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資金의 支出

②第1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缺損金은 이를 基金의 부담으로 損費處理할 수 있다.

③基金의 餘裕資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5.12.29, 2006.12.30, 2007.8.3>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3. 金融機關에의 預置

第35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基金을 農業者에 대한 貸出金으로 運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融資한다. <개정 2005.12.29>

③삭제 <2005.12.29>

④基金은 企業會計의 원칙에 따라 計理하여야 한다.

第36條 삭제 <2005.12.29>

第37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農林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하여

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第38條 (融資金의 回收) 農林部長官은 基金을 融資받은 者가 融資條件에 위반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있다.

第39條 (基金의 決算) 農林部長官은 每 會計年度에 당해연도 基金運用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60日 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4章 補則

第40條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의 관계) 公社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29>

第41條 (登記囑託의 代位) 公社가 第10條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아 施行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취득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부동산등기법」 第35條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하는 경우 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代位하여 登記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第42條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公社가 제18조·제19조·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第43條 삭제 <2002.12.26>

第44條 (造成土地의 處分特例) 國家는 「농어촌정비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施行한 農業基盤整備事業으로 造成된 財産중 農業基盤施設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財産은 이를 公社에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第45條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의 設定 및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公社에 대하여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公社는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의 設定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

에 비치하는 農業基盤施設管理權 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의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第46條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의 성질) 農業基盤施設管理權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29>

第47條 (資料提供등의 요청) 公社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기타 農業人에게 업무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다.

第48條 (關係書類의 閱覽등) ①公社는 第10條의 사업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書類의 閱覽·複寫 또는 謄·抄本의 發給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無料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公社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土地에 대한 電算資料의 照會·檢索 또는 複寫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第49條 (監督) 農林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 달성 및 經營效率化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公社의 업무를 指導·監督한다.

第50條 (農地管理委員會에 대한 협조의 요청) ①公社는 農지의 매매·임대차 자금의 용자 등의 사업과 農지은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委員會에 農地去來價格의 調査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4.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1條 (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2項, 第20條第1項, 第21條第2項 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지원받거나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料를 지급 받은 者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받은 賃借料의 100分の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제5759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2. 農地改良組合法

第3條 (公社設立委員會의 設置) ①중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漁村振興公社(이하 "農漁村振興公社"라 한다), 중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이하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라 한다)의 解散과 公社

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社設立委員會(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設立委員會는 農林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政府, 農漁村振興公社·農地改良組合·農地改良組合聯合會 代表, 農業人·農業人團體代表 및 學界등 專門家를 참여시켜야 하며, 委員長은 農林部次官이 된다.

③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작성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第4條(設立費用)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解散費用 및 公社의 設立費用은 公社가 이를 부담한다.

第5條(業務引繼) ①設立委員會는 公社의 設立登記후 公社의 社長에게 지체없이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設立委員은 解屬된 것으로 본다.

第6條(任員에 관한 措置)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任員은 任期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農地改良組合長등 任員에 대하여는 殘餘任期와 業務遂行能力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職位에 상응한 職務의 부여등 필요한 禮遇를 한다.

第7條(職員의 承繼) 公社가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당시의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職員은 公社의 職員으로 본다. 다만, 農地改良組合의 職員은 農業基盤施設 유지·관리등 地域的 特性을 감안하여 配置하여야 한다.

第8條(解散 및 清算의 特례)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는 이 法에 의한 公社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公社의 設立은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合併으로 본다.

第9條(權利·義務의 承繼) ①公社는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財産과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

②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名義는 公社의 名義로 본다.

③公社에 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이 法 施行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④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改良組合과 農地改良組合聯合會로부터 承繼받은 財産은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第10條(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의 사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또는 農地改良組合聯合會가 施行한 사업 또는 施行중인 사업은 公社가 施行하였거나 施行중인 사업으로 본다.

第11條(組合員 및 組合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①중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組合員은 第13條의 農業用水利用者로 본다.

②중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組合區域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公社管理地域으로 본다.

③중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하여 農地改良組合이 組合員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公社가 農業用水利用者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12條(組合員의 組合債務 分擔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중전의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한 組合員(組合員이 組合區域내의 土地의 所有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土地의 所

有者를 말한다)의 組合債務에 대한 分擔額은 農業用水利用者(農業用水利用자가 公社管理地域내의 土地의 所有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土地의 所有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公社債務(組合債務를 承繼한 것에 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分擔額으로 본다.

②農業用水利用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가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土地가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되기 전의 公社債務에 대한 分擔額을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減免額은 國家가 대신 부담한다.

④公社는 公社管理地域에서 제외된 土地중 農業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額을 減免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 (長期債에 관한 經過措置) 중전의 法律 第5077號 農地改良組合法에 의하여 廢止된 중전의 農地改良組合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에 대한 國庫補助에 관한 規定은 그 長期債의 償還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14條 (政府의 出資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중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政府가 農漁村振興公社에 出資한 財産은 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②公社가 附則 第9條第1項에 規定에 의하여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로부터 承繼받은 財産의 帳簿價額에서 그 負債를 差減하고 남은 금액은 國家가 이를 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第1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農地改良組合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 (農地管理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중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으로 본다.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15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農業基盤整備事業 施行者が 國家인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賣却代金を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1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①農林部長官은 國家 또는 農業基盤公社가 施行한 農業基盤整備事業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農業基盤施設을 農業基盤公社로 하여금 引受·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管井등 地下水利用施設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引受·관리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第3項을 削除하고, 同條第4項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하며, 同條第5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改良組合"을 각각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3條第7項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9條중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0條第6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을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6條第1項중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은"을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이"를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가"로 한다.

第60條第1項 및 第3項중 "市長·郡守, 農漁村振興公社 또는 農地改良組合은"을 각각 "市長·郡守 또는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한다.

第67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78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는"을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한다.

第81條第1項 및 第4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각각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85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는"을 "農業基盤公社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13條의"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18條의"로 한다.

第90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등"을 "農業基盤公社등"으로 한다.

第97條第1項중 "農漁村振興公社등"을 "農業基盤公社등"으로 한다.

②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第6條第2項第8號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하고, 同項第9號 目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漁村振興公社가"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로 하며, 同項同號 目을 削除한다.

第11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漁村振興公社에게"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에게"로 하고, 同條第3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하며, 同條第4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第1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2. 農業基盤公社

第14條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47條第2項第3號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53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3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을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으로 한다.

第264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基盤公社"로 한다.

第266條第2項중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가 同法 第13條·第16條·第21條 및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基盤公社가 同法 第18條·第20條·第24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④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號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5號를 削除한다.

4.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

⑤地方自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第6號 및 第88條第1項第5號중 "畜産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을 각각 "畜産業協同組合"으로 한다.

⑥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1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및 農地改良組合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農漁村振興公社, 農地改良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한 公社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國債法) <제6075호,19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⑦省略

⑧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⑨乃至 <16>省略

부칙 <제6598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조직·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6819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農地造成費納入金"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농업기반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를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農業基盤公社"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農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 한국농촌공사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9항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農業基盤公社"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③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⑩基金管理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기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財政融資特別會計의 融資計定"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第56條 내지 第6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第23條"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第34條第1項第7號 중 "「농지법」 第40條"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第46條"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8호], 시행일 2008.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 사업
 -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洩),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溜池),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와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換地)"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중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8.3>

1.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物)
3. 경제성 및 농촌경관
4.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8.3>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운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기 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사업은 농업협동조합도 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 (사업 시행 인가나 시행계획의 변경)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수·보수하거나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1.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인 경우: 농림부장관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도지사
-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농지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제40조에 따라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8.3>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

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부장관에게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②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9조 (농어촌용수계획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

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접하는 용수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특

별자치도지사(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24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원칙) 농림부장관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②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집단화된 마을 조성 및 재개발 대상 마을의 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이하 "마을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③ 정부는 제2조제7호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3.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소득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취약지구(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정비구역은 마을정비구역별로 사업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고시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이나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3. 농어촌 마을 건설 또는 재개발을 위한 택지조성계획 및 주택 등 건축계획
4. 편익시설·복지시설과 간이상수도시설·마을하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5. 주차장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6.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 관광휴양 지원시설의 정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시행 절차를 따른다.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농림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고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농림부장관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환경영향평거나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협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로 본다.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촌공사는 제30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지역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 지정, 사업자 등록, 계획 승인 또는 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도시관리계획구역인 마을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주체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
5.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堆肥舍),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換地)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기술지원 등) ①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농어촌 토지 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 교환·분합 등

제40조 (환지계획) ①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 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법적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 (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의 단순한 기재 착오 및 누락
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인가권자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정정 또는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제42조 (환지 업무의 대행)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한국농촌공사
2. 10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환지사의 자격) ① 제42조제2항의 환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삭제 <2007.8.3>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삭제 <2007.8.3>

4.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4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4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때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4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제51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토지 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55조 (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

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

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교환·분합의 시행)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 (교환·분합의 결정 방법) ① 제58조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③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의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교환·분합의 효과)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중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

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제59조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2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합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조 (지료 등의 감액과 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64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65조 (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해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한 것을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65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 등의 증액 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0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71조 (선수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2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

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일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4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①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은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농원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만 양수(讓受)할 수 있다.

②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양수한 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5조 (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入殖作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절 한계농지 등의 정비

제77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부장관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

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제78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79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과 고시) ①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③ 삭제 <2007.8.3>

④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8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 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하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시장·군수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 (관련 규정의 준용) ① 제78조제3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택

지 및 부속농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② 제78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분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제40조부터 제66조까지)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84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3>

제85조 (투자과 선수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제8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는 관할 농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91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제3장,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非管理廳)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의

양여(讓與)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②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려거나 제29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8.3>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 등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제25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 ② 제7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3.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제93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43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제94조 (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9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6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인정하거나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제97조 (마을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 ① 제10조·제12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지역,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제68조,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토석(土石)·사력(沙礫: 모래와 자갈)의 채취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5.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6. 묘지·화장장·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7.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② 마을정비구역,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9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溉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지역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0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1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허가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삭제 <2007.8.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나. 제12조제3항·제15조제2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6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82조제2항·제88조제1항·제92조제3항 또는 제95조제2항에 따른 승인

다. 제29조제3항·제72조제1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정

3. 사정이 바뀌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한 경

우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8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제103조 (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47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3.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취소
4. 제102조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제104조 (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5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촌공사의 임원이나 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고용된 환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06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 등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8.3>

②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이동의 신청·신고는 「지방세법」 중 농업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며 「지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관청(所管廳)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 (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및 어장교환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및 연안해면에 관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서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 또는 어장교환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원인에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생활환경 정비 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교육, 의료, 교통, 문화, 환경 등 소관 농어촌지역 개발 업무를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제110조 (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제111조 (벌칙)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12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1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6조제2항에 따른 토지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05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부터 <48>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51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발사업 및 농지개발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 (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 (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 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 內水面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35條第1項第5號"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農漁村整備法 第34條"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潭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第1項"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 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 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 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 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 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92條"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第2條第4號"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第56條 내지 第6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第23條"로 한다.

<3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 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588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 승인 등 행위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청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防潮堤管理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9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干拓地를 保存하고 農水産物의 災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防潮堤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함으로써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國民經濟발전을 기하고 國土를 保存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6.8.8>

[전문개정 1970.1.1]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防潮堤"라 함은 農業을 目的으로 海岸에 設置된 堤防을 말하며 "管理防潮堤"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管理하는 防潮堤를 말한다. <개정 1970.1.1, 1996.8.8>

②이 법에서 "防潮堤의 附屬物"이라 함은 防潮堤에 부속된 潮遊地·量水標·水制工 기타의 工作物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包容潮水量"이라 함은 最高滿潮時에 干拓地上에 包容될 潮水의 量을 말한다.

第3條 (國家管理防潮堤의 결정)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防潮堤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당해 防潮堤를 國家에서 管理할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1. 包容潮水量 1千萬立方미터 이상의 干拓地의 防潮堤

2. 包容潮水量 1千萬立方미터 미만 7百萬立方미터 이상의 干拓地의 防潮堤로서 對岸距離 4킬로미터 이상의 것

3. 包容潮水量 1千萬立方미터 미만 7百萬立方미터 이상의 防潮堤로서 對岸距離 4킬로미터 미만의 것과 包容潮水量 7百萬立方미터 미만 3百萬立方미터 이상의 防潮堤로서 對岸距離 4킬로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受益者의 負擔能力이 부족하거나 公安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防潮堤를 國家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 國家管理防潮堤로 결정한다.<개정 2000.1.12>

第3條의2 (地方自治團體管理防潮堤의 決定) ①第3條에서 정한 國家管理防潮堤를 제외한 餘他防潮堤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當該 防潮堤를 地方自治團體에서 管理할 것을 管轄 各級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라 한다)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防潮堤를 地方自治團體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 地方自治團體管理防潮堤로 결정한다.<개정 2000.1.12>

③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管理防潮堤의 범위는 당해 市·道の, 市·郡·區(이하 "市·郡"이라 한다)管理防潮堤의 범위는 당해 市·郡의 條例로서 각각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7.12.13>

[본조신설 1970.1.1]

第4條 (管理의 解除)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防潮堤를 管理防潮堤로서 管理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原管理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리대상에서 解除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2000.1.12>

[전문개정 1970.1.1]

第5條 (告示)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條·第3條의2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防潮堤로서 決定 또는 解除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6.8.8>

1. 防潮堤의 所在地
2. 防潮堤의 延長·幅과 그 附屬施設
3. 包容潮水量
4. 所有者와 原管理者의 住所姓名

[전문개정 1970.1.1]

第6條 (防潮堤의 管理)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管理防潮堤로서 管理에 관한 綜合的인 企劃·調査·監督 기타 필요한 事項에 대하여 國家管理防潮堤는 農林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管理防潮堤는 管轄 市·道知事가 각각 이를 管掌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은 管理防潮堤의 管理에 있어서 綜合的인 調整이 필요하거나 市·道知事가 行한 處分이 不當하다고 認定될 경우 取消 是正 또는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1997.12.13>

②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團體로 하여금 防潮堤의 管理에 관한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③前項의 경우에 管理에 필요한 費用은 代行團體로 하여금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④防潮堤의 管理에 소요되는 資金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條 (管理費의 부담) ①삭제 <2001.12.31>

②管理防潮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國家管理防潮堤는 國庫에서 地方自治團體管理防潮堤는 國庫와 地方財政에서 각각 이를 負擔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는 防潮堤중 島嶼등 特殊地域에 있는 防潮堤에 대하여는 國庫에서 特別支援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2001.12.31>

③삭제 <2001.12.31>

第8條 삭제 <2000.1.12>

第9條 삭제 <2001.12.31>

第10條 (緊迫事態下의 應急措置)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天災·地變 기타 긴박한 事態로 인하여 管理防潮堤의 위험을 防止하거나 災害復舊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隣近住民에게 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土地·家屋 기타의 필요한 物件을 一時 사용하거나 工作物 기타의 障害物을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土石·竹木 기타의 物件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第11條 (損失補償)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00.1.12>

第12條 (利用者負擔) 管理防潮堤의 全部 또는 一部가 다른 工作物의 效用을 겸하는 경우에는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利用者로 하여금 受益의 범위안에서 防潮堤에 관한 工事 기타 管理에 필요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9.12.30, 1996.8.8>

第13條 (受益者에 의한 유지·補修)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管理防潮堤의 目的外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受益者가 있을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受益者로 하여금 당해 防潮堤의 유지 또는 補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89.12.30]

第14條 (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市·道知事에게, 市·道知事의 權限은 市長·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6.8.8>
[전문개정 1970.1.1]

第1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1470호,1963.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2179호,1970.1.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189호,1989.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 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부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5>省略

<36>防潮堤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및 第2條第1項중 "農水産業"을 각각 "農業"으로 한다.

第3條第1項 本文·第2項, 第4條, 第5條 本文,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2項 但書, 第8條第1項, 第10條, 第12條, 第13條 및 第14條중 "農林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農林水産部"를 "農林部"로 한다.

第13條중 "農林水産部令"을 "農林部令"으로 한다.

<37>내지 <69>省略

第4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제6140호,2000.1.12>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부담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當該 防潮堤로 因하여 直接利益을 받는 者의 負擔金이 前項의 費用을 充足시킬 수 없을 때는 그 不足額"을 "管理防潮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내지 ⑩생략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7.13 법률 제85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등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①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농림부장관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의 평가)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①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농산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부장관이 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

제12조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작업(農林作業) 또는 어로작업(漁撈作業)으로 인하여 농림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림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지 등을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여성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제19조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농산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 농산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보급
3.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농업·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 및 수산업에 종사할 기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①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②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어촌 지역개발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4.11>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산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8. 그 밖에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품·문화·기술(이하 "특산품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품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품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등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품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5. 특산품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2.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산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2.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4.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5.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6.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운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본조신설 2005.8.4]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 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5.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향토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3조 (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농산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산어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부칙 <제7179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679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⑧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해운법) <제838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8501호,2007.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